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보장 제도 적용방안 연구

2021. 10.

충남 도의회

제 출 문

충남도의회 귀중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보장 제도
적용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연구책임 : 시민과 지역발전연구소

소장 조화성

【주요 내용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효과를 파악하여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음
-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문헌 연구, 농업농촌의 주요 통계 데이터 분석(인구 및 소득 관련), 농촌 현장의 농민 및 농정 담당자 간담회, 충남도민 의식조사 방법 등을 활용
- 충남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로써 농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설함을 제안함
- 농촌지역의 주요한 소득보장 제도는 공익직불금제, 농민수당(농어가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임
- 이러한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인식과 정당화의 근거는 무엇보다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동의와 존중, 이에 따른 농민과 농촌주민들의 정당한 몫에 대한 보상과 투자임
- 현실의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은 농업·농촌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무엇보다 직접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통해 풀어보려는 대안적 접근의 요구
- 농업·농촌 통계 데이터, 농민 및 농정 담당자 간담회 내용, 충남도민의 의식조사 분석의 주요 내용
- 농업·농촌의 악화 및 정체라는 중장기적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특히 2020년의 상황은 농가 인구 및 농가 소득의 증가, 고령화 비율 감소, 도농 격차의 완화 등 여러 지표의 개선이 나타남
- 이는 귀농·귀촌의 증가, 코로나 19 등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소농직불금, 농어가수당 등 이전소득 증가라는 소득보장 제도의 효과로 평가

- 간담회 및 충남도민(도시민 300명, 농촌주민 300명)의 의식조사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동의, 여러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남
- 공익직불금, 농어가수당, 농민·농촌기본소득 모두 지지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남.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인식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모두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
-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거주 및 이주 의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도가 높을수록 농촌 이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이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새로운 대안적 공간으로 농촌의 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농촌재생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역할에 바탕을 두고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적 공간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이 농촌에 내재한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몫에 근거하며 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미래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 기대
- 농촌기본소득의 농촌재생 실현 가능성과 역할
- 농업 생산의 생산주의로부터 생태적 전환 유도. 농촌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농촌의 생태적 전환, 자연과의 공생의 관점에서 농업 생산에 임할 조건과 유인이 형성
- 농촌의 내재적 및 생태적·문화적 발전 추구. 외부 자본의 유치 중심의 지역발전은 지역 환경의 파괴 및 지역 부의 외부유출 파생. 농촌기본소득의 제공을 통해서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보전·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 방향 모색 가능

- 농촌 이주 및 정주 강화로 농촌 인구 증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이나 비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에서의 생활안정이 가능하다면 과밀화된 도시를 벗어나 농촌의 저밀도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충남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

- 마을(행정리) 방식의 지역 선정
 - 소멸고위험 행정리 마을 3,123개소 중 20여개 마을 선정, 2년 간, 1년 이상 지역에 실거주한 주민에게 개인별 월 15만원 지급
-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평가
 -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실현을 통해 기본소득의 공동체 효과를 기대. 농촌 마을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며, 그 속에 주민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가에 관한 논의 필요
 - 지역순환경제 효과 평가. 농촌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제적 효과 평가 모델은 지역승수효과(LM3(Local Multiplier 3)) 방법,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과 더불어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효과를 포함하여 평가

○ 농촌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및 추진 방식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 ‘농촌기본소득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 농촌 기본소득에 따른 재정 마련의 문제를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가능
- 분권형 농촌재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 추진

- 중앙정부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영은 지방 소외의 우려를 자아냄. 지역 주도의 시·군별 세부 위기지역 선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
- 지역소멸대응 기금의 활용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과 집행에 근거해야 함. 분권형 방식이 실질적인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내용	2
2. 연구 방법	3
1) 주요 분석 내용	3
2) 연구 방법	3
제2장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5
1. 한국의 소득보장 제도 논의	5
1) 소득보장 제도	6
2) 다양한 소득보장론	8
2.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19
1)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논의의 맥락	19
2)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실태	22
제3장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 및 소득보장 제도 평가	46
1.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	47
1) 농업·농촌의 인구 및 소득 관련 현황	47
2.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충남도민의 인식	68
1)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의견과 평가	68
2)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충남도민의 의식 조사	70

제4장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사회실험 방안	116
1.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116
1) 농촌기본소득의 배경과 필요성	116
2) 농촌기본소득 사례	126
2. 충남 농촌기본소득과 사회실험 방안	130
1)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도입	130
2)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	136
제5장 결론	140
1. 연구 요약	140
2. 정책 제안 사항	151
<참고 문헌>	153
별첨. 설문조사 질문지	158

<표 차례>

<표 2-1> 신복지체제의 기본원리	11
<표 2-2> 신복지체제론의 주요 복지 정책	12
<표 2-3> 농정 패러다임 변화	20
<표 2-4> 직불제 도입의 법적 근거와 항목별 정책	30
<표 2-5> EU의 소득지원 지불과 농촌발전 프로그램	31
<표 2-6> 스위스의 직불체계	32
<표 2-7> 직불금 지급 현황(2015년 기준)	33
<표 2-8> 공익직불금 개편 형태	36
<표 2-9>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상 준수사항	37
<표 2-10> 2020년 공익형직불금 현황(총 2조 3,564억 원)	37
<표 2-11> 광역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현황	39
<표 2-12> 농민수당 조례 특성	40
<표 2-13>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주요 특징 비교	42
<표 2-14>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44
<표 2-15>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관련 입법 제안 현황	45
<표 2-16>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45
<표 3-1> 전국 연도별 농가인구 추이	47
<표 3-2> 연령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	48
<표 3-3> 2020년 연령별 귀촌가구주	49
<표 3-4> 전국 농업경영체 현황	50
<표 3-5> 농가소득 구성비(2020년)	50
<표 3-6>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51
<표 3-7> 농지규모에 따른 농가 구성(2019년)	54
<표 3-8> 농지규모별 농가 소득 구성(2020년)	54
<표 3-9> 소농과 대농의 농가 소득 구성별 차이(2020년)	55
<표 3-10> 충남 농가소득의 소득구간 별 가구 현황	55
<표 3-11> 충남 농가소득 평균 및 중위값	56
<표 3-12> 충남 농업소득 평균 및 중위값	56

<표 3-13> 충남 이전소득 평균 및 중위값	57
<표 3-14> 도농소득격차 : 1992년~2016년	58
<표 3-15> 충남 농가 수 및 농가 인구 연도별 현황	60
<표 3-16> 귀농 가구 현황	61
<표 3-17> 귀촌 가구 현황	62
<표 3-18> 충남 농업경영체 현황	62
<표 3-19> 충남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64
<표 3-20> 도농간 소득 차이(2019~2020년)	65
<표 3-21> 농가소득 5분위 변화(2019~2020년)	66
<표 3-22> 농가소득 분위별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9~2020년)	67
<표 3-23> 농업·농촌의 환경 및 소득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70
<표 3-24> 농촌과 도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비교	71
<표 3-25> 농촌기본소득 도입시 농촌 이주(거주)의향	72
<표 3-26> 충남 농촌기본소득 설문조사 문항별 상관관계	111
<표 4-1>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시·군·구 현황	121
<표 4-2> 과거 농촌 인구 전망치와 실제 인구 변화 추이 비교	122
<표 4-3> 장래 농촌 인구 전망	123
<표 4-4> 지역유형별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현황(2011-2016)	124
<표 4-5> 도농간 인구이동(2010-2020년)	124
<표 4-6>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성과 평가 지표	129
<표 4-7> 2020년 농촌인구 현황	130
<표 4-8> 충남의 인구 감소 현황(2000년 대비 2019년)	131
<표 4-9> 충남 행정리 마을의 소멸고위험비중(소멸고위험 행정리 수/행정리 수)	131
<표 4-10>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기준(안)	132

<그림 차례>

<그림 2-1> 직불금 체계 변천	35
<그림 3-1> 전국 연도별 농가 인구 및 증감률 추이	48
<그림 3-2> 고령인구 비중 : 2015-2020	49
<그림 3-3>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추이	51
<그림 3-4> 농가 및 농업소득 : 평균값과 중위값 변화(2008년~2019년)	52
<그림 3-5> 농가소득 5분위 배율 : 2009년~2019년	53
<그림 3-6> 충남 농가소득 주요 구성부문의 불평등도 추이	57
<그림 3-7> 도농 소득격차 연도별 추이	58
<그림 3-8> 충남의 농가 수, 농가인구, 고령화의 연도별 추이	61
<그림 3-9> 전국 귀농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62
<그림 3-10> 충남 농업경영체, 농업 면적, 농업인 수 연도별 추이	63
<그림 3-11> 충남 농가소득 구성부문 연도별 추이	64
<그림 3-12>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	66
<그림 4-1> 광역자치단체별 소멸위험지역	131

제1장 서론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 농업·농촌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및 정책 마련 필요
 - 농촌 소멸 위기, 농가 소득의 정체 및 양극화,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등의 농업·농촌의 구조적 위기 지속
 -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직불금제 개편, 농어가 수당 정책이 실행되고,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제안·논의되고 있음
- 최근 농촌의 잠재력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촌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특히,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 19 이후 저밀도 경제, 분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이 핵심 공간으로 조명받고 있음
 - 농촌기본소득은 다양한 정책 융합(policy mix) 속에서 농촌 재생의 새로운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향후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실증적 방법이 될 것임

2) 연구의 내용

- 본고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제도 현황 및 충남도민들

의 인식(평가와 기대)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농촌 기본소득’에 주목하며,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1) 주요 분석 내용

○ 전국 및 충남의 농업·농촌의 최근 통계 현황

-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을 소득 및 인구 관련 데이터 분석
-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로써 ‘공익직불금제’, ‘농어가 수당’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관해 분석

○ 충남 도민의 의견 수렴 및 의식 조사

- 지역별로 진행되었던 농민, 농촌주민, 농정 공무원 등 관계자와의 신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간담회 의견 분석
- 충남도민 600명(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설문조사 분석

○ 충남도의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 현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의 관해 평가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의 적용 방안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 현 농업·농촌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평가 및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도입

에 관한 지역별 의견 수렴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아산시, 태안군, 홍성군, 부여군 등 4개 지역에서 농민, 농촌주민, 충남도 및 시·군 농정 담당 공무원 등 참석
- 공익직불제, 농어가 수당 평가 및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도입(사회실험) 방안 등에 관한 논의



- 또한, 충남도민들의 농업·농촌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충남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개요

- 공익직불금, 농어가 수당,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농촌기본소득 도입, 농촌 기본소득 도입시 농촌 거주(이주) 의향 등에 관한 인식 조사 진행

구 분	내 용
조 사 일 시	2021년 8월 20일(금) ~ 27일(금)
조 사 방 법	유선 전화 면접조사 100%
유 효 표 본	600명(충남, 도시 거주 주민 300명과 농어촌 거주 주민 300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 $\pm 4.0\%$

- 연구기간 : 2021. 6. 1. ~ 2021. 10. 29.

제2장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1. 한국의 소득보장 제도 논의

1) 소득보장 제도

- ‘소득보장’ 제도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분배와 재분배 정책 중 현금(성) 급여에 관한 정책 및 이의 제도화로 정의
 -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공부조, 실업급여 등임
 -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논의는 현재 한국의 기존 소득보장 제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도적 부적합성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원리를 적용하거나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 신 소득보장 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김교성 외, 2018)
 - 경제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요구
 - 4차 혁명의 산업구조 변화, 플랫폼 경제 등의 경제구조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노동과 사회의 변화. 삶의 불안정성의 일상화, 고용·소득·사회적 보호의 불안정 구조 형성
 -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보험 강화 전략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두
 - 기존 복지국가 모델의 소득보장은 수급자의 기여금(보험료)에 근거한 사회보험으로 실직,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면 재분배 정책 시행(실업보험, 퇴직 국민연금 등). 또한 소득이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세를 기반으로 공적 부조 제공

-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필요성
 - 한국은 경제적 선진국 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국민기본 생활보장 및 적정 생활수준 보장은 미흡
 - 한국의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16.7%)은 한국의 일인당 GDP 수준에 비해 높은 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의 49.0%임(윤홍식, 2021, pp. 22-25)
- 전 세계적 소득보장 제도 확산 및 정당화의 두 가지 계기 : 보편적 사회 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와 분배정치(Politics of distribution)
 - 보편적 사회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국제적 합의 : 2015년 그간 사회발전 전략에서 상반된 입장을 취해 온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합의, 공동으로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주목받음(A Shared Mission For Universal Social Protection: concept note¹⁾)
 - 보편적 사회보호는 통합 정책패키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 보장과 지원을 제공, 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누구라도 사회적 보호체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
 - 잘 설계되고 실행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초가 됨. 즉, 빈곤 대책, 취약층의 사회적 포괄과 존엄을 촉진할뿐더러 소비, 저축,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을 증진, 국내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공헌. 인적 발전 촉진, 정치 안정, 사회적 평화 증진하는 것으로 의미 부여
 - 분배정치, 현금 이전의 확산(제임스 퍼거슨(저), 조문영(역), 2015) : 빈곤 해소와 사회적 보호 정책으로 분배 정책의 중요성 부각. 분배의 결정이 더 이상 시장에서가 아니라 점점 더 사회정책 영역에서 결정되는 추세. 아울러 분배 정책에서 비각출 현금 지급(non-contributory cash transfer. 수급자의 직접적 기여 없이 국가재정으로 전액 조달하는 방식)

1)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genericdocument/wcms_378996.pdf

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확산

- 새로운 복지국가의 출현. 대규모 노동잉여 경제로의 이동, 노동의 시장교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국가로부터의 분배를 통해 생계수단을 얻음. 즉, 노동연령대의 사람들이 임금노동과는 다른 수단을 통해 보호받는 상황이 도래
- 물론 이러한 소득은 전일제 임금노동 소득에 비견할 만한 것이거나 실업보조금처럼 표준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적은 액수의 현금지급. 소규모 사업과 같은 비공식 생계나 임금고용 자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촉매제

2) 다양한 소득보장론

□ 기본소득론

○ 기본소득의 필요성, 개념, 원칙(백승호, 2020)

- 기본소득 개념 :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
- 공유부 : 자연적 공유자산(토지), 역사적 공유자산(지식), 인공적 공유자산(빅데이터)으로부터의 수익
- 토지, 소득, 빅데이터 등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배당(조세), 공동체가 직접 공유자산을 관리하여 운영수익을 배당(공동소유형, commons),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공유지분 설정형
- 기본소득의 원칙
-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음.

- 정기성과 현금배당, 충분성 원칙
- 충분성은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본소득의 정당화(강남훈, 2020)
 -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이에 따라 빈곤탈출은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역할
 - 실질적 자유권 : 자유로운 사회는 권리보장, 자기소유권 보장, 기회의 최소극대화 사회임
 - 최소의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것(최소수혜자의 기회극대화).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극대화된 자유를 보장
 -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최소극대화 필요
 - 비지배 자유
 -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다른 집단의 자의적인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
 - 평등권 : 기회의 평등
 - 소득은 최소한의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만큼 기회(조건)으로 작용. 최소한 소득과 그 이상의 소득을 구분, 최소한의 소득은 기회의 평등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참정권

- 기본소득은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
- 정치참여를 위해 소득 지급한 아테네의 사례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의 본성이 발휘.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 아테네 민주주의는 배심원과 500인 평의회 참석자, 이후 민회 참석자 6,000명에게 급여 지급
-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로 간주된다면 경제적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함

○ 기본소득 단계적 실현 방안(백승호, 2020)

- 재정의 수준 우려 문제 극복, 범주형 기본소득으로부터 출발
 -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에서부터 출발. 범주형은 기본소득의 특징 중에 보편성을 제약하는 형태로 특정 연령으로 제약하는 경우
 -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기본소득, 농민수당 등 사회수당이 범주형 기본소득에 해당²⁾
- 호혜성 우려 문제 극복 : 참여 소득형 추진
 - 호혜성은 사회공동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기여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인식. 따라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제약할 필요로 참여소득의 방안
 -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활동을 근거로 농민수당 지급,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 활동, 승인된 자원봉사 등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2) 이는 사회수당으로 보는 견해와 대립.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보편적 복지)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수당이 있으며, 아동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당 프로그램(이상익, '좌파·우파·가짜 기본소득 반대, 보편적 사회보장 확립', (<http://www.welfarestate21.net/home/index.php>),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2020. 6.8.)

□ 신복지 체제론(윤홍식, 2021)

○ 문제의식

- 한국은 그간 정치경제적 수준은 선진국에 진입, 반면 사회부분은 취약. 각종 노동지표나 환경지표는 OECD 최하위권. 기존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편해야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 10년 이내에 사회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
- 교육 주거, 돌봄 등 최저기준을 일괄적으로 올리고, 아울러 중산층이 삶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걱정 기준을 도입해야 함

○ 신복지체제의 기본 원리

-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만이 아닌 국민이 직면한 복합적 위험에 대응
- 모든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로 기본생활과 걱정생활을 보장
-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예방적 대응과 사전적 대응을 병행
-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의 책임을 덜

<표 2-1> 신복지체제의 기본원리

	현(現) 복지체제	신(新) 복지체제
1. 복지체제		
보장	· 최저보장	· 기본생활보장 · 적정생활수준
권리	· 기여 여부 · 자산·소득조사 기초	· 국민기본권
사회적 위험	· 소득 상실	· 소득상실 · 돌봄 위기 · 기후·생태위기
대응 성격	· 사후적	· 사전적·사후적
책임주체 국가·시장·가족	· 민간>>>국가 · 가족과 시장 중심 · 국가 보완	· 민간=국가 · 국가 책임 강화 · 가족·시장 정상화
2. 복지 정책		
급여 형태	· 낮은 수준의 현물과 현금	· 적정 수준의 현금과 현물의 균형
주요 정책	·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민간 사회서비스 중심	· 보편적 사회보험 · 보편적 사회수당 · 국민생활보장제도 · 공적 사회서비스
3. 자원		
중심 자원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 일반조세
재정 원칙	· 긴축·재정균형	· 강력한 재정개혁 · 적극적 재정정책 · 단계별 보편적 누진증세

출처: 윤홍식, 2021, p. 20.

<표 2-2> 신복지체제론의 주요 복지 정책

복지정책	기본내용	세부 내용
전국민 사회보험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추진 ·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에 포괄	· 고용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 향후 10년간 단계적 시행 · 실업급여 소득 대체율 60~70% 수준으로 상향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수당, 자산형성	· 보편적 아동수당, 보편적 기초연금	· 아동수당의 만 18세 확대, 현 10만원에서 20만원 급여확대 · 소득하위 70%기준 없애,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중장년 다시서기 수당	· 기준소득 150% 미만 만 55~64세 가구주, 1년간 월 100만원 지급. 무주택 가구주 자산형성 프로그램 적용
	· 취약계층 청년 수당	· 서울형 청년수당 사례 · 현금지급뿐 아니라 취·창업, 생활, 금융주택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 청년자립자본	· 청년대상 기존 자산형성 프로그램 가입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간을 늘리는 대신(5년, 10년) 완료시 자립자본 지급 · 학자금, 주거비용, 창업 및 구직비용으로 한정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을 만 55~64세 중장년으로 확대
국민기본생활 보장제도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모든 가구 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부족분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유무 등 조건 폐지 · 의료급여, 건강보험 통합
돌봄 국가책임제	·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지역사회, 공공중심으로 전환 · 사회서비스의 권한, 재원 등을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 안심 소득론

○ 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복거일 외, 2017)

- 1940년대 리스-윌리엄스 제안, 1960년대 밀턴 프리드먼이 적극 주창. 복지 수당을 음 소득세로 볼 수 있다는 구상에서 출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세제를 하나로 통합
- 제도의 목적
 - 빈곤의 완화, 즉 모든 가구에 최소한의 명백한 생계 수단을 제공
 - 복지제도의 단순화로 방대한 복지관료체계를 축소
 - 세금을 낼 만큼 벌고자 하는 근로 동기를 유지
- 수혜의 기준
 - 가난으로 직업, 연령 등 다른 기준은 없음. 프로그램의 작동은 시장을 왜곡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 최저임금제처럼 비숙련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몰아내는 방식은 지양
- 기본 방식
 - 기존 소득세법의 적용범위를 면세점이하로 확대해 정해진 단일세율로 계산된 음소득세를 보조금으로 지급
 -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율(소득보장비율)은 50%. 예> 면세점 소득이 일만 달러인 경우, 소득이 0인 사람이 받는 보장소득은 5천달러, 소득이 8천 달러인 사람은 면세점 소득 1만 달러와 실제 소득 8천 달러와의 차이인 2천 달러의 50%인 1천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음
- 프리드먼이 제시한 음 소득세의 장점

- 가난을 직접 다루며 가장 유용한 도움인 현금 지급. 보편적이고 다른 현행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용이. 기존 소득세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 제도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알기 쉬움
- 시장 밖에서 운영되어 시장을 왜곡하지 않음. 정해진 최저 소득에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과는 달리 스스로 버는 소득의 일부는 항상 자기의 처분가능 소득으로 수혜자의 동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

- 문제점

- 납세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복지제도로 복지 수혜를 받지 않는 중산층 이상의 동의 획득이 쉽지 않음

o 한국의 안심소득(박기성, 2021. 6. 10)

- 문제의식

- 현행 복지제도는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 즉, 현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약간만 하거나, 정부 당국에 알려지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을 받는 일을 하는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방안

-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 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폐지하고 안심소득제를 신설
-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미만까지 안심소득제를 통해 현금 지원. 연소득 5,000만원은 면세점.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그 이하는 안심소득제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음
- 2016년 4인 가구 연 중위소득은 5,269만원으로 연소득 5,000만원 면세점은 우리나라 4인 가구 연 중위소득 수준. 안심소득세율은 40%

- 작동 논리

- 안심소득제에 의해 국가는 모든(4인) 가구에 적어도 연 2,000만원을 보장.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연 2,000만원 지원
-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와 상쇄되지 않고 그 소득의 60%만큼씩 처분가능 소득이 증가. 근로장려금보다 더 강하게 근로할 유인을 제공
-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근로 장려금이 시행되는 현재보다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재원 및 효과

- 2016년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노동 사업예산 123.4조원 활용.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이 1천만 명. 1인당 1,234만원, 4인 가구 4,936만원 지급 가능
-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연봉이 더 많아 최저임금의 고용감소와 경제 성장률 하락 효과 대신 노동공급 증가 효과 기대
- 행정 비용 절약하며 예산 누수를 최소화. 기존의 국세청 자료와 행정 조직을 활용,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기초 자산론(김종철, 2020)

○ 기본 시각 : 청년기, 자산기반 평등주의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는 대학교육이나 창업 혹은 주택마련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 이러한 투자는 한 개인의 성인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음

- 기본소득과 같은 매달 적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기회 획득이 가능, 목돈이 소요되는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높임
-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자산재분배를 가능하게 함

- 자산 불평등의 심화 문제 해결

- 자산 불평등 문제는 전체 부에서 임금소득 분배율의 축소와 더불어 자산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 이에 자산 기반 평등주의가 필요
- 자산 소유는 행위자의 행위능력에 기여. 자산 소유는 개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독립성을 주고 인생의 부침을 극복해 나가며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덜 휘둘리게 할 것

o 기초자산제의 여러 방안

- 사회적 지분 제도 : 2006년 미국의 브루스 애커만, 앤 알스토틸의 제안

- 모든 구성원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의 총 자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는 개념. 모든 시민들은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원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지분을 모든 시민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받아야 한다는 견해
- 사회적 지분은 한 개인이 성인이 되는 시점인 21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2만 달러씩 총 8만 달러(2020년 6월 기준, 약 9,600만원) 지급. 미국 대학의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에 해당. 이 지분의 사용은 각 개인의 자유에 맡길 것
- 재원 마련은 23만 달러(약 2억 7,800만원)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진 개인에 대해 2%의 자산세를 부과. 이 부를 소유한 미국인의 비율은 20% 정도, 미국인 80%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자산세는 처음 50년 이후는 걷지 않고, 그 이후는 사회적 지분을 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자와 함께 사회적 지분을 상환하고 이 상환된 돈으로 다시 성인기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분을 지급
- 줄리안 르 그랑의 보편적 자본급여 : 애커먼 등의 방안과 유사하나 재원 마련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급여액이 매우 작아, 1만 파운드로 한화로 약 1,500만원. 성인기에 접어드는 모든 청년(18세)에게 ‘자산 및 교육비 적립 계좌’로 지급
 - 급여는 도박 등으로 소비하는 것을 막아야 함. 특정 목적의 은행계좌에 지급, 인출하는 경우 지출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학비, 생활비, 직업훈련 비용, 주택구매 비용, 사업착수금 등 조건이 맞아야 승인
 - 이 기초자산 제안은 영국에서 ‘아동신탁기금(2005년 시행, 2011년에는 ’주니어 개인저축계좌‘로 대체)’, 미국과 캐나다는 ‘개인발달계좌’ 제도로 도입됨
 - 재원마련을 위해 상속세 개혁 주장. 현 상속세는 사망하는 사람의 과세표준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김. 이 제도를 상속자가 상속받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혁
 - 모든 국민에게 평생 일정 액수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을 권리 제공하되,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을 경우 누진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게 함(평생 수령 자본 세금, lifetime capital receipts tax)
- 피케티의 보편적 자본급여
 - 정의로운 소유권(자본에 대한 사회적 소유 제도화, 기업 내 권력 분배), 영구적 사적 소유권을 일시적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 누진적 소득세, 보편적 기본소득, 교육 정의 등을 주장에 기반
 - 성인의 평균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

제안. 미국, 서유럽 등 부유한 국가의 성인 평균 자산의 60%는 약 12만 유로(한화 1억6,000만원). 한국의 경우(크레딧스위스 2019년 발표, '2019 세계 부 보고서') 성인의 평균 자산은 약 1억9,000만원으로 평균자산의 60%는 1억1,000만 원 가량임

- 급여는 대학 교육비, 창업비, 직업훈련비, 주택마련 등에 사용하지만, 개인의 재량권에 맡김
- 재원 마련은 재산세와 상속세에 큰 누진세를 적용. 부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재산세 부과 제안함. 최고 부유층의 경우 누진율이 90%에 이르며 자산세는 1회에 그치지 않고 매년 내야 함
- 청년기초 자산 : 정의당의 2020년 총선 공약.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는 3,000만원을 지급
- 3년에 걸쳐 1,000만원씩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찾은 돈은 자유롭게 어디든 사용 가능
- 소요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8조 원.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으로 충당하고 추후 부유세 신설 재원 마련
- 청년기초자산은 등록금,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존 청년 지원사업인 청년수당, 창업지원,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융자 등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
- 청년저축 계좌 : 2020년 정부 시행
- 개인당 1,080만원, 3년에 걸쳐 매월 계좌에 적립되는 방식. 청년저축계좌 납입자가 매월 10만원을 내면 30만원을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줌. 3년 후 본인의 3년간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총 1,440만원이 마련됨
-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중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일하는 조건으로 지급

2.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1)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논의의 맥락

- 농업·농촌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는 직불금제, 농어가 수당,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임³⁾
 - 직불금제는 2020년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으며, 지자체 수준에서 농민수당(농어가 수당)이 실행되고 있음
- 소득보장 제도의 변화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 농정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놓여 있음
 - 과거 농정은 생산과 경쟁력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한계.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성’ 제기(송원규, 2021. 6. 8.)
 - 기존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전문화,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투자에서 사람(농민, 지역 주민)에 대한 투자로 이동
 - 지역/공동체의 사람과 자원의 지속가능성

3) 재정의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 제도 중 직불제 형태 집행 사업임. 기타 직불성 사업으로는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 취약 농가인력 지원 등이 있으나, 이들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유찬희·김태영, 2020)

<표 2-3> 농정 패러다임 변화

구 분	변화 전	변화 후
농정 모델	생산주의 농정	지속가능 농정
농정 이념	성장, 경쟁, 효율 (산업, 상품중심)	지속가능성, 포용, 혁신 (사람, 공익적 가치 중심)
농정 목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국민과 농어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
농정 대상	농어업, 농어민 중심	농어업, 농어촌, 식품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
농정 방식	중앙주도 하향식 농업	자치분권/주체 간 협력과 협치

출처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19, p. 50.

○ ‘지속가능 농정’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 극대화 지향

- 다원적 기능 : 정주, 문화, 휴양, 관광 등

- 공익 : 농업·농촌이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편익

· 공익 기능의 수행 주체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이며 그 혜택 대상은 모든 국민

- ‘공익 기능’의 정당성은 직불금, 농어민수당 등 농업·농촌 소득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됨. 아울러 이는 농민, 농촌 주민들의 권리와 동시에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

○ 소득 문제 해결을 통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증진이라는 사회적 수요 대응(유찬희, 2021, p. 7)

- 기존의 농업구조 개선 정책을 통한 농가소득 문제 해결 방식에서 농가 소득 문제를 먼저 해결,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최근 공익직불금제와 농민수당 제도의 실행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대두되고 있음

- 농민운동 및 시민사회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추진되고 있음
- 기본소득론으로의 접근 이유
 - 기본소득론이 지닌 장점 즉, 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정기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 지원 등의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의 위기 및 소득 문제 해결의 직접적 방안이 될 수 있음
 -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과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실행의 가능성이 높음. 정책효과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가능성 추진

2)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 실태

□ 농민 소득보장 관련 주요 제안

-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에 근거하여 3농(농업, 농촌, 농민)에 관한 지원 정책 추구(김성훈, 2018. 4.)
- 농업은 단지 식량과 섬유 생산하는 1차 산업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 문화와 전통을 보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식품의 안정성과 국민 생존권 보장 등의 기본산업
- 논농사의 다원적 공익 기능 : 홍수방지 효과 + 수질 정화 및 지하수 공급 효과+ 산사태 방지 효과+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및 산소 배출 효과. 최소 30조원에서 70조원으로 계측
- 그간,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농업강대국들과의 한미 FTA 협상 등으로 농업소득이 위축되고, 식량자급률이 60%에서 23%로 곤두박질. 농가소

득 미비, 열악한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수준의 현황.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살아나야 함

- 농가 기본소득 보장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

- 외국 사례 : EU의 평균 공적 지원액은 농가소득의 40~60%. 미국은 40% 수준. 캐나다는 최저 농가소득 보장제도 실시
 - 농가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최저임금소득의 50%를 농가에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 제안, 농가 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연간 총 예산은 농가 100만호 가정, 6조원 소요
 - 재원 마련 : 줄어든 농가 수 대비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농협 등의 인원 10% 감축하여 절감한 비용, 농정예산에서 비농어민 조직과 기업들에 지원되는 각종 비농업적 지원액 삭감,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전용, FTA에 따른 국가 및 기업의 이익 또는 수익금의 농업부문의 공유제 시행 등
- 지역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에서 방법을 찾아야 함. 농민기본소득은 유력한 대안(남기업, 2015. 1. 16.)

-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 농업의 전환 : 자연에 대한 착취, 고갈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자연 순환에 기초한 생태 환경의 소농으로 전환해야 함. 생태환경의 소농은 투입 노동 대비 소득 비중이 높지 않음. 따라서 농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이 필요
- 농민기본소득은 시혜를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향유하는 '정의'임. 농업의 역할은 식량생산을 넘어 생물 다양성 유지, 홍수와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전, 전통문화 계승, 정서 함양 등 다양한 기능.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에는 농업 자체의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되지 않음
- 농업의 가치는 홍수 조절 효과 13조원, 수자원 함양 및 수질 정화 4조원,

대기 정화 및 기후 순화 5조원, 토양보전 및 오염원 소화 1조원, 경관적 가치 1조원 등 연간 24조원에 달함

- 농촌과 지역을 살리기 위함.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행정기관 이전 방식은 한계.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낙후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농촌 붕괴. 농사짓는 것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농, 지역경제는 위축.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에서 방법을 찾아야 함. 농민기본소득은 유력한 대안
- 농민기본소득 실행 : 농가 가구당 월 50만원 지급. 예산은 연 6조8500억원(2013년 개인농가 114.2만 가구), 2013년 농업 소득의 60%, 농가 소득의 17.4%
- 농민 기본소득 실행의 중요한 조건으로 '토지 정의'라는 플랫폼을 떠나서는 작동되기 어려움
- 토지 정의 없는 농민기본소득은 부재지주 문제, 위장 농민 문제, 농지 투기 문제 등 수많은 문제 야기
- 현 토지 제도는 지속가능 농업과 충돌. 농업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농지 소유, 잠재적 귀농인들은 높은 농지 가격 때문에 진입 장벽이 어려움
- 농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토지 정의를 확립해야 함
- 공익농민 기본소득제(정기석, 2018. 11. 24.)
 - 공익농민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
 - 합리적 농업은 소농들의 협동과 연대의 길. 합리적 농업이 가능하려면 농민은 공익농민으로서 준 공무원 대우를 받을 때 비로소 가능
 - 농정의 목표는 상업농, 기업농, 수출농으로서 나 혼자만 역대 농부 되기가 아닌 사람 사는 농촌에서 모두 함께 살기가 되어야 함

- 국가책임 공익농민제도 도입 제안

-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에 복무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에 대해 준공무원 대우해야 함.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월 급여를 지급
- 농업의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다원적 가치 자체가 사회공익행위로서 존중받아야 함
- 농가의 소득 안정,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신규 농업인력 유입,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독일, 스위스 등은 농촌문화 및 경관보전 명목의 직불금으로 농가소득의 50~90%까지 보전
- 농업직불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도입, 이는 대농, 부농 지원에 편향되는 등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 직불금 제도의 변화 필요. 소득보조에서 농업·농촌을 공공재로서 바라보는 관점, 다원적 공익적 기능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농가소득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직불금제를 일종의 농민 또는 농가 직불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로 대체하는 전환 필요

- 공익농민 월급형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

· 1 단계

1안	· 18세~50세의 청장년 10만 명에게 5년 이상 월 150만원 지급하는 청년 공익영농요원제 제안 · 정부의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을 확대·강화하는 방식 · 병역특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제도’까지 연계하여 일종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
2안	· 특정 지역단위(광역 또는 기초)에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도 · 1안)과 독립적으로 또는 병행해서 추진 가능.

	· 소요예산, 농민 인구 수 등 지역단위 특정요건 감안, 지역의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
--	--

· 2 단계

1안	· 영세농 기초생활연금제. 소득인정액 하위 30%의 영세농에게 월 50만원 지급
2안	·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 65세 이상 고령농 약 90만명의 농민에게 월 50만원 지급

- 기본소득제는 일종의 연금과도 유사한 효능 발휘.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일종의 노인 연금제라면 영세농 또는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란 일종의 '농민연금제'라고 할 수 있음

- 3 단계 : 본격적인 차원의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국가단위로 확장, 모든 농민을 수혜대상으로 함. 2013년말 기준, 약 3백만 명의 농민에게 월 50만원의 무조건, 무기한 지급. 소요예산은 18조원.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연간 총지출액에 근사한 규모.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특별법 법제화 필요

- 재원 조성 방안

- 농정 예산 혁신 : 토건 중심 농촌지역개발사업, 기만적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불요불급한 용처 개혁
- 농어촌특별세 전용 및 증세, 농민 사회복지세 신설,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득 공유제 또는 농업파괴무역 부당이득금 환수제 도입 등 고려
- 농특세는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업에 집중 필요(일반회계 재원사업은 농업경쟁력 사업에 집중). 이에 따라 농특세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의 유력한 재원이 될 수 있음
- 농민 사회복지세. 사회복지세는 조세정의와 복지확대 차원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납세액의 15~30%를 가산하는 목적세 신설. 연간 15조원의 세수 예상

- 무역이득공유제. 한미 FTA,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분야 지원. 농어촌부흥 기금 마련과 농업인 단체-수출기업 간 상생 프로그램 마련 및 관세수입의 농어가 소득안정화 기금 전환 방식 고려
- 농가단위, 농민단위, 농촌단위의 농민 기본소득제 모델(박경철, 2018. 11. 24.)

- 배경 및 필요성

- 1993년 UR 농산물 시장개방 협정,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농업 농촌의 기반 붕괴, 농업과 농촌의 가치 약화,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
- 정부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직불제와 각종 보조금 사업은 농가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체계를 강화하고 농민의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삶의 유지를 위해 3가지 모델, 즉 농가단위, 농민단위, 농촌단위의 농민 기본소득제 모델 제안

- 직불제의 문제점

- 많은 직접직불제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에서 직접직불제의 비중이 매우 낮음. 이 이유는 농가 평균 경지면적이 약 1.5ha로 적기 때문. 2013년 기준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대비 직접직불금 비중은 각각 2.7%, 9.2%에 불과. EU의 경우 대략 30%, 70% 이상임
- 또한, 직불금 수령이 양극화. 쌀 직불금의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감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대농이 영세농보다 12배 가량 직불금 더 많이 받음

- 농민 기본소득 방안

- 1안) 농가 단위 기본소득제 : 우리나라 농업통계, 특히 농가소득 등은 대부분 농가단위로 산출. 농가수 109만(2015년 기준), 매월 50만원 지급, 총 6조 5,400억원 소요. 전체 농림수산물 예산의 절반 가량. 기존 농업직불금제도의 개선 필요
- 2안) 개별 농민단위 기본소득제 : 농가단위로 농민수당제가 실시될 경우 여성농민은 정책에서 소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권리 선언에서도 가사와 농사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농민의 권리 특히 강조, 농민단위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면 여성 농민의 권리와 지위 더욱 높아질 것

- 농민의 연령에 관한 논의 필요. 유럽 선진국은 65세 이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농업인의 자격이 사라지고 대신 복지 수혜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연령이 많아도 농업활동을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음.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음

- 1안) 경제활동인구인 20~65세 미만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대상), 매월 20만원 지급 시 연간 3조 2,227억 원 소요. 농업경영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2안) 20세 이상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15년 기준 농업인은 233만 명. 매월 20만원 시 연간 5조5,5592억 원 소요

-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 마을 혹은 농촌지역 단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은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것, 참여소득.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기본소득의 대상일 수 있음. 이는 농촌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 농촌소멸의 위기 속에서 농민과 비농민으로 나눠 기본소득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은 1/3에 불과, 농촌 내에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군 필요. 소멸의 위험이 있는

마을 혹은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실시하는 방안 강구. 먼저 시범사업 실시한 다음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시범사업 : 지역소멸위기의 면단위 지역 10개 면 선정해 개별 주민에게 매월 20만원 지급. 1개 면 2,500명 추정할 경우, 연간 농촌주민 기본소득은 600억 원 소요
- 마을 단위 기본소득은 인도의 마드야(Madhya) 지역 실험. 영국 가이스텐딩 교수의 유니세프 기금 활용. 인도의 농촌지역 메드야 지역의 9개 농촌 마을(대조군 12개 마을) 대상으로 18개월의 기본소득 지급. 긍정적 효과 보임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실행 과제

- 농민수당의 목적은 첫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둘째,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 개별 농민 단위의 농민수당이 필요
- 농민수당의 무조건성 강화. 농민수당의 조건을 강제하기보다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농민수당의 조건을 잘 지킬 경우 마을단위 포상·포창하는 방식 고려
- 농민수당제 실현을 위한 민주적 논의 과정과 제도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모색. 지자체와 농민단체 간에 농민수당(기본소득)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와 합의 과정 진행

- 농민수당의 실천적 의미

- 학교급식 정착과 유사한 과정 예상. 학교급식은 UR 농산물 개방 협상이 후 농민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출발. 중앙정부보다 지역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더 아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의회가 움직인 것

- 농민수당 역시, 지역에서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출발하여 정착해 나갈 것임
-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과 농촌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됨. 중앙정부가 주도해 만든 사업계획을 통해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재정투입 방식에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소득을 농민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
- 농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농민들에게 직접 주면 그들이 원하는 농촌과 삶의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임

□ 직불금 : 공익직불금으로 개편

- 직불제는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소득이전 보조로서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님
 -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면서 그에 따라 초래되는 농업 생산자의 소득 감소를 보상
 -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외부성에 대한 사회적 지불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되면서 국내 농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김태훈 외, 2020, pp. 15-16.)
 -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최우선 감축 대상이 되면서 이를 대체할 소득지지 정책 수단으로 직접 지불제 도입
 - 직접 지불제는 농가 소득을 지지하면서 시장 왜곡을 최소화는 정책으로 EU, 스위스, 미국, 일본 등에서 UR이후 강화하고 있는 정책수단

<표 2-4> 직불제 도입의 법적 근거와 항목별 정책

WTO 이행 특별법 11조 2항	
②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 목적	시행 정책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 지불	쌀 생산조정제(2002~2005)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재해보험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논농업직불제(현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

출처 : 송원규, 2021. 3., p. 9.

- EU 공동농업 지불체계는 보장기금의 소득지원 지불제들과 농촌발전기금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이명헌 외, 2020. 5.)

<표 2-5> EU의 소득지원 지불과 농촌발전 프로그램

	지불 프로그램	지원내용
소득 지원	기본 지불	역사적 수급단가 또는 면적당 단가에 따른 소득 지원
	녹색 지불	환경기여(작물다각, 초지, 생태 기여)에 대한 추가적 지원
	조건불리 지불	자연적 또는 특정 조건 불리 지역 농업 유지
	소농 지불	소농에 대한 정책지원과 이행조건 면제
	청년농 지불	청년농에 대한 추가적(최고 50%) 소득지원
	재분배 지불	일정면적 이하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한 분배 개선
농촌 발전	정책우선순위	집중분야
	지식이전과 혁신	혁신지원, 농림식품업과 연구혁신 연계, 농림업 분야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농장수익성과 경쟁력	경제성과 및 농장재구조화 및 현대화, 기술인력 진입 및 세대교체
	식료사슬 조직과 위험관리	일차 생산자의 농식품 사슬통합, 위험방지 및 관리
	환경체계 회복 및 보전	생물다양성, 물관리, 토양침식방지 및 토양관리
	자원효율, 기후대응 경제	농업용수 효율적 이용, 농식품 가공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 원활화, 농업분야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 배출 저감, 농림업 탄소 포집 및 감소 지원
	사회적 포용 및 경제발전	소기업 다각화, 창업, 발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 지역발전, 농촌지역 ICT확대

출처 : 이명헌 외, 2020. 5., p. 90.

- 스위스의 직접 지불체계는 기본적 지불인 식량안보지불과 그 밖에 다양한 다기능성 촉진을 위한 지불로 구성되어 있음

<표 2-6> 스위스의 지불체계

지불종류	지원대상	세부 프로그램
식량안보지불	식량생산 농업활동	기본, 생산조건불리, 개방경작지 및 영년 작물
경작경관지불	특수한 경관을 창출하는 농업활동	개활유지, 경작, 급경사, 경사포도원, 알프스 방목
생물다양성지불	무비료, 무농약, 농법 제한	품질(16개 하부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경관품질지불	경작경관 유지 및 발전	프로젝트 단위의 지불
생산체계지불	친환경적 농업 및 축산, 동물복지	유기농업, 특정작물 조방적 생산, 초지기 반 축산, 동물복지
자원효율성지불	기후보호적 농업, 자원효율적 이용	배출가스저감시비, 토지보호 경작, 정밀기 술투자, 특수살포기, 질소감소형 돼집급 이, 식물보호제 감소, 개방경지 제초제 감소

출처 : 이명헌 외, 2020. 5., p. 91.

- 한국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구조 개선에 직불제를 활용해옴
 - 2019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에는 다양한 목적의 직불제가 8개 시행됨
 -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조기에 농업경영을 이양한 농업인에게 소득보조금 지급하여 영농 규모화 장려
 - 한·칠레 FTA 대응으로 200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FTA폐업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입. 2005년 경관보전직접직불제 도입. 한미FTA 대

응으로 2012년 밭농업직불제 도입

- 가격지지 정책 축소를 위해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쌀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 현황

- 경지면적이 클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는 구조. 이는 시장개방 충격을 많이 받았을 대규모 농가의 손실을 줄이게끔 제도를 설계한 것에 기인

<표 2-7> 직불금 지급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호, %, 원)

구 분	농가 수(비중)	평균 수급액(A)	중위 지급액(B)	A/B 4)
농업경영체 전체 농가	1,602,692	1,056,468	228,016	4.63
밭농업직불금 수급농가	543,969(33.9)	239,045	108,760	2.20
쌀고정직불금 수급농가	752,232(46.9)	1,115,305	439,583	2.54
쌀변동직불금 수급농가	670,784(41.9)	1,000,687	514,819	1.94
조건불리직불금 수급농가	150,258(9.4)	352,372	202,150	1.74
4개 직불금 중 하나라도 직불금 수급한 농가	1,055,392(65.9)	1,604,326	709,375	2.26
4개 직불금 하나도 수급하지 못한 농가	547,300(34.1)	-	-	-

출처: 유찬희·김태영, 2020, p. 27.

- 농업경영체 전체 농가의 직불금 수급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는 4.63,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방식에 따라 직불금의 분배 형평성 악화. 농가 소득, 특히 농업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저소득 농가의 소득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임

○ 공익 직불금제로의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김태훈 외, 2020, p. 18.)

4) A/B 값이 클수록 직불금 분배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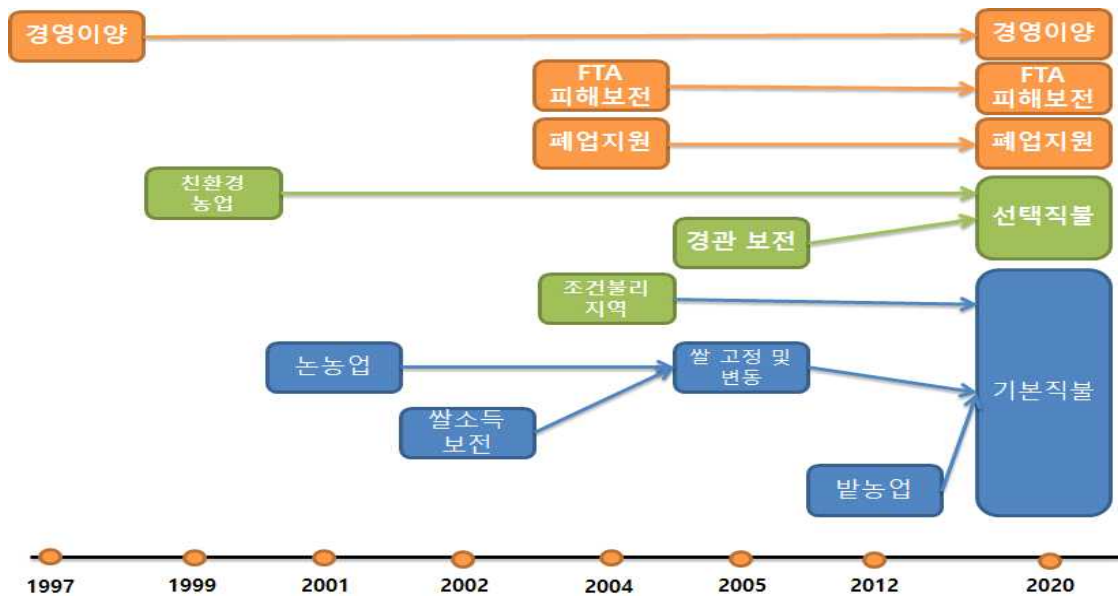
-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직불제 개편
 - 국민이 농업·농촌에 요구하는 기능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농업농촌의 가축전염병, 농산물 안정성, 환경문제 등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위협
 - 기존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으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추구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및 개발중심의 농촌정책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원적 기능 강화 중심 정책으로 전환
 -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맞게 농정 수단을 직불제 중심으로 전환, 특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추진
- 기존 직불제의 한계 극복(김태훈 외, 2020, p. 20.)
 - 쌀 공급 과잉, 가격폭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 폭증으로 기존 직불금제의 개편 불가피. 쌀 편중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문제. 쌀 직불금의 면적비례 방식 지원에 따라 소득이 많은 대농에 편중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대에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비중은 미미, 국민이 원하는 농업·농촌의 공익 제공에 한계
 - 다양한 직불제의 시행에 따라 직불제간 정책 효과 상충 문제. 일부 직불제의 실효성 문제 제기됨. 규모화를 위해 고령농의 조기 은퇴 장려하는 경여이양직불제와 쌀 및 밭농업 직불제 등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정책은 상충, FTA 폐업지원제의 경우 지원면적이나 농가 수가 적어 성과 미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농업·농촌의 역할과 방향 전환에 맞게 직불제 개편

-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제고
- 소농의 소득 보전 지원 등 기존의 직불금제의 형평성 문제 개선

○ 공익직불금제

- 직불금은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거나, 영농활동 성과를 보완하는 방식에서 공익기능 증진을 장려하는 보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

<그림 2-1> 직불금 체계 변천



출처 : 유찬희·김태영, 2020, p. 28.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정의
- OECD(2001) : ‘영농활동을 하면서 상품 산출물과 비상품 산출물을 결합 생산. 비상품 산출물이 외부효과나 공공재 성격을 지님. 그러나 비상품 산출물에 대한 시장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것(시장실패)’(유찬희·김

태영, 2020, p. 40.)

- 예. 쌀(상품 산출물)을 키우면서 논에 물을 가두면(담수 기능) 긍정적 외부효과(비상품 산출물)가 생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의 공익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공익직불제 개편 형태

<표 2-8> 공익직불금 개편 형태

개편 전		⇨	개편 후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공익 직불제	선택형 공익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기본형 공익 직불제	면적 직불제 (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 직불제 : 고정, 변동 밭농업 직불제 : 고정, 논 이모작					소농 직불제(정액)

출처: 김태훈 외, 2020, p. 37.

- 공익형 직불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고, 기본형은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이루어짐
- 소농직불금은 지급 대상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외소득이 4,500만원, 축산업 소득은 5,600만원 미만 등 7가지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경작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논밭은 지급대상 경지면적이 2ha 이하까지는 ha당 205만원, 2ha~6ha 구간은 197만원, 6ha 이상은 189만원을 지급하되 최대 상한은 30ha로 함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의 준수사항은 환경·생태 등 5개 분야 총 17개 의무 설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표 2-9>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상 준수사항

분야	준수 의무	구분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법상 의무
	비료적정 보관 관리	타 법률상 의무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타 법률상 의무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타 법률상 의무
생태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타 법률상 의무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타 법률상 의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법상 의무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타 법률상 의무
공동체	방제대상 병충해 발생 시 신고	타 법률상 의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신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신규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 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법상 의무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신규
	기준초과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타 법률상 의무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신규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교육 이수	신규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신규

출처 : 유찬희·김태영, 2020, p. 43.

- 그럼에도 공익형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면적 보상의 성격이 강함
- 소농직불금은 22%, 면적 직불금(작물 생산면적에 대한 보상)이 전체 직불금의 74.7%를 차지함

<표 2-10> 2020년 공익형직불금 현황(총 2조 3,564억 원)

기본형	2조 2,769억 원	선택형	795억 원
소농	5,162억 원	친환경	240억 원
면적	1조 7,607억 원	경관보전	89억 원
		논활용	466억 원

출처: 김찬휘, 2021, 6. 8., p. 84.

□ 농민수당

○ 선도적인 지자체 농가 소득 보장 정책 사례

- 충남의 농업환경실천 사업. 농업직불금을 기본소득형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 충남도가 자체 지급해왔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2017년부터 기본소득제 방식으로 개편. 기존의 면적 단위 직불금을 기본소득방식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획기적인 농업보조금 개편으로 평가(유영성 외, 2020, p. 39.)
- 충남도는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ha당 41.1만원(현금 23.1만원+비료 18만원) 지원, 그 결과 전체 농가의 65%를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의 직불금은 평균 20만원대 인데 반해 전체 농가의 7.6%인 3ha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원의 직불금 수령. 평균 6.5배의 직불금 받았음
- 2016년 벼 경영안정 직불금 287억원과 맞춤형 비료 사업 198억 원(일몰제로 발생한 금액)을 합한 485억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연간 36.7만원을 균등 지급
- 마을단위 적정시비 실천.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 작물다양화 실천, 농업생태보전, 농촌경관 개선을 선택적으로 실천하는 이행 조건. 이는 농촌 내 대농 위주 면적 기준 농업직불제에서 영세 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정부의 농업보조금 개편의 기폭제 역할
- 강진군. 농가단위 농민수당 도입 결정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억원~38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3ha 한도 내에서 면적에 따라 벼 재배 농가 5,000호에 지급해옴
- 이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 농가에 보조금 지급은 상충됨. 또한 벼 재배 농가 간 형평성과 발작물 재배 농가 간의 형평성 문제 존재
- 2017년 배 재배 경영안정자금 38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재원 50

억 원은 논농사, 밭농사 구분 없이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약 7,100 농가가 연간 70만원의 농민수당 받음. 35만원은 현금, 35만원은 지역 화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

- 해남군. 2019년 농가의 면적과 업종 구분 없이 전체 농가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초기 논의는 소득보전 측면에서 소농가부터 단계별 확대하는 방안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전체 농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최종적으로 전체 농가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
 - 농민수당은 연간 60만원, 14,579호에 지급. 지역화폐로 연간 2회 나눠 지급
- 충남은 부여군이 농민수당 최초 시행. 전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시행.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여주와 양평에서 먼저 시작함

○ 농민수당 추진 현황

- 목적과 취지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어업인의 기본권을 보장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농민수당 실시 현황

<표 2-11> 광역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현황

지자체	대상(명)	예산(원)	지급액(원)	시기
전남	24만3,000	1,459억	연 60만	2020
충남	16만5,000	1,320억	연 80만	2020
전북	10만2,000	613억	연 60만	2020
강원	8만9,000	625억	연 70만	2021
충북	19만8,000	544억	연 50만	2022
경기	23만	352억	분기별 15만	2021.4분기
제주	5만6,000	224억	연 40만	2022년

*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농민 개인별 지급

- 충남의 농어가 수당

- 농어가 수당 지급 요건 : 자격요건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종사한 농임어업외 소득 년 3,700만 원 이하의 농어업인을 대상. 농가단위로 지급
- 충남 농어민 수당 지급 현황(2020년) : 총 대상 농어가 155,280호. 지급액 125,466,450천원. 연 80만원, 지역화폐(체크형 카드) 지급. 사업비 부담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구성

o 농민수당의 특징

- 농민수당의 조례 규정

- 대다수 지자체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몇 가지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급하는 수당, 이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원”으로 규정

<표 2-12> 농민수당 조례 특성

구분	일반 특성	비고
목적	· 농업의 공익적 기능증진, 지속가능발전,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등	
법적 근거	· 대부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준용	
지급 대상	· 농업인. 대부분 농업경영체 등록, 지역 내 거주, 실제 영농 경력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 대부분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	· 일부는 세대 분리 시 1명에게만 지급 규정
준수 사항	· 대부분 준수사항을 규정	· 강진군, 순천시, 의령군, 청송군은 준수사항 미규정
지급 횟수	· 대부분 연 1~2회 균분 지급	
금액	· 대부분 예산 한도 내로 규정	
지급방식	·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급	

출처 : 유찬희·김태영, 2020, p. 54.

- 공익직불제와 비교(유찬희·김태영, 2020. p. 61.)

-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는 공통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음. 반면 공익직불제가 미래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한 것에 비해 농민수당은 그간 제공해온 공익 기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함
- 또한, 공익직불은 공익가치에 대한 보상이나 투자인 반면, 농민수당은 이에 더해 소득 보전이나 삶의 질 향상 같은 더 넓은 상위 개념이 될 수 있음. 이는 농민이 국민으로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점을 기본 권리로 인정
- 한편, 공익직불제는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반면, 농민수당은 매월, 연 2~회로 균분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농민수당을 기본소득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와 비슷한 반면,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봄
- 반면, 노인이나 아동 등 일부의 인구 집단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도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범주형 기본소득이며 아울러 사회수당과 범주형 기본소득은 상호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견해도 존재(이지은, 2020, pp. 9-10.)

- 한편, 농민수당은 일정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 소득으로 평가

<표 2-13>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주요 특징 비교

구분	공익(기본)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주요 목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 지급 (미래지향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 지급 (현재까지의 기여 인정)	기본권 및 자유 보장
지급 요건	구체적으로 설정	구체적으로 설정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
지급 기준	농가농지면적	농가(경기도, 부여군 제외)	개인
지급 방식	직접지원(현금)	직접지원(현금/지역화폐)	직접지원(현금)
시행 주체	중앙정부	지자체	중앙정부/지자체

출처 : 유찬희·김태영, 2020, p. 69.

□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제기

○ 기본소득 정의

- 개인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달) 지급되는 적당한 금액의 돈.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불림

○ 해외 기본소득 관련 주요 사례

- 미국 알래스카 주, 영구펀드

- 전 세계 유일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기본소득으로 평가

- 1970년대 중반,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루도만(Prudhoe Bay) 유전을 알래스카 시민들을 위한 소유권 확보, 1976년, ‘알래스카 영구 펀드’를 설립
 - 1982년 첫 시행. 알래스카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 동일한 액수의 연간 배당금을 받을 자격 주어짐
 - 2015년의 경우, 약 63만7천명이 수급, 1인당 2072달러 지급. 이는 알래스카 1인당 GDP의 3퍼센트에 근접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2017년 ~ 2018년 2년간 전국단위 무작위 통제 실험(2년). 핀란드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을 대상
 - 기초실업보장 대상자에게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 지급. 고용효과, 노동의욕 효과 검증
 - 웰빙, 건강, 신뢰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효과 나타냄
- 농민기본소득 도입 주장 및 관련 법제화 논의
- 농민수당의 한계점(김찬휘, 2021. 6. 8.)
- 지자체 차원의 수당으로 재원의 안정성 확보 과제 및 지역별 지급액의 차이 존재
 - 농민수당으로 부르나 실지로는 농민 개인이 아닌 호당 지급, 농어가구 지급이란 점에서 직불금과 같음. 정책의 소외층, 특히 여성농민의 소외 우려 존재
 - 액수가 월 5만원 수준으로 농업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보상과 소득안정

이란 점에서 미흡한 편

- 농민기본소득으로 발전 필요성

- 국가단위 지급 정책.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인에 대한 지급 원칙, 소농의 소득안정에 부합하는 액수의 의미 있는 지급 목표

- 소요 예산

- 지급대상 230만 명. 농민 1인당 연간 360만원. 전체 8조 원 내외
- 2020년 농업예산 16조 원(전체 예산 512조원의 4.6% 수준), 농업예산 5% 수준 인상(전 인구대비 농업인구 비율), 10조원 증액 필요

<표 2-14>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농민기본소득 필요성	·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 생존을 위협 · 대다수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 · 과밀화된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냄
농민의 정의	· 3년 이상 해당 시·군 실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민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어도 3년 이상 거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 · 해당 시·군에서 10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은퇴한 65세 이상의 농민과 농업 노동자
농민기본소득 액수	· 1인당 월 30만원부터 시작
공익직불제와의 차이	· 소농직불제는 금액이 너무 적고, 대농 위주의 면적직불금이 여전히 중심에 있음 · 농촌진흥지역 안팎의 단가 차이가 큰 것도 문제 · 쌀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농업소득 감소를 벌충할 필요가 있음

농민수당과의 차이	· 농민수당은 지자체 차원의 사회수당, 농민기본소득은 국가 단위 범주형 기본소득임 · 농민기본소득은 개인단위, 농민수당은 호당 단위로 지급 · 농민기본소득 지급액은 농민수당보다 많아야 함
-----------	--

출처 :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관련 입법 논의

<표 2-15>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관련 입법 제안 현황

주체(소속)	법안 내용	지급대상 금액(연)	중앙 정부 재정 부담
윤준병의원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발의	농어업인 120만원	50~90%
박덕흠의원 (전 국민의힘)	농업인 기초연금 법안 발의	농 가 당 120만원	40~90%
이만희의원 (국민의힘)	농어업인 기초연금 법안 발의 (65세 이상, 10년 이상 종사 농어업인)	농 가 당 120만원	100%
허영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영농조합법 인 1년 이상 소속된 농업 종사자)	농 어 업 인 (월) 30만원	100%

o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 농촌기본소득은 소멸위험이 있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 유무, 노동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지원금
- 농촌기본소득의 실시는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제시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 정책

<표 2-16>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구 분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목표/지향	·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 ·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마중물	
대상	농민(농업종사자)	농촌주민(비농민 포함)
주요 관점	·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 농업의 생태적 전환	· 농촌소멸 방지(농촌재생) · 국가균형발전
예산 ⁵⁾ (월 30만원)	8조 원 (농가인구수 2,244,783명)	16조6천억 원 (농촌인구 4,609,011명)
난점	다른 직업군의 반발	도시민의 반발
보편적 기본소득 이후의 발전방향	농업참여소득(친환경)	

출처 : 김찬휘, 2021. 6. 8., p. 82.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8.)
- 경기도는 1개 면 주민 4,000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 예정.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공모, 대상 면을 선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
-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 5년간 지역 화폐 지급 예정

5) 예산은 기본소득 지급을 전체 농가 인구 및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으로 유의. 만약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한정한다면 예산은 훨씬 줄어든 것임

제3장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 및 소득보장 제도 평가

1.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

1) 농업·농촌의 인구 및 소득 관련 현황

□ 농업·농촌 인구관련 지표의 추세

○ 농가 인구의 감소

- 농가인구는 231만7천명(2020년 12.1. 기준), 전체 인구에 대한 농가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2020년 4.5%

<표 3-1> 전국 연도별 농가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농가인구	4,031	3,434	3,063	2,569	2,317
농가 인구 비중	8.8	7.3	6.4	5.0	4.5

출처 : 통계청, 2021. 4. 27.

- 전국의 농가 인구는 230만1천7백 명(2020년 12. 1 기준). 전체 인구 비중은 4.5%이며, 2015년 대비 25만2천명(△9.8%p) 감소
- 농가인구의 증감률은 2015년 농가인구는 2010년 대비 16.1%p 감소한 반면, 2020년 농가인구는 2015년 대비 9.8%p 감소하여 감소 폭은 많이 줄어듦⁶⁾

6)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농가 수는 28,800호(2.8%p), 농가 인구수는 72,150명(3.1%p) 각각 증가함. 단, 2020년 농가인구 등 통계는 잠정 조사결과임을 고려

<그림 3-1> 전국 연도별 농가 인구 및 증감률 추이



출처 : 통계청, 2021. 4. 27.

○ 농가 인구 연령 구조, 고령화 심화

<표 3-2> 연령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천 명, 세)

	2015년		2020년		전체 인구	
합계	2,569	구성비	2,317	구성비	51,781	구성비
0 ~ 14세	150	5.8%	101	4.3%	6,297	12.2%
15 ~ 64세	1,433	55.8%	1,232	53.2%	37,358	72.1%
65세 이상	987	38.4%	985	42.5%	8,125	15.7%
중위 연령	60.1		62.0		43.7	
고령인구 비중	38.4%		42.5%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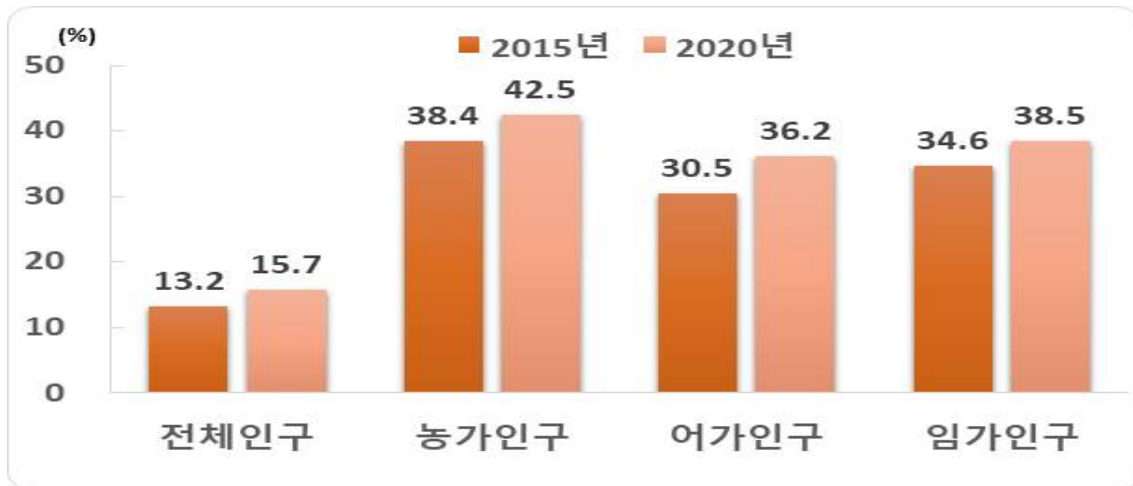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1. 4. 27.

- 농가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0~14세)는 4.3%로 전체 인구의 유소년 인구 12.2%보다 7.9%p 적고, 청장년 인구(15~64세)는 53.2%로 전체 인구의 청장년인구보다 18.9%p 적음
- 중위 연령은 62.0세로 전체 인구 43.7세보다 18.3세 높음
-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2.5%, 2015년에 비해 4.1%p 증

가,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중 15.7%보다 약 3배 높음

- 연령대 별 농가 인구 비중 순위는 70대 이상(29.4%), 60대(27.8%), 50대(18.1%) 순.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함

<그림 3-2> 고령인구 비중 : 2015-2020



출처 : 통계청, 2021. 4. 27.

- 농가 수 및 농가 인구는 출산률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로 그 감소 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표 3-3> 2020년 연령별 귀촌가구주

(단위 : 명, %)

	합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국	345,205	71,614 (20.7)	78,110 (22.5)	61,122 (17.7)	63,472 (18.4)	45,347 (13.1)	25,540 (7.4)
충남	35,573	7,761 (21.8)	7,880 (22.2)	6,224 (17.5)	6,579 (18.5)	4,532 (12.7)	2,597 (7.3)

출처 : 통계청, 2021. 6. 23.

- 귀촌 가구주의 연령별 비중은 30대 비중이 제일 높고(전국 22.5%, 충남 22.5%), 다음으로 20대 이하,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남. 평균 연령은 45.1세

○ 농업 경영체 미세 증가 및 농업인 수 감소

<표 3-4> 전국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 : 건, h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영체수	1,589,795	1,618,354	1,644,899	1,658,627	1,686,068	1,730,905
노지면적	1,577,592	1,559,152	1,519,804	1,515,555	1,482,803	1,465,228
시설면적	74,814	77,489	83,158	82,078	82,258	82,064
농업인수	2,582,915	2,545,525	2,465,897	2,442,966	2,446,568	2,478,68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서비스⁷⁾

- 2020년 전국 농업경영체 수는 1백73만9백 건. 연도별 증감을 보면, 2020년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 2019년은 전년도 대비 1.6%, 2018년은 전년도 대비 0.8% 증가. 2020년은 최대 증가
- 농업인 수는 2020년 2백47만8천6백 명. 2015년 대비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증가, 2020년은 2017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전년도 대비 1.3% 증가함

□ 농가 소득의 현황과 추세 : 농업소득 비중 감소, 이전소득 비중 증가

- 2020년 농가 평균소득은 4,503만원. 전년대비 9.3%p 증가(통계청, 「2020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2021. 5. 26.)
- 농업소득 15.2% 증가, 이전소득 27% 증가, 농업외 소득 4.1% 감소
- 농업 소득은 1,182만원, 농업외 소득은 1,661만원, 이전소득은 1,426만원. 특히 이전소득은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대비 27.0% 증가

7) https://edu.agrix.go.kr/uni_docs7/biOlap/dashBoard.do

<표 3-5> 농가소득 구성비(2020년)

농업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소득	비경상소득
36.9%	31.7%	26.2%	5.2%

출처 : 통계청, 2021. 5. 26.

<표 3-6>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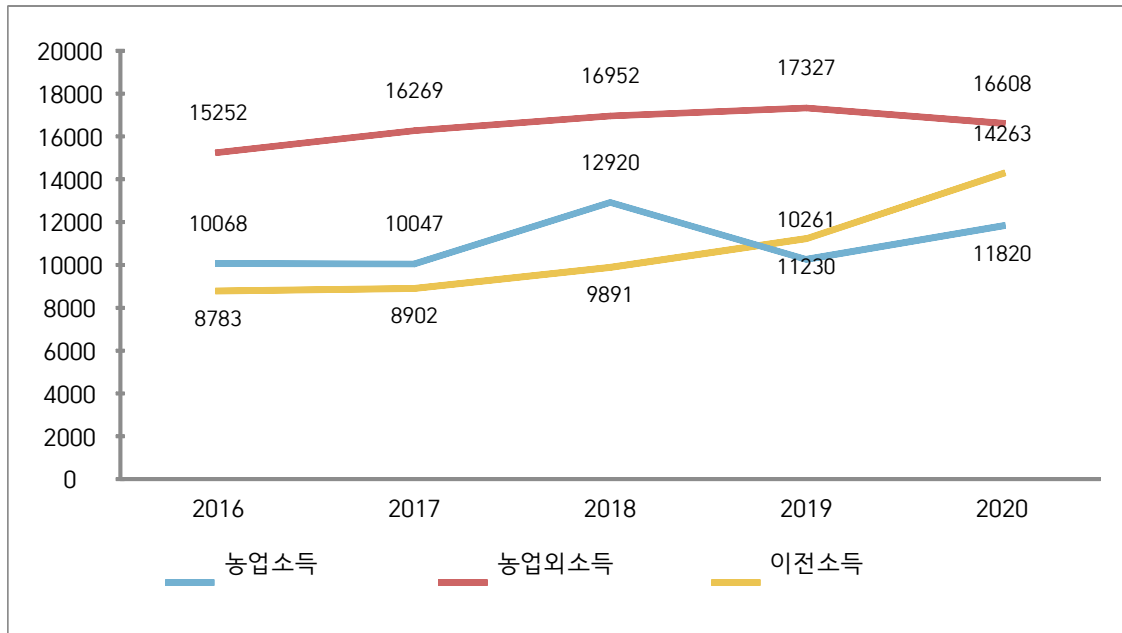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농가 소득	37,197	38,239	42,066	41,182	45,029
농업 소득	10,068	10,047	12,920	10,261	11,820
농업외 소득	15,252	16,269	16,952	17,327	16,608
이전 소득	8,783	8,902	9,891	11,230	14,263

출처 : 통계청, 2021. 5. 26.

<그림 3-3>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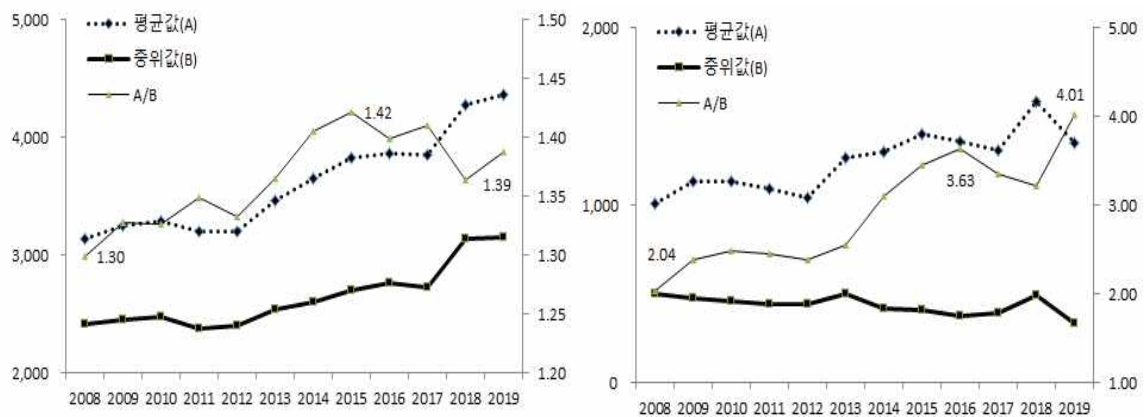
- 농가 소득의 특징

- 2000년대 농가소득의 증가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외 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
-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의 추이를 보면, 2019년 이후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보다 이전소득의 비중이 큼
-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35%(2010년대 이후)

□ 농가 소득의 불평등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심화

○ 농가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그림 3-4> 농가 및 농업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변화: 2008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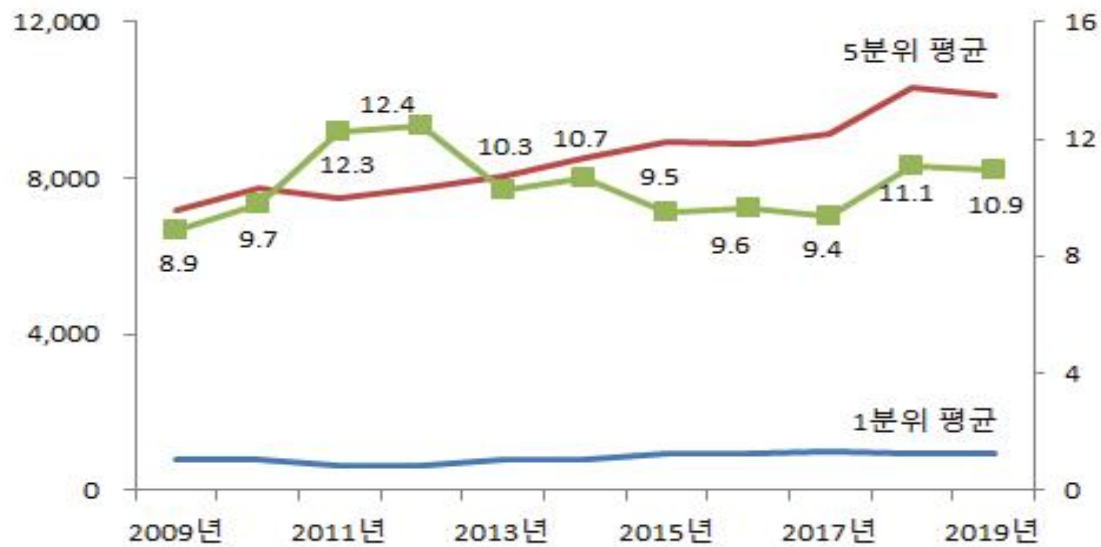


출처 : 유찬희·김태후, 2020. 8. 24., p. 11.

- 왼쪽 농가소득의 중위값과 평균값의 차이는 1.37이며, 오른쪽 농업소득의 중위값과 평균값의 차이는 2.92임
- 중위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클수록 일부 농가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
- 농업소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농업소득의 격차를 농업외 및 이전소득으로 이 격차를 완화시킴. 이전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

키는 효과를 보여줌

<그림 3-5> 농가소득 5분위 배율 : 2009년~2019년



출처 : 유찬희·김태후, 2020. 8. 24., p. 12.

- 소득 1분위 농가의 소득은 정체. 소득 5분위 농가소득은 증가.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함. 상위 20%는 1억 99만원, 하위 20%는 926만원으로 농가 격차는 11배
- 소득 5분위 배율⁸⁾은 2012년 12.4로 최고점 이후 점차 완화, 그럼에도 소득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2015~2017년 동안에도 5분위 배율은 9.4 이상. 또한 2018~2019년에는 다시 10.9로 커졌음
- 2019년 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4.4인점을 고려하면 농가간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

○ 농가 구성 및 농지규모에 따른 불평등

8)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하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계산. 소득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

<표 3-7> 농지규모에 따른 농가 구성(2019년)

		전체	0.5ha 미만	1.0ha 미만	1.0ha이상~ 3.0ha미만	3.0ha 이상	5.0ha 이상	10.0ha 이상
전 국	농가 수	1,007,158	478,525	705,025	216,378	77,164	35,478	9,394
	비율		47.5%	<u>70.0%</u>	21.5%	<u>7.7%</u>	3.5%	0.9%
충 남	농가 수	119,903	48,315	76,119	31,934	11,139	5,195	1,466
	비율		40.3%	<u>63.5%</u>	26.6%	<u>9.3%</u>	4.3%	1.2%

출처: 통계청, 2021. 4. 27.

- 농지규모에 따른 농가 구성은 소농(0.5ha 미만, 공익직불금 수급 기준)은 전국은 47%, 충남은 40% 정도이며 3.0ha 이상 농가는 전국은 7.7%, 충남은 9.3%로 충남이 조금 높게 나타남
- 0.5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50%에 육박하며, 전국과 충남 전체 농가의 2/3이상이 1.0ha 미만임. 현 공익직불금의 소농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⁹⁾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농가의 2/3 가량은 소농으로 구성
- 농가 규모 구성 및 농업 소득의 등락을 고려할 때, 농가의 이전소득,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소농들의 소득 안정 정책의 중요성 재확인

<표 3-8> 농지규모별 농가 소득 구성(2020년)

(단위 : 천 원, %)

	농가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 의존도
전국	45,029	11,820	16,608	14,263	26.3
충남	45,643	13,389	16,037	14,075	29.3
0.5ha미만	36,378	2,136	18,883	13,118	5.9
0.5ha-1.0ha미만	39,878	6,722	18,293	12,509	16.9
3.0ha-5.0ha미만	64,685	29,350	13,682	18,505	45.4
5.0ha-7.0ha미만	75,156	37,707	13,530	20,318	50.2
10ha 이상	107,434	57,790	18,159	28,978	53.8

9) 경지면적외 경지면적·농업노동투입량·가족노동비율·농업자산·농업소득 등 8가지 기준을 이용, 대농·중농·소농 구분할 경우, 소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1.6ha(4840평)로 평가(김태화, 2021, 7. 7.)

- 경지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보면, 소농(0.5ha 미만)의 농가소득은 36,378천원, 대농(10ha이상)은 107,434천원으로 소득 격차는 2.95로 약 세 배가량으로 나타남

<표 3-9> 소농과 대농의 농가 소득 구성별 차이(2020년)

농지 규모	농가 소득	농업 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 소득
20배	2.95	27.05	0.96	2.21

- 농가 소득의 각 구성 부문에 따른 소농과 대농의 소득격차는 농지규모의 차이는 20배인 가운데, 농업소득은 27.1, 농업외 소득은 0.96, 이전소득은 2.21로 나타남.
- 농업소득은 27배의 차이로 농지규모의 차이를 넘어선 반면, 농업외 소득은 양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고, 이전 소득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남
- 공익직불금의 면적에 따른 보상 차이라는 특성에 따라 대농의 이전 소득은 소농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은 농지 규모에 따른 농가소득의 소득격차를 완화해주는 효과
- 2020년 소농 직불금과 여러 지자체에서의 농민수당의 지급에 따른 소농들의 이전 소득 증가에 따라 0.5ha 미만의 소농들의 이전소득이 0.5ha ~1.0ha 미만 농가의 이전소득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농가소득의 불평등 현황(박경철 외, 2019. 11.)

<표 3-10> 충남 농가소득의 소득구간 별 가구 현황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1천만원 미만	16.1%	10.7%	13.7%	10.1%
1천만원 미만~3천만원	65.5%	47.5%	57.2%	44.8%
1천만원 미만~4천만원	78.2%	60.4%	69.4%	57.0%
7천만원~1억원	3.7%	10.7%	5.8%	10.1%
1억원 이상	2.3%	10.4%	2.5%	9.8%

- 연간 평균 1천만 원 이하의 저 소득인 농가의 비중은 매 조사 시점 10%를 넘게 나타나 장기간 저 소득 농가의 소득정체 지속
- 연간 평균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수준 농가의 비율은 50% 안팎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이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표 3-11> 충남 농가소득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평균	28,591	36,759	32,503	46,187
중위값	22,876	27,728	26,122	33,418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 ¹⁰⁾	1.25	1.33	1.24	1.38

- 충남 농가소득의 중위값(전체 농가의 한 가운데 위치한 농가의 소득)은 2003년 22,876천원, 2008년 27,728천원, 2013년 26,122천원, 2018년 33,418천원으로 나타남
- 한편, 농가 소득이 상승했던 시점인 2008년과 2018년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는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의 평균 상승은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에 기인, 저 소득층의 소득정체 현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됨

<표 3-12> 충남 농업소득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평균	11,581	13,465	11,558	17,927
중위값	6,806	6,634	5,436	6,627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	1.70	2.03	2.13	2.71

- 농업소득 추이는 2018년 농업소득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음
- 반면, 농업소득에서의 불평등도는 크게 상승하여 농업소득의 뚜렷한 양극

10)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 = 평균/중위값.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음

화 현상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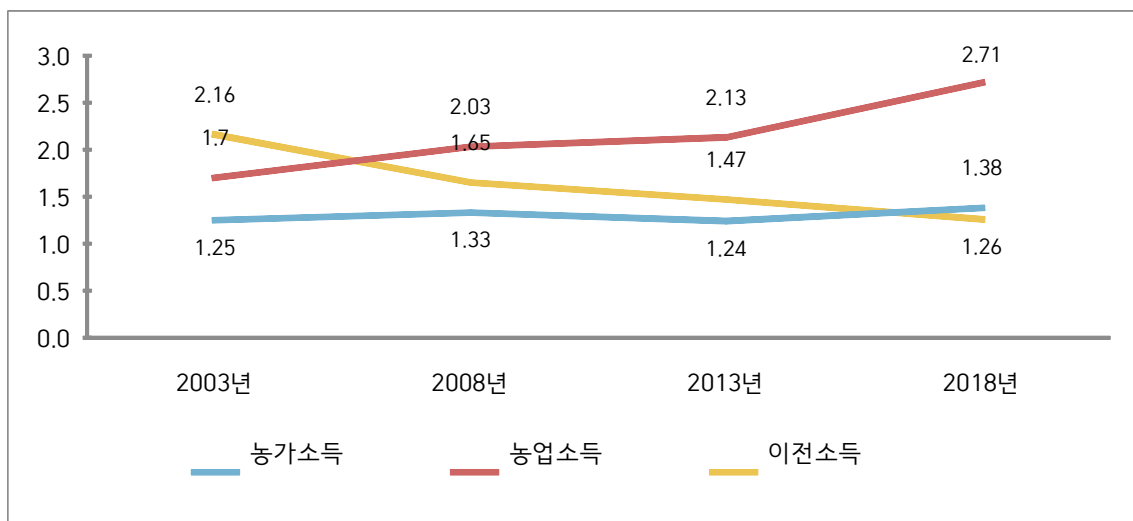
<표 3-13> 충남 이전소득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평균	1,945	5,527	5,843	9,664
중위값	901	3,356	3,985	7,674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	2.16	1.65	1.47	1.26

- 이전소득의 경우, 큰 폭으로의 증가하며 이전 소득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줌

<그림 3-6> 충남 농가소득 주요 구성부문의 불평등도 추이



- <그림 3-6>은 농가소득, 농업소득, 이전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조사 연도 별로 비교한 것임.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농업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이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 가장 낮게 나타남. 아울러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도시와 농가 소득의 격차

- 1995년 이후 농가소득의 정체 및 감소. 반면 도시근로자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일정 수준의 격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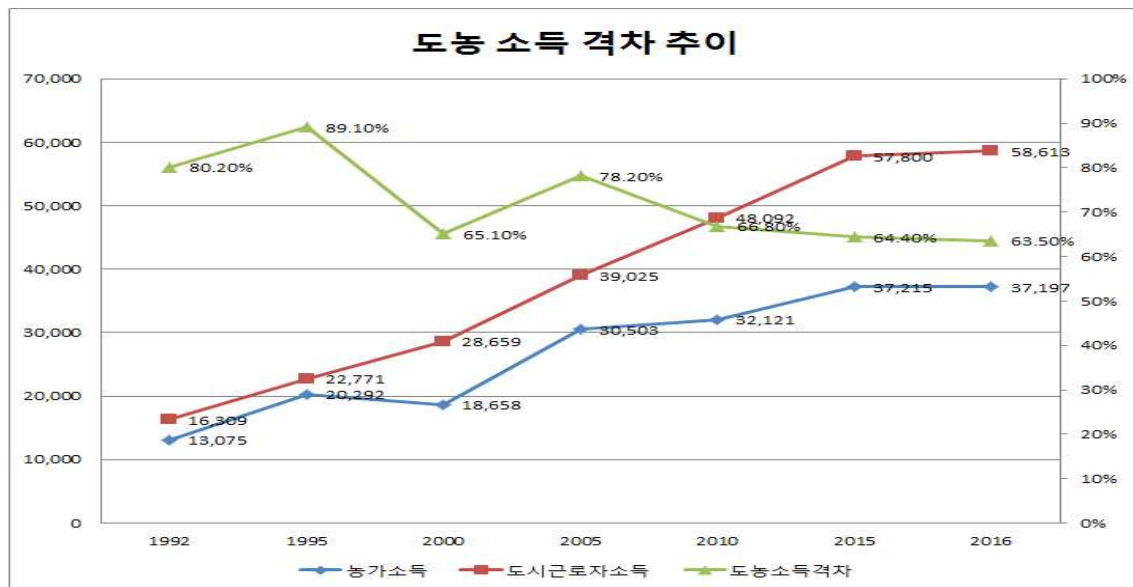
<표 3-14> 도농소득격차 : 1992년~2016년

(단위 : 천원, %)

	1992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농가소득	13,075	20,292	18,658	30,503	32,121	37,215	37,197
도시근로자소득	16,309	22,771	28,659	39,025	48,092	57,800	58,613
도농소득격차 ¹¹⁾	80.2	89.1	65.1	78.2	66.8	64.4	63.5

출처 : 국토연구원, 2021. 4.

<그림 3-7> 도농 소득격차 연도별 추이



- 199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0.2% 차지했으나, 2010년 66.8% 수준에 그쳐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벌어짐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평균 62.3% 선에서 유지

11) 도농소득격차 : 농가소득/2인 이상 도시근로자소득 ×100

- 최근 3년간 도농격차는 2018년 64.9%, 2019년 59.3%, 2020년 62.2%로 나타남

2) 최근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 변화(2020년)

□ 주요 특징

- 2020년 농업·농촌의 농가 소득 등 여러 통계지표는 2019년에 비해 농업·농촌의 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농가 인구 감소, 농가 소득 정체, 농가 소득 양극화, 도농소득격차의 장기적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2020년에 들어 농가 인구 및 농가 소득의 소폭 증가, 소득불평등 감소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이는 최근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 코로나 19 등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각종 소득보장 제도의 효과로 평가됨
 - 전체 농가의 약 64%가 1ha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공익직불금으로의 개편에 따른 소농직불금제와 농어가 수당 정책의 도입은 직접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전체 농가 인구의 증가, 농업 경영체 증가, 고령화 감소, 농가 소득 불평등의 감소, 도농소득격차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농업·농촌의 주요 지표 개선

- 충남의 농가 인구 및 고령화 비율 변화
 - 2019년까지 충남의 농가 수 및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고령화 비율도 감소

<표 3-15> 충남 농가 수 및 농가 인구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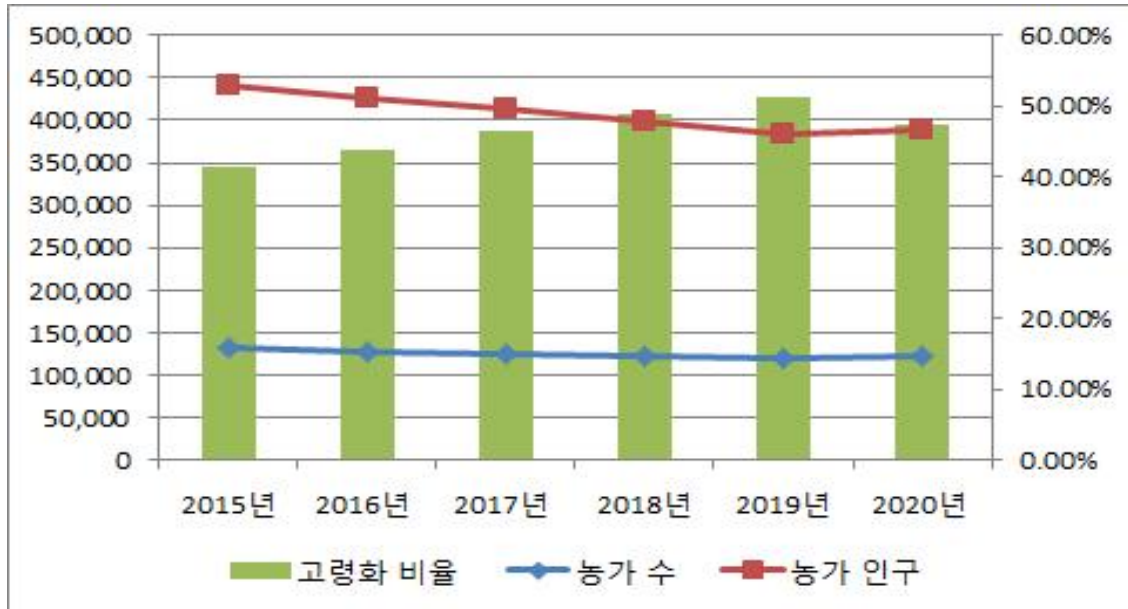
(단위 : 호,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가 수	132,008	128,275	125,886	123,480	119,903	122,184
농가 인구	308,455	296,801	288,800	276,426	263,124	266,755
65세 이상 농가인구	128,117	129,759	133,966	135,284	134,990	126,442
고령화 비율	41.5%	43.7%	46.4%	48.9%	51.3%	47.4%

출처 : 통계청, 2021, 4. 27.

- 2020년 충남의 농가 인구는 26만6천8백 명이며, 충남 전체인구의 농가인구 비중은 12.6%임
- 이는 2015년 대비 4만1천7백명(13.5%p) 감소한 수치이나, 2019년에 비해서는 농가 인구는 3,631명(1.4%p) 증가한 것임
- 농가 수로는 2020년 122,184호로 2019년 대비 2,281호(1.9%p) 증가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역시 2020년 47.4%로 2019년 51.3%에 비해 3.9%p 감소

<그림 3-8> 충남의 농가 수, 농가 인구, 고령화의 연도별 추이
(단위 : 호, 명, %)



○ 귀농·귀촌의 증가

- 충남의 2020년 귀농 가구의 증가는 전국 증가율보다 9.1%p 높게 나타남

<표 3-16> 귀농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국	11,422	12,489	9.3
충남	1,260	1,492	18.4

출처 : 통계청, 2021. 6. 23.

- 2020년 전국 귀농 가구는 12,489 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9.3% 증가(귀농인은 12,570명)
- 충남의 귀농 가구는 1,492 가구. 전년도보다 18.4% 증가
- 귀농인중 전업귀농인은 8,625명(68.6%), 겸업 귀농인은 3,945명(31.4%)

<표 3-17> 귀촌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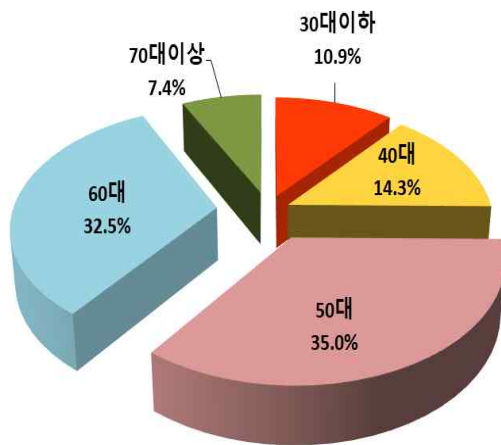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국	317,660	345,205	8.7
충남	33,654	35,573	5.7

출처 : 통계청, 2021. 6. 23.

- 2020년 귀촌 가구는 345,205가구(귀촌인 447,122명)로 전년 대비 8.7% 증가. 충남의 경우는 35,573가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음

<그림 3-9> 전국 귀농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 귀농 가구주 평균 연령은 55.3세
- 연령별 비중은 40대 14.3%, 50대 35.0%, 60대 32.5%
- 50대 ~ 60대가 전체의 67.5%를 차지함

출처 : 통계청, 2021. 6. 23.

○ 농업경영체수 증가

<표 3-18> 충남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 : 건, h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영체수	182,357	184,184	186,342	187,312	188,524	<u>193,926</u>
노지면적	214,156	212,135	208,935	207,633	203,398	201,324
시설면적	11,462	11,907	13,105	12,860	13,113	13,218
농업인수	301,324	296,724	284,791	282,152	280,362	284,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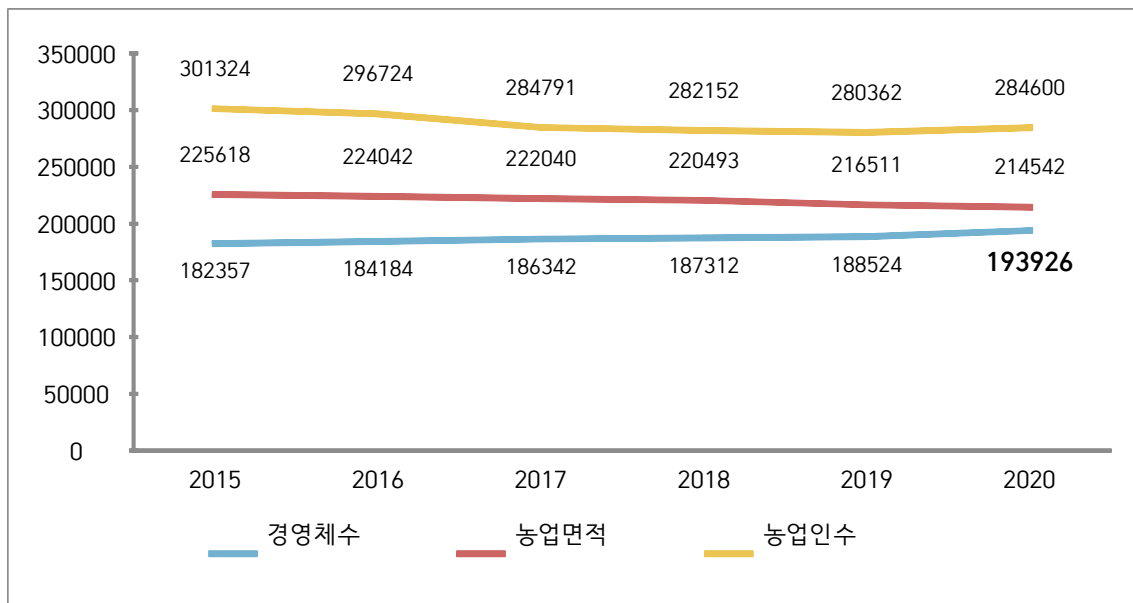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서비스

- 2020년 충남의 농업경영체 수는 193,926건으로 작년대비 2.8% 증가. 이

는 전년도 대비 2019년 0.6%, 2018년 0.5% 증가폭을 크게 상회

- 농업인수는 2015년 대비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증가. 2020년 284,600명으로 2019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충남의 농업 경영체 수와 농업인 수가 그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증가한 점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공익직불금 및 농어가 수당의 지급 기준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3-10> 충남 농업경영체, 농업 면적, 농업인 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ha, 명)



○ 농가 소득 증가

- 2020년 충남의 농가 소득은 4,564만원. 전년 대비 3.6% 증가. 특히 이전 소득은 2019년 대비 20.1% 증가
- 농가소득의 구성비는 농업외 소득 35.1%, 이전소득 30.8%, 농업소득 29.3%, 비경상소득 4.7% 순임

<표 3-19> 충남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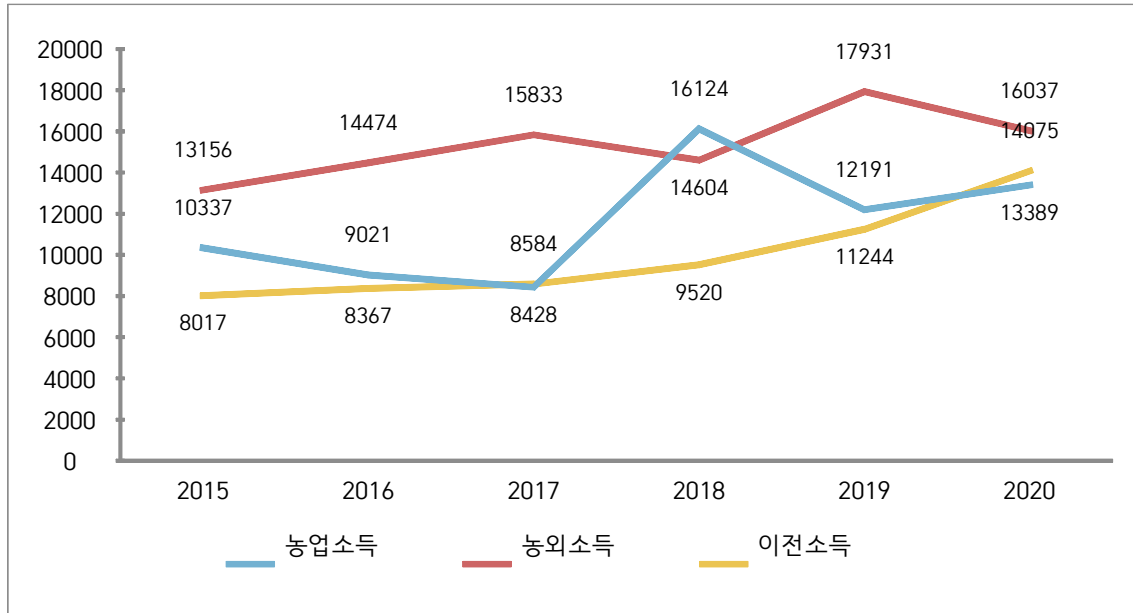
년도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20	45,643	13,389	16,037	14,075	2,141
2019	44,019	12,191	17,931	11,244	2,653
2018	43,509	16,124	14,604	9,520	3,261
2017	36,039	8,428	15,833	8,584	3,194
2016	34,963	9,021	14,474	8,367	2,810
2015	34,717	10,337	13,156	8,017	3,208

출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남농업기본통계」

- 2020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농외 소득은 소폭 감소. 2019년 대비 농업소득은 8.9% 증가한 반면, 이전소득은 20.1%(2백83만1천원) 증가

<그림 3-11> 충남 농가소득 구성부문 연도별 추이

(단위: 천원)



- 농업소득 증가보다 이전소득의 증가가 더 커 2020년에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

○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의 축소

- 202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축소됨
- 코로나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293만원(4.2%) 증가하였으나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385만원(9.3%) 증가하여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59.3%에서 62.2%로 증가함

<표 3-20> 도농간 소득 차이(2019~2020년)

(단위 : 천 원, %)

	도시근로자			농가		
	2019년	2020년	증감율	2019년	2020년	증감율
가구소득	69,434	72,362	4.2	41,182	45,029	9.3
가계지출	52,859	52,475	-0.7	35,339	34,494	-2.4
흑자액	16,574	19,887	20.0	5,843	10,534	80.3

출처 :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1.9.28., p. 8.

- 농가소득은 이전소득 증가가 전체 가구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농산물 가격 호조, 경영비 감소 등으로 농업소득의 증가폭도 상당히 커,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가구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 가구 대비 농가 흑자액 비율은 2019년 35.3%에서 2020년 53.0%로 증가. 이는 농촌지역의 물가 상승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그림 3-12>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



출처 :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1.9.28., p. 7.

- 2020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큰 폭의 소득 증가를 나타내며 소득불평등도는 완화
- 2020년 1분위 가구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1.6%, 2분위는 15.3%, 5분위는 4.4% 증가하여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임
- 5분위 배율은 7.64로 전년 대비 14.2% 감소,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득불평등도는 상당히 완화됨

<표 3-21> 농가소득 5분위 변화(2019~2020년)

(단위 : 천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2019년	11,450	20,909	31,718	47,389	101,884	8.90
2020년	13,924	24,103	35,795	52,566	106,353	7.64
증감율	21.6	15.3	12.9	10.9	4.4	-14.2

출처 :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1.9.28., p. 19.

- 소득 1~4분위에서는 이전소득이, 5분위에서는 농업소득 증가가 소득 증가를 견인
-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1분위 가구는 공익직불제, 농어가 수당,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 증가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었으며, 반면 5분위 가구는 농외소득은 감소, 농업소득의 증가액이 가장 높음

<표 3-22> 농가소득 분위별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9~2020년)

(단위 : 천 원, %)

소득계층	2019년			2020년			증감율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1분위	1,650	1,505	6,952	1,951	1,636	<u>8,984</u>	18.2	8.7	<u>29.2</u>
2분위	4,564	4,945	9,535	4,807	5,330	12,149	5.3	7.8	27.4
3분위	7,800	10,087	11,666	8,394	10,230	14,861	7.6	1.4	27.4
4분위	10,580	20,821	14,007	12,405	20,251	17,844	17.3	-2.7	27.4
5분위	33,991	49,454	13,976	<u>38,893</u>	45,849	17,473	14.4	-7.3	25.0

출처 :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1.9.28., p. 19.

2.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충남도민의 인식

1)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의견과 평가

□ 간담회 의견

○ 본 연구에서는 현 직불금, 농어가수당, 농민·농촌기본소득에 관해 농민 및 농정의 이해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 주요 의견

- 농촌의 양극화, 고령화 해소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지원 제도 강화가 필요
-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 공동체의 복원 필요
-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상호 보완적, 둘 다 필요
- 젊은 농민,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은 현재 증가. 반면, 50대~65세 이하 소농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편. 보완책 마련 필요
-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예산은 농업 관련 예산이 아니라 사회보장 예산 등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함
-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의 중요성은 인정, 반면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을 받는 정책 역시 중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제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직불금, 농어가수당의 정책은 타당하나 정책의 집행에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진단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마을의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부정수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의 이통장의 책임은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미흡

- 소득지원제도가 많아지면서 농민임을 입증해야 하는 서류 제출이 많아지고 있어 불편. 농민에 대한 입증 방법과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함
- 직불금과 농어가 수당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기본 조건임, 현실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과 농어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정책의 소외층이 존재
- 적은 규모의 농사짓는 농민, 임차농 등의 경우 정책 대상에서 배제 우려
- 농지의 60% 가량을 부재 지주가 소유하고 지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 농지문제가 있는 상황. 특히, 젊은 층이 귀농하여 농지를 확보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움. 농지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현 소득보장제도에서는 여성 농민의 경우 소외됨. 여성 농민의 직업적 가치가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줌. 여성 농민은 농사와 더불어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의 역할에 놓여 있음. 여성 농민의 직업적 가치가 존중받고 소외됨 없는 농민기본소득이 되어야 함
- 농촌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조건이 없어 선별의 어려움이 없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외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농촌의 기준과 농촌기본소득 제공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많은 노력이 필요
- 개념 정립, 용어의 통일성 및 개념의 정립 필요. 농민수당인지, 농민기본소득인지 명확하지 않음
-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대상 지역 선정 의견
- 도농복합 시와 군 지역의 농촌으로 구분하여 두 개 지역 선정
- 여러 개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리 단위에서 실시 등의 의견 대두. 농촌

소멸위기 지역, 친환경 농업 및 마을 지역,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역 등

- 기본소득의 지급 액수 등의 문제는 도시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이에 대한 공감도 형성이 중요
-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농정의 농민 및 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보조사업이 폐지되어야 함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액수는 월 15만원 ~ 30만 원 정도가 적당

2)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충남도민의 의식 조사

□ 조사 결과 요약

<표 3-23> 농업·농촌의 환경 및 소득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긍정/동의	부정/반대	잘 모름/유지
최근 농업·농촌의 개선	48.8	25.2	24.5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지원	68.5	7.0	22.7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53.0	9.7	36.7
공익직불금	65.5	13.5	21.0
충남 농어가 수당	65.3	18.2	16.5
농민 기본소득	51.5	31.0	17.5
농촌 기본소득	56.8	29.2	14.0
농촌 거주 의향	49.3	23.3	25.5

○ 농업·농촌의 주요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금과 충남의 농어가 수당 정책에 대한 지지

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논의 중인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서는 대략 30% 가량의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 의견이 표출됨

○ 농촌 기본소득의 지급 적정 액수 의견

-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이 28.8%, 1인당 월 10만원~30만원 정도 26.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30만원의 선호를 나타냄

○ 농업·농촌의 변화,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긍정적 인식

- 최근 농업과 농촌의 변화, 농업과 농촌의 미래, 공익적 기능, 제반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적이지 않음, 일부 연구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 조사결과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서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공익직불금제, 충남 농어가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정책 전반에 관해 일관된 응답이 나타남

○ 농촌과 도시 주민간의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음

<표 3-24> 농촌과 도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비교

(단위 : %)

	농촌	도시
최근 농업농촌의 개선	50.8	48.3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지원	69.0	70.5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55.9	50.8
공익직불금	68.3	62.7
충남 농어가 수당	66.0	64.7

농민 기본소득	58.0	45.0
농촌 기본소득	63.7	50.0
농촌 거주 의향	64.3	36.3

- 전체적으로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들 간의 인식에서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만, 서로 대립되지 않고 같은 경향성을 보여, 주요 소득보장 정책에 관해 도농 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
-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농촌 거주 의향에서는 농촌 주민들의 찬성도가 도시 주민들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농업·농촌의 상황 개선에 관해 농촌과 도시 주민들 공히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농촌 거주 의향 교차 비교

- 농촌기본소득 도입의 찬반 의견과 농촌 이주 및 계속 거주 의향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표 3-25> 농촌기본소득 도입시 농촌 이주(거주)의향

구분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		
		보통이다	없다	있다
농촌기본소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5	50.0	36.5
	동의하지 않음	28.3	45.5	26.3
	동의함	34.0	17.7	48.3
	적극 동의함	14.0	5.4	80.6
	잘 모름	33.3	17.9	48.7

-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의 농촌 거주 의향은 48.3%, 거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7%로 나타남
- 특히,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찬성한 응답자의 경우, 80.6%의 매우 높은 농촌 거주 의향을 나타냄
- 따라서 실제 농촌 기본소득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농촌 이주 및 거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의 의미

- 도민들에게 정확한 농업 및 농촌의 기본소득 정책의 정보가 전달되고,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논의된다면 농업·농촌의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조사 개요

○ 설문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조 사 기 관	(주)충청리서치
조 사 일 시	2021년 8월 20일(금) ~ 27일(금)
조 사 방 법	유선 전화 면접조사 100.0%
유 효 표 본	600명(충남, 도시 거주 주민 300명과 농어촌 거주 주민 300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 $\pm 4.0\%$
응 답 율	10.0%
표 집 방 법	전화번호 무작위 생성 표집틀(RDD)

○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성별	남성	308	51.3
	여성	292	48.7
연령	18-29세	84	14.0
	30대	85	14.2
	40대	103	17.2
	50대	97	16.2
	60세 이상	231	38.5
지역 (도농)	농촌지역	300	50.0
	도시지역	300	50.0
지역 (권역)	북부권	171	28.5
	서해안권	135	22.5
	내륙권	185	30.8
	금강권	109	18.2

○ 도농 구분

- 농촌지역 : 행정구역상 ‘면’지역
- 인구소멸지역 기준에 따라 농촌지역 중 ‘읍’ 지역은 제외
- 도시지역 : 행정구역상 ‘동’지역

○ 권역 구분 기준

- 북부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서해안권 : 보령, 서천, 태안
- 내륙권 : 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 금강권 : 금산, 논산, 부여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25.5
	중소 자영업	130	21.7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26.2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7.8
	학생	16	2.7
	전업 가족 종사자	46	7.7
	무직/구직 중	29	4.8
	무응답	22	3.7
월평균 소득	1분위	173	28.8
	2분위	258	43.0
	3분위	116	19.3
	무응답	53	8.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미만)	94	15.7
	중학교 졸업	60	10.0
	고등학교 졸업	182	30.3
	대학 재학 이상	225	37.5
	무응답	39	6.5
정치 성향	보수	138	23.0
	중도	226	37.7
	진보	107	17.8
	무응답	129	21.5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구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1인 가구	91만원 미만	91~270만원	270만원 이상

2인 가구	150만원 미만	150~460만원	460만원 이상
3인 가구	190만원 미만	190~590만원	590만원 이상
4인 가구	240만원 미만	240~730만원	730만원 이상

□ 조사결과

○ 농촌 상황 변화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촌 상황 변화	매우 나빠졌다	52	8.7
	조금 나빠졌다	99	16.5
	비슷하다	147	24.5
	조금 좋아졌다	189	31.5
	매우 좋아졌다	104	17.3
	무응답	9	1.5

- 농촌의 상황 변화에 관해, 조금 좋아졌다, 31.5%. 비슷하다 24.5% 순으로 응답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업(농촌) 투자	투자를 많이 줄여야 한다	5	0.8
	투자를 조금 줄여야 한다	37	6.2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36	22.7
	투자를 조금 늘려야 한다	226	37.7
	투자를 많이 늘려야 한다	185	30.8
	무응답	11	1.8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관해, 투자를 조금 늘려야 한다 37.7%, 투자를 많이 늘려야 한다 30.8% 순으로 높게 응답

○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	3.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0	6.7
	보통이다	220	36.7
	동의하는 편이다	210	35.0
	매우 동의한다	108	18.0
	무응답	4	0.7

- 농업·농촌이 우리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가에 대해, 보통이다 36.7%, 동의하는 편이다 35.0% 순으로 높게 응답

○ 농업·농촌의 낙후 분야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업·농촌의 낙후 분야	소득과 일자리	184	30.7
	의료와 복지 서비스	117	19.5
	교육과 문화 시설	155	25.8
	교통과 주거 환경	127	21.2
	무응답	17	2.8

- 농업·농촌의 낙후 분야에 관해, 소득과 일자리 분야 30.7%, 교육과 문화시설 25.8% 순으로 응답

○ 공익직불금제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공익직불금 제도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25	4.2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56	9.3
	찬성하는 편이다	216	36.0
	적극 찬성한다	177	29.5
	모르겠다	126	21.0

- 공익직불금 제도에 관해, 찬성하는 편이다 36.0%, 적극 찬성한다 29.5% 순으로 응답

○ 충청남도 농어가수당 정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충청남도 농어가수당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30	5.0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79	13.2
	찬성하는 편이다	231	38.5
	적극 찬성한다	161	26.8
	모르겠다	99	16.5

- 충남의 농어가수당 정책에 관해, 찬성하는 편이다 38.5%, 적극 찬성한다 26.8% 순으로 응답

○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8	13.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08	18.0
	동의하는 편이다	204	34.0
	적극 동의한다	105	17.5
	모르겠다	105	17.5

- 농민기본소득 법안의 도입에 관해, 동의하는 편이다 34.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8.0% 순으로 응답

○ 농촌기본소득 도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촌기본소득 도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5	12.5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00	16.7
	동의하는 편이다	211	35.2
	적극 동의한다	130	21.7
	모르겠다	84	14.0

-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동의하는 편이다 35.2%, 적극 동의한다 21.7% 순으로 응답

○ 농촌기본소득 적정 금액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촌기본소득 적정 금액	1인당 월 10만원 미만	45	7.5
	1인당 월 10~30만원 정도	161	26.8
	1인당 월 30만원 이상	173	28.8
	잘 모르겠다	214	35.7
	무응답	7	1.2

- 농촌기본소득 적정 금액에 관해, 잘 모르겠다 35.7%, 1인당 월 30만원 이상 28.8% 순으로 응답

○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 (계속 거주 의향)	전혀 없다	68	11.3
	없는 편이다	72	12.0
	보통이다	153	25.5
	있는 편이다	155	25.8
	아주 많다	141	23.5
	무응답	11	1.8

-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에 관해, 있는 편이다 25.8%, 보통이다 25.5% 순으로 응답

□ 조사결과 교차 분석

○ 농촌 상황 변화

농업과 농촌의 상황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나?



- 최근 농업과 농촌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8.8%,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25.25로, 비교적 긍정적 인식 나타남

- 교차분석표

구분		[농촌 상황 변화](%)							악화	개선
		사례 수 (명)	매우 나빠 졌다	조금 나빠 졌다	비 슷 하 다	조금 좋아 졌다	매우 좋아 졌다			
성별	남성	308	10.2	16.4	21.7	32.6	19.1	26.6	51.6	
	여성	292	7.3	17.1	28.2	31.4	16.0	24.4	47.4	
연령	18-29세	84	6.0	16.9	37.3	26.5	13.3	22.9	39.8	
	30대	85	11.0	17.1	29.3	29.3	13.4	28.0	42.7	
	40대	103	7.0	12.0	24.0	35.0	22.0	19.0	57.0	
	50대	97	9.3	24.7	22.7	28.9	14.4	34.0	43.3	
	60세 이상	231	9.6	15.3	20.1	34.9	20.1	24.9	55.0	
지역 (도농)	농촌지역	300	7.4	16.8	24.9	32.7	18.2	24.2	50.8	
	도시지역	300	10.2	16.7	24.8	31.3	17.0	26.9	48.3	
지역 (권역)	북부권	171	10.3	18.8	24.8	30.3	15.8	29.1	46.1	
	서해안권	135	6.0	17.2	27.6	29.1	20.1	23.1	49.3	
	내륙권	185	7.7	14.8	25.7	35.0	16.9	22.4	51.9	
	금강권	109	11.9	16.5	20.2	33.0	18.3	28.4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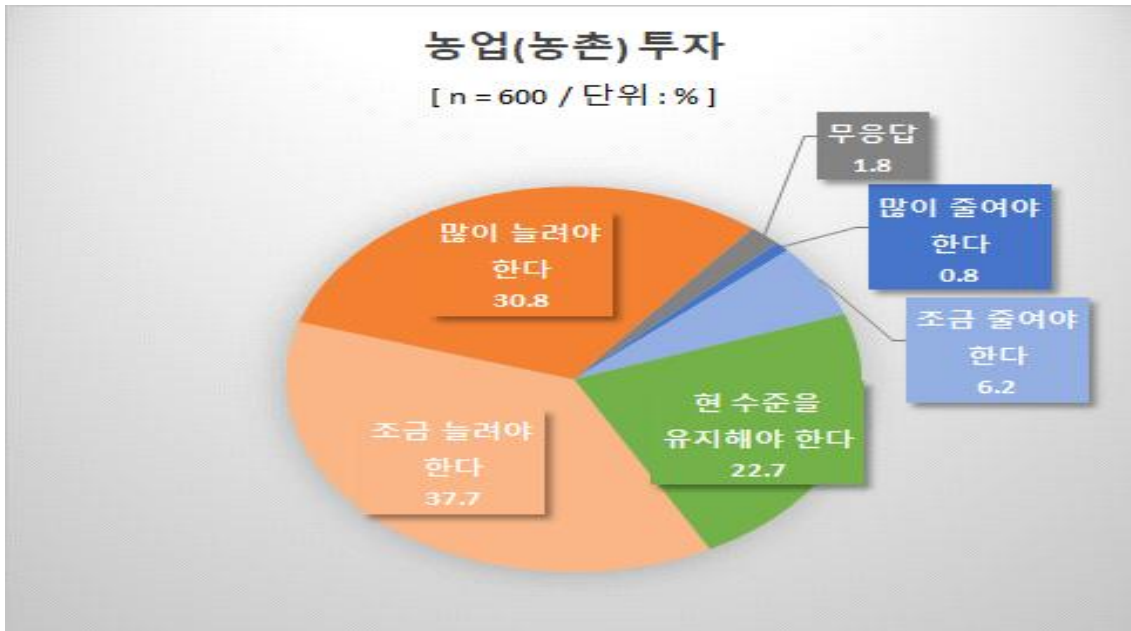
- 개선되었다는 인식은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에서는 40대, 농촌지역, 내륙권, 직업에서는 학생층, 소득에서는 저소득층, 학력은 중졸, 정치성향은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남
-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에서는 50대, 도시지역, 북부권, 직업에서는 전업가족종사자, 소득에서는 저소득층, 학력은 중졸, 정치성향은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남

구분		[농촌 상황 변화](%)							악화	개선
		사례 수 (명)	매우 나빠 졌다	조금 나빠 졌다	비슷 하다	조금 좋아 졌다	매우 좋아 졌다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10.5	18.3	21.6	31.4	18.3	28.8	49.7	
	중소 자영업	130	11.8	14.2	21.3	32.3	20.5	26.0	52.8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5.8	16.9	27.9	31.8	17.5	22.7	49.4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8.7	6.5	34.8	23.9	26.1	15.2	50.0	
	학생	16	0.0	31.3	12.5	37.5	18.8	31.3	56.3	
	전업 가족 종사자	46	8.7	23.9	30.4	26.1	10.9	32.6	37.0	
	무직/구직 중	29	7.1	17.9	28.6	39.3	7.1	25.0	46.4	
소득	1분위	173	10.5	18.0	18.0	34.3	19.2	28.5	53.5	
	2분위	258	9.1	16.9	26.8	31.5	15.7	26.0	47.2	
	3분위	116	6.1	14.0	28.1	30.7	21.1	20.2	51.8	
학력	초졸 미만	94	14.9	11.7	19.1	29.8	24.5	26.6	54.3	
	중졸	60	6.9	22.4	13.8	43.1	13.8	29.3	56.9	
	고졸	182	9.9	17.7	26.0	29.3	17.1	27.6	46.4	
	대재 이상	225	5.9	16.7	28.1	32.1	17.2	22.6	49.3	
정치성 향	보수	138	12.4	16.1	23.4	30.7	17.5	28.5	48.2	
	중도	226	8.6	17.6	27.6	32.6	13.6	26.2	46.2	
	진보	107	4.7	17.8	26.2	29.9	21.5	22.4	51.4	

- 전체적으로 교차분석 결과,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차이 정도)는 높은 긍정적 인식은 40대와 60세 이상의 연령층, 비정규직 근로자층, 고소득층, 진보적 정치성향층에서 나타남
- 낮은 긍정적 인식은 50대 연령, 북부권 지역, 전업 가족 종사자층, 고졸 학력에서 나타남

○ 농업·농촌 투자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지원에 관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8.5%,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2.7%,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관한 높은 긍정적 인식 나타냄

- 교차분석표

구분		[농업(농촌) 투자](%)						축소	확대
		사례 수 (명)	많이 줄여 야 한다	조금 줄여 야 한다	현 수 준 을 유 지 하 야 한다	조금 늘려 야 한다	많이 늘려 야 한다		
성별	남성	308	1.6	5.6	23.6	33.4	35.7	7.2	69.2
	여성	292	0.0	7.0	22.5	43.7	26.8	7.0	70.4
연령	18-29세	84	0.0	1.2	24.1	49.4	25.3	1.2	74.7
	30대	85	2.4	6.0	25.0	36.9	29.8	8.3	66.7
	40대	103	0.0	6.8	17.5	42.7	33.0	6.8	75.7
	50대	97	1.0	5.2	24.0	38.5	31.3	6.3	69.8
	60세 이상	231	0.9	8.5	24.2	32.7	33.6	9.4	66.4
지역 (도농)	농촌지 역	300	0.7	6.7	23.6	37.0	32.0	7.4	69.0
	도시지 역	300	1.0	5.8	22.6	39.7	30.8	6.8	70.5
지역 (권역)	북부권	171	0.0	6.0	22.8	38.3	32.9	6.0	71.3
	서해안 권	135	0.0	6.0	23.3	39.1	31.6	6.0	70.7
	내륙권	185	2.8	5.0	22.7	38.1	31.5	7.7	69.6
	금강권	109	0.0	9.3	24.1	38.0	28.7	9.3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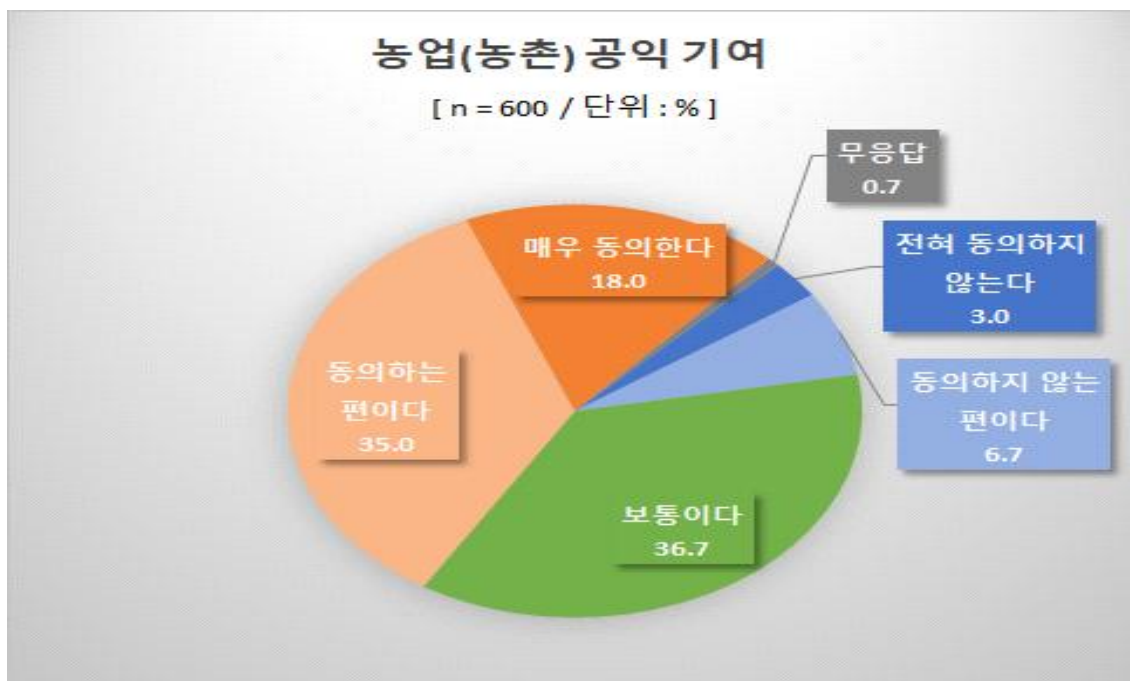
-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남성, 40대, 도시지역, 북부권, 학생층, 중간 소득층, 대재이상 학력, 보수 정치성향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축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남성, 60세 이상, 농촌지역, 금강권, 중소자영업자와 전업가족종사자, 고소득층, 고졸 학력, 보수 정치성향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구분		[농업(농촌) 투자](%)							
		사례 수 (명)	많이 줄 여 야 한다	조금 줄 여 야 한다	현 수 준 을 유 지 하 여 야 한다	조금 늘 려 야 한다	많이 늘 려 야 한다	축소	확대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1.4	6.1	24.3	32.4	35.8	7.4	68.2
	중소 자영업	130	0.8	7.9	23.0	37.3	31.0	8.7	68.3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0.0	5.8	21.2	42.3	30.8	5.8	73.1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2.1	4.3	21.3	38.3	34.0	6.4	72.3
	학생	16	0.0	0.0	25.0	50.0	25.0	0.0	75.0
	전업 가족 종사자	46	0.0	8.7	17.4	50.0	23.9	8.7	73.9
	무직/구직 중	29	0.0	3.6	39.3	35.7	21.4	3.6	57.1
소득	1분위	173	0.6	7.7	25.6	34.5	31.5	8.3	66.1
	2분위	258	0.4	3.5	23.1	43.1	29.8	3.9	72.9
	3분위	116	1.8	9.6	18.4	35.1	35.1	11.4	70.2
학력	초졸 미만	94	1.1	6.9	27.6	33.3	31.0	8.0	64.4
	중졸	60	0.0	5.0	30.0	40.0	25.0	5.0	65.0
	고졸	182	1.1	8.8	21.5	37.0	31.5	9.9	68.5
	대재 이상	225	0.5	3.6	20.7	42.3	32.9	4.1	75.2
정치성 향	보수	138	1.5	6.7	18.5	40.0	33.3	8.1	73.3
	중도	226	0.5	4.6	26.0	42.9	26.0	5.0	68.9
	진보	107	0.0	7.5	20.6	35.5	36.4	7.5	72.0

- 농업·농촌의 투자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20대 이하 연령층, 학생층, 중간 소득층, 대재이상 학력층에서 비교적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이며 그 외의 변수 간 차이가 나지 않음

○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농업과 농촌이 우리나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전통과 민족문화의 보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가?



- 농업과 농촌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응답이 53.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7%로 긍정적 인식이 50% 넘게 나타남

- 교차분석표

구분		[농업(농촌) 공익 기여](%)							
		사례 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편이 다	보통 이다	동의 하는 편이 다	매우 동의 한다	비동 의	동의
성별	남성	308	2.3	6.9	28.4	38.6	23.9	9.2	62.4
	여성	292	3.8	6.6	45.9	31.7	12.1	10.3	43.8
연령	18-29세	84	1.2	7.1	39.3	39.3	13.1	8.3	52.4
	30대	85	3.5	9.4	31.8	42.4	12.9	12.9	55.3
	40대	103	1.0	7.8	40.8	28.2	22.3	8.7	50.5
	50대	97	5.2	3.1	37.1	35.1	19.6	8.2	54.6
	60세 이상	231	3.5	6.6	36.1	34.4	19.4	10.1	53.7
지역 (도농)	농촌지 역	300	2.0	6.7	35.4	34.7	21.2	8.8	55.9
	도시지 역	300	4.0	6.7	38.5	35.8	15.1	10.7	50.8
지역 (권역)	북부권	171	5.3	6.5	38.8	31.8	17.6	11.8	49.4
	서해안 권	135	0.8	6.0	36.8	37.6	18.8	6.8	56.4
	내륙권	185	3.3	7.6	34.2	35.9	19.0	10.9	54.9
	금강권	109	1.8	6.4	38.5	36.7	16.5	8.3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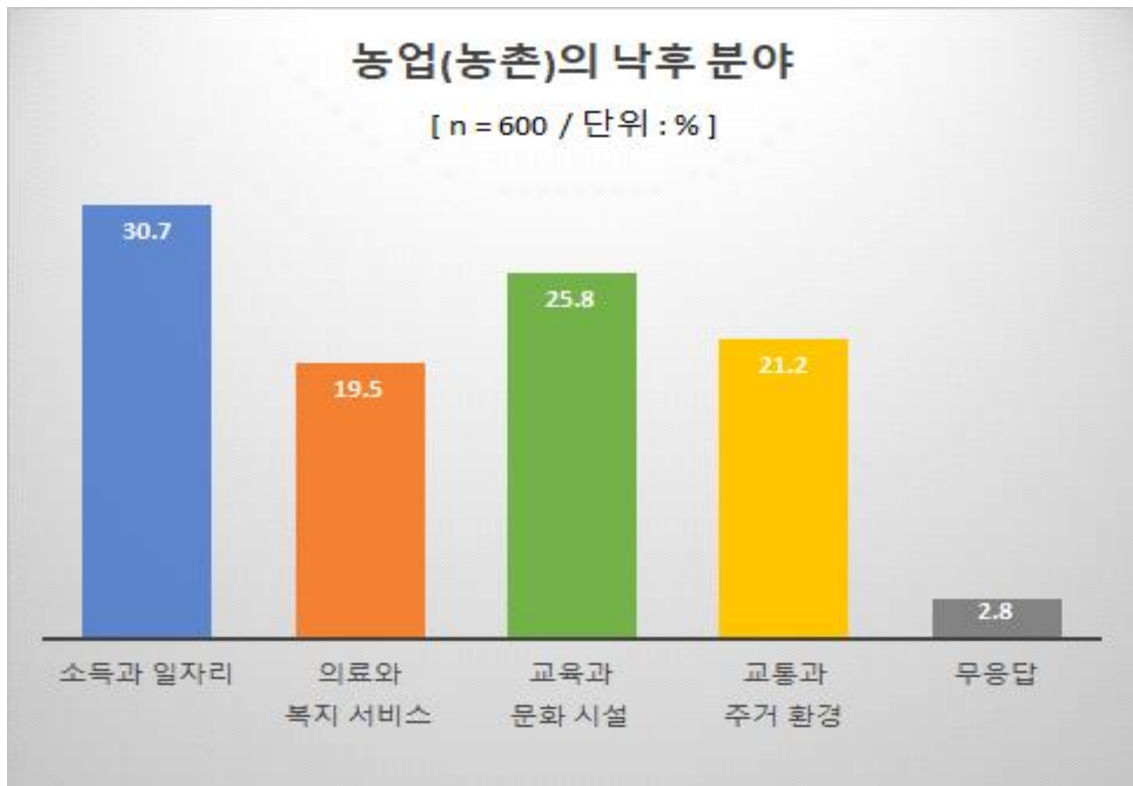
-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에서는 30대, 농촌지역, 서해안권, 직업에서는 무직/구직중, 소득에서는 중간층, 학력에서는 대재 이상,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여성, 30대, 도시지역, 북부권, 중소자영업, 고소득층, 고졸, 진보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구분		[농업(농촌) 공익 기여](%)							
		사례 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는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 한다	비 동의	동의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2.6	4.6	36.8	32.2	23.7	7.2	55.9
	중소 자영업	130	5.4	10.0	33.8	33.8	16.9	15.4	50.8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1.3	6.4	35.7	35.7	21.0	7.6	56.7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2.1	8.5	38.3	40.4	10.6	10.6	51.1
	학생	16	0.0	6.3	37.5	37.5	18.8	6.3	56.3
	전업 가족 종사자	46	4.4	8.9	48.9	33.3	4.4	13.3	37.8
	무직/구직 중	29	3.6	3.6	32.1	50.0	10.7	7.1	60.7
소득	1분위	173	3.5	6.5	38.2	34.7	17.1	10.0	51.8
	2분위	258	1.2	4.7	36.8	38.8	18.6	5.8	57.4
	3분위	116	4.3	13.8	34.5	28.4	19.0	18.1	47.4
학력	초졸 미만	94	4.3	4.3	38.3	31.9	21.3	8.5	53.2
	중졸	60	1.7	3.4	50.0	34.5	10.3	5.2	44.8
	고졸	182	3.3	8.3	37.6	34.3	16.6	11.6	50.8
	대재 이상	225	2.2	8.0	30.7	39.1	20.0	10.2	59.1
정치성 향	보수	138	4.4	6.6	35.3	36.0	17.6	11.0	53.7
	중도	226	1.3	6.7	36.9	40.4	14.7	8.0	55.1
	진보	107	3.7	7.5	27.1	38.3	23.4	11.2	61.7

-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높은 긍정적 인식은 남성, 무직/구직중, 중간 소득층에서 나타남
- 낮은 긍정적 인식은 성별에서 여성, 직업에서 중소자영업, 전업 가족종사자, 소득에서 고소득층에서 나타남

○ 농촌의 낙후 분야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이 가장 크게 낙후되어 있는 분야는?



- 농촌의 낙후된 분야는 소득과 일자리 30.7%, 교육과 문화시설 25.8%, 교통과 주거 환경 21.2%, 의료와 복지 서비스 19.5% 순으로 응답함
- 특정 한 분야에 집중되기 않고 소득, 교육, 의료, 주거 등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을 나타냄

- 교차분석표

구분		[농업(농촌)의 낙후 분야](%)				
		사례수 (명)	소득과 일자리	의료와 복지 서비스	교육과 문화 시설	교통과 주거 환경
성별	남성	308	31.1	22.2	27.2	19.5
	여성	292	32.0	17.8	26.0	24.2
연령	18-29세	84	28.6	21.4	23.8	26.2
	30대	85	34.1	25.9	28.2	11.8
	40대	103	26.2	23.3	32.0	18.4
	50대	97	37.2	18.1	29.8	14.9
	60세 이상	231	31.8	16.6	23.0	28.6
지역 (도농)	농촌지역	300	28.9	19.9	26.1	25.1
	도시지역	300	34.1	20.3	27.0	18.6
지역 (권역)	북부권	171	31.1	16.2	31.1	21.6
	서해안권	135	31.8	21.2	24.2	22.7
	내륙권	185	30.1	23.9	21.6	24.4
	금강권	109	34.3	18.5	30.6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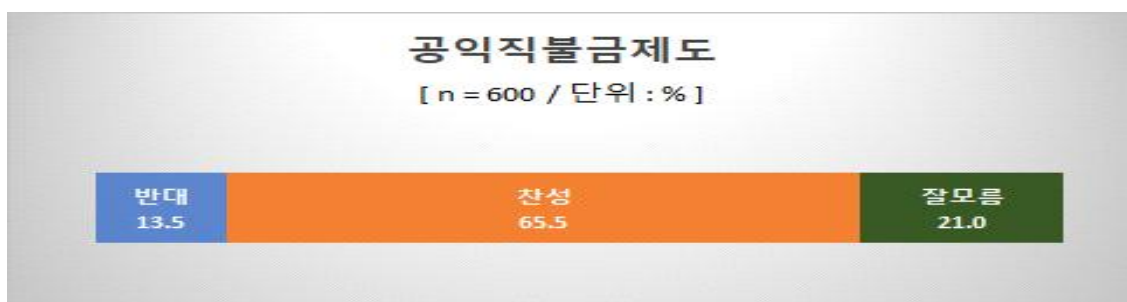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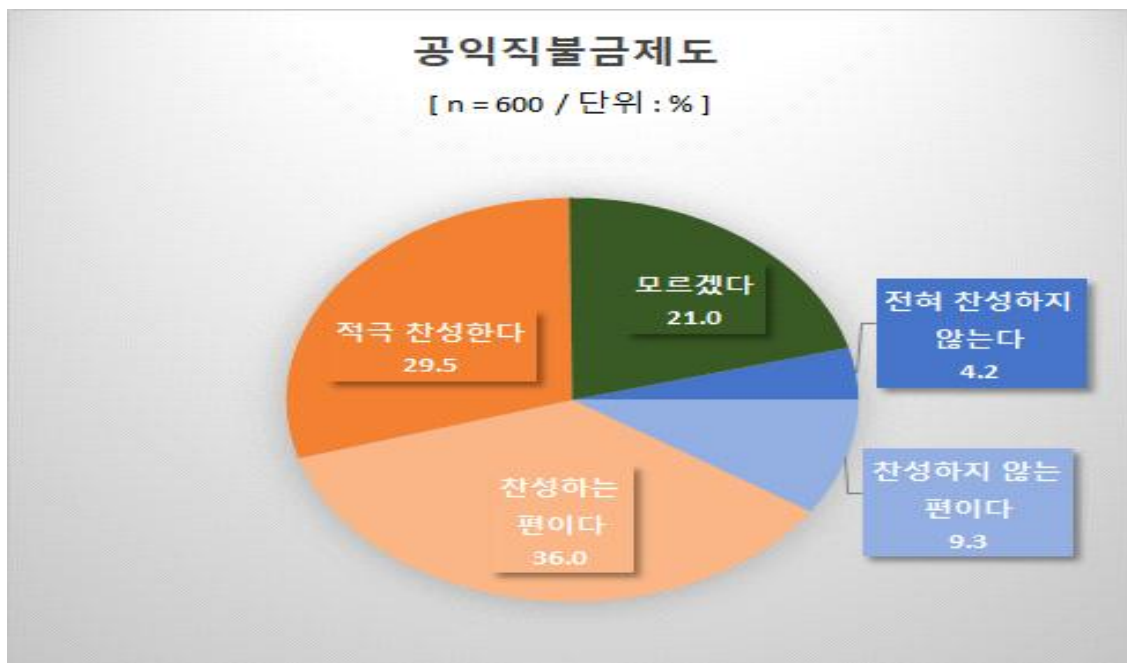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분야가 가장 낙후되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가운데 40대층에서는 교육과 문화시설이 더 낙후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줌

구분		[농업(농촌)의 낙후 분야](%)				
		사례수 (명)	소득과 일자리	의료와 복지 서비스	교육과 문화 시설	교통과 주거 환경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34.0	14.6	20.8	30.6
	중소 자영업	130	31.0	18.6	36.4	14.0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26.1	29.3	24.2	20.4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39.1	21.7	21.7	17.4
	학생	16	42.9	14.3	14.3	28.6
	전업 가족 종사자	46	36.4	9.1	27.3	27.3
	무직/구직 중	29	33.3	18.5	33.3	14.8
소득	1분위	173	32.9	16.1	23.6	27.3
	2분위	258	32.2	20.4	29.8	17.6
	3분위	116	28.7	25.2	24.3	21.7
학력	초졸 미만	94	37.8	12.2	17.1	32.9
	중졸	60	35.0	15.0	26.7	23.3
	고졸	182	34.3	19.7	26.4	19.7
	대재 이상	225	25.9	24.6	29.9	19.6
정치성향	보수	138	36.8	17.3	24.8	21.1
	중도	226	27.4	22.9	26.0	23.8
	진보	107	36.6	18.8	31.7	12.9

- 중소자영업과 대재 이상 학력층에서는 교육과 문화시설이 더 낙후되었으며, 정규직 직장 근로자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더 낙후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줌
- 농촌지역 주민, 농어업 종사자층은 소득과 일자리 분야가 가장 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익직불금제도

현재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 직불금’ 제도가 운영됨. 공익직불금에 대한 평가는?



- 공익직불금 제도에 관해 찬성하는 응답은 65.5%로,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한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여줌
- 반면, 잘 모름 21.0%로 높게 나타나 공익직불금 제도의 초기 시행으로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줌

- 교차분석표

구분		[공익직불금제도](%)							
		사례 수 (명)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 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 한다	모르 겠다	반대	찬성
성별	남성	308	5.2	12.0	33.4	32.5	16.9	17.2	65.9
	여성	292	3.1	6.5	38.7	26.4	25.3	9.6	65.1
연령	18-29세	84	2.4	9.5	38.1	16.7	33.3	11.9	54.8
	30대	85	9.4	8.2	32.9	25.9	23.5	17.6	58.8
	40대	103	4.9	12.6	38.8	30.1	13.6	17.5	68.9
	50대	97	5.2	12.4	29.9	36.1	16.5	17.5	66.0
	60세 이상	231	2.2	6.9	37.7	32.5	20.8	9.1	70.1
지역 (도농)	농촌지 역	300	3.3	8.3	32.7	35.7	20.0	11.7	68.3
	도시지 역	300	5.0	10.3	39.3	23.3	22.0	15.3	62.7
지역 (권역)	북부권	171	2.9	8.2	36.8	29.2	22.8	11.1	66.1
	서해안 권	135	3.7	6.7	31.9	34.1	23.7	10.4	65.9
	내륙권	185	4.3	11.9	39.5	27.6	16.8	16.2	67.0
	금강권	109	6.4	10.1	33.9	27.5	22.0	16.5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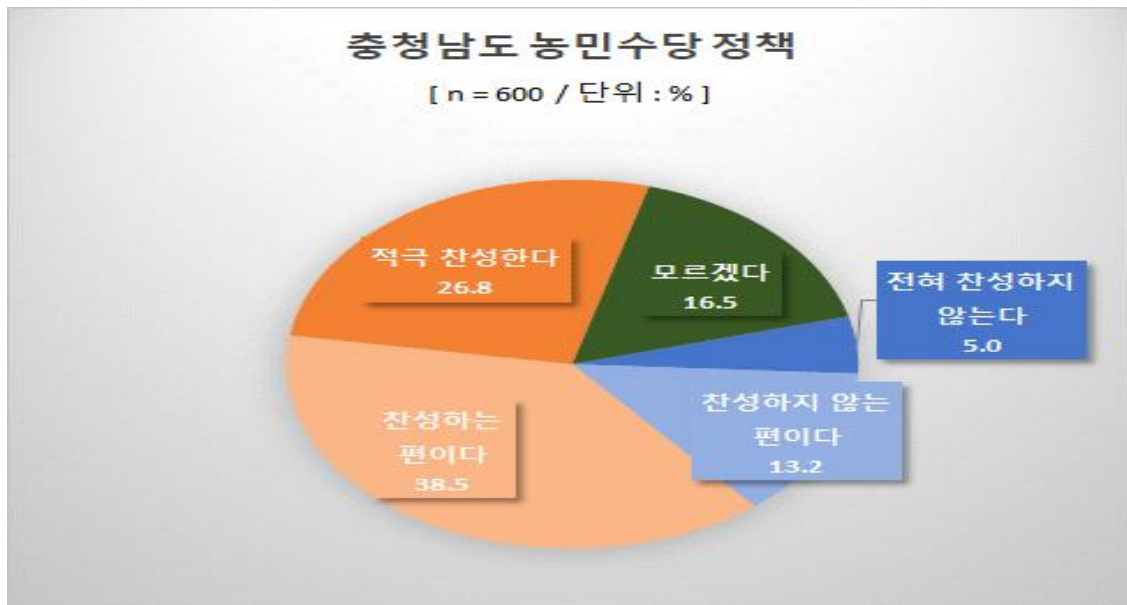
-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한 찬성 응답은 남성, 60세 이상, 농촌지역, 내륙권,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저소득층, 중졸, 보수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한 반대 응답은 남성, 30대, 도시지역, 금강권, 중소기업자영업자층, 고소득층, 대재이상 학력, 진보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구분		[공익직불금제도](%)							
		사례 수 (명)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 성 하 지 않 편 다	찬 성 하 는 편 다	적 극 찬 성 하 는 다	모 르 겠 다	반대	찬성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3.3	7.8	32.7	41.8	14.4	11.1	74.5
	중소 자영업	130	6.9	13.1	40.0	23.8	16.2	20.0	63.8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5.1	8.3	38.9	24.8	22.9	13.4	63.7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2.1	2.1	42.6	40.4	12.8	4.3	83.0
	학생	16	0.0	6.3	25.0	25.0	43.8	6.3	50.0
	전업 가족 종사자	46	2.2	13.0	39.1	13.0	32.6	15.2	52.2
	무직/구직 중	29	3.4	6.9	24.1	34.5	31.0	10.3	58.6
소득	1분위	173	1.7	8.1	31.8	39.3	19.1	9.8	71.1
	2분위	258	4.3	8.5	41.9	25.6	19.8	12.8	67.4
	3분위	116	8.6	12.9	33.6	25.9	19.0	21.6	59.5
학력	초졸 미만	94	0.0	5.3	34.0	33.0	27.7	5.3	67.0
	중졸	60	0.0	3.3	30.0	45.0	21.7	3.3	75.0
	고졸	182	5.5	10.4	39.6	25.8	18.7	15.9	65.4
	대재 이상	225	6.2	11.1	37.8	28.0	16.9	17.3	65.8
정치성 향	보수	138	2.2	10.9	43.5	28.3	15.2	13.0	71.7
	중도	226	4.0	8.0	34.5	31.9	21.7	11.9	66.4
	진보	107	7.5	10.3	36.4	31.8	14.0	17.8	68.2

- 전체적으로 공익직불금 제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60세 이상 연령층, 농촌 주민, 농어업 종사자,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층(가장 높은 긍정적 인식).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높은 긍정적 인식, 낮은 긍정적 인식은 전업 가족종사자, 고소득층에서 나타남

○ 충청남도 농어가수당 정책

충청남도의 농민수당 정책에 대한 평가는?



- 충남의 농어가수당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은 65.3%로 공익직불금 제도와 같이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여줌
- 잘 모름 응답은 16.5%로 공익직불금 제도(21.0%)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역시 낮지 않은 비율로 보임

- 교차분석표

구분		[충청남도 농민수당 정책](%)							
		사례 수 (명)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 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 한다	모르 겠다	반대	찬성
성별	남성	308	5.8	13.6	38.3	30.2	12.0	19.5	68.5
	여성	292	4.1	12.7	38.7	23.3	21.2	16.8	62.0
연령	18-29세	84	2.4	8.3	40.5	17.9	31.0	10.7	58.3
	30대	85	7.1	17.6	34.1	28.2	12.9	24.7	62.4
	40대	103	6.8	11.7	37.9	29.1	14.6	18.4	67.0
	50대	97	5.2	18.6	37.1	33.0	6.2	23.7	70.1
	60세 이상	231	4.3	11.7	40.3	26.0	17.7	16.0	66.2
지역 (도농)	농촌지 역	300	4.7	13.7	35.0	31.0	15.7	18.3	66.0
	도시지 역	300	5.3	12.7	42.0	22.7	17.3	18.0	64.7
지역 (권역)	북부권	171	4.7	9.9	36.8	26.9	21.6	14.6	63.7
	서해안 권	135	3.7	14.8	42.2	25.9	13.3	18.5	68.1
	내륙권	185	3.8	13.0	38.4	29.7	15.1	16.8	68.1
	금강권	109	9.2	16.5	36.7	22.9	14.7	25.7	59.6

- 충남의 농어가수당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은 남성, 50대, 농촌지역, 서해안과 내륙권, 농어업 종사자, 중간 소득층, 중졸, 보수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반대 응답은 남성, 30대, 농촌지역, 금강권, 중소자영업, 고소득층, 대재 이상, 진보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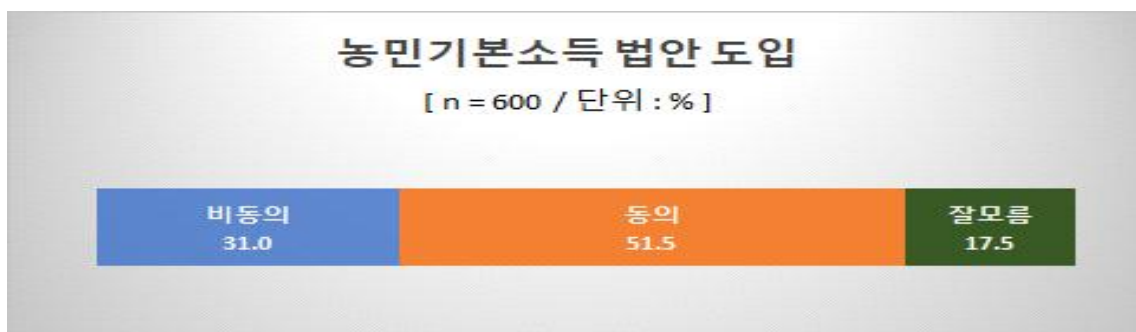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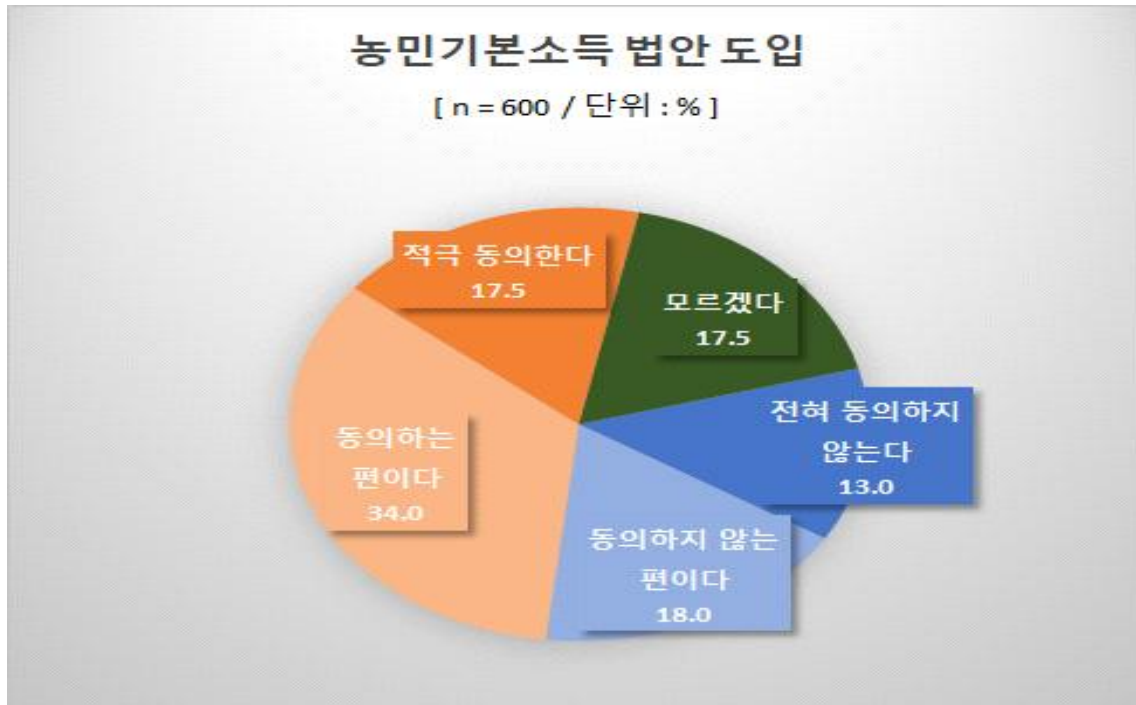
구분		[충청남도 농민수당 정책](%)							
		사례 수 (명)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 하지 않는 편이다	찬성 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 한다	모르 겠다	반대	찬성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4.6	11.1	44.4	33.3	6.5	15.7	77.8
	중소 자영업	130	9.2	15.4	40.8	26.2	8.5	24.6	66.9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5.7	12.7	33.1	25.5	22.9	18.5	58.6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2.1	8.5	44.7	31.9	12.8	10.6	76.6
	학생	16	0.0	12.5	31.3	18.8	37.5	12.5	50.0
	전업 가족 종사자	46	0.0	23.9	37.0	10.9	28.3	23.9	47.8
	무직/구직 중	29	0.0	3.4	41.4	31.0	24.1	3.4	72.4
소득	1분위	173	4.6	11.6	41.0	26.6	16.2	16.2	67.6
	2분위	258	4.7	12.8	41.5	26.7	14.3	17.4	68.2
	3분위	116	7.8	15.5	32.8	30.2	13.8	23.3	62.9
학력	초졸 미만	94	5.3	11.7	38.3	25.5	19.1	17.0	63.8
	중졸	60	3.3	11.7	45.0	26.7	13.3	15.0	71.7
	고졸	182	4.4	13.2	41.8	26.4	14.3	17.6	68.1
	대재 이상	225	6.2	12.4	37.8	29.3	14.2	18.7	67.1
정치성 향	보수	138	3.6	13.0	41.3	29.0	13.0	16.7	70.3
	중도	226	4.4	10.6	39.8	29.2	15.9	15.0	69.0
	진보	107	9.3	15.0	39.3	28.0	8.4	24.3	67.3

- 전체적으로 충남 농어가수당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높은 긍정적 인식은 농어업 종사자, 비정규직 직장근로자, 무직/구직중에서 나타남.

· 반면, 30대, 금강권, 전업 가족종사자, 고소득층, 진보층에서는 낮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은?



- 농민기본소득 법안에 관해 동의 응답은 51.5%, 비동의는 31.0%로 찬성 의견이 과반 넘게 나타났으나, 반대 의견도 31%로, 공익직불금, 농어가 수당 정책보다 높게 나타남

- 교차분석표

구분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							
		사례 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 하는 편이다	적극 동의 한다	모르 겠다	비동 의	동의
성별	남성	308	15.6	15.9	33.8	22.1	12.7	31.5	55.8
	여성	292	10.3	20.2	34.2	12.7	22.6	30.5	46.9
연령	18-29세	84	19.0	11.9	39.3	6.0	23.8	31.0	45.2
	30대	85	15.3	22.4	30.6	12.9	18.8	37.6	43.5
	40대	103	10.7	23.3	34.0	19.4	12.6	34.0	53.4
	50대	97	15.5	17.5	28.9	26.8	11.3	33.0	55.7
	60세 이상	231	10.0	16.5	35.5	18.6	19.5	26.4	54.1
지역 (도농)	농촌지 역	300	9.3	15.7	35.3	22.7	17.0	25.0	58.0
	도시지 역	300	16.7	20.3	32.7	12.3	18.0	37.0	45.0
지역 (권역)	북부권	171	13.5	16.4	34.5	15.8	19.9	29.8	50.3
	서해안 권	135	10.4	11.9	37.8	23.0	17.0	22.2	60.7
	내륙권	185	14.1	21.6	35.7	15.7	13.0	35.7	51.4
	금강권	109	13.8	22.0	25.7	16.5	22.0	35.8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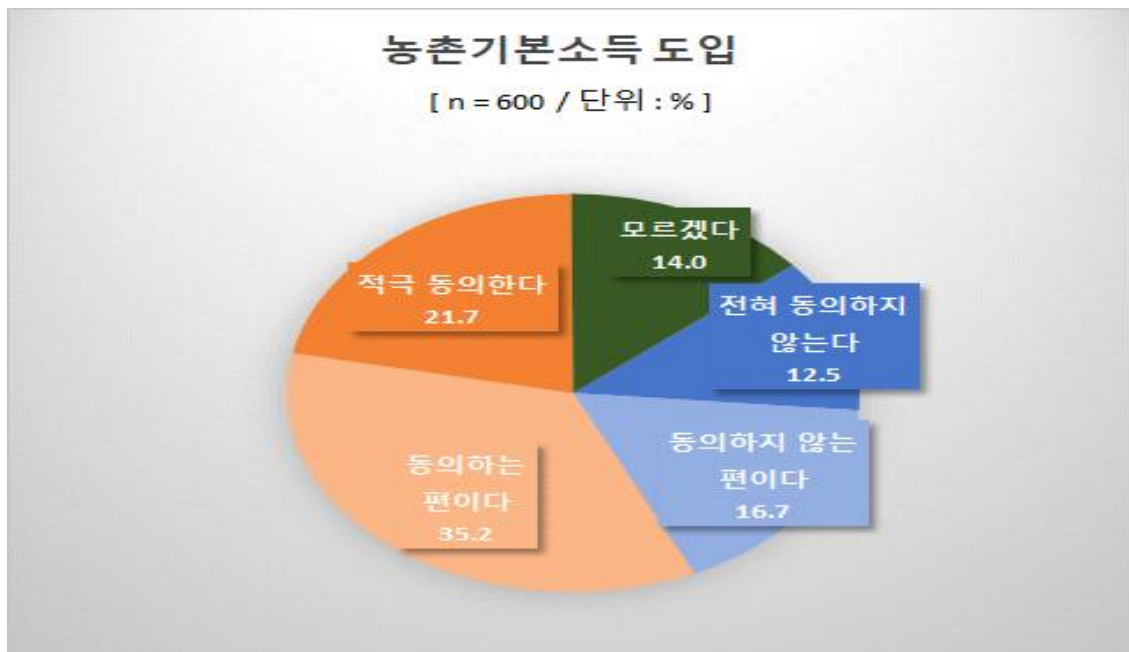
-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 50대, 농촌지역, 서해안권, 농어업종사자, 저소득층, 중졸, 진보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남성, 30대, 도시지역, 금강권, 중소자영업, 고소득층, 대재 이상 학력, 보수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구분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							
		사례 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 하는 편이다	적극 동의 한다	모르 겠다	비동 의	동의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9.2	15.7	33.3	28.1	13.7	24.8	61.4
	중소 자영업	130	17.7	20.8	34.6	19.2	7.7	38.5	53.8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19.7	15.3	34.4	10.2	20.4	35.0	44.6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8.5	21.3	36.2	17.0	17.0	29.8	53.2
	학생	16	6.3	12.5	43.8	12.5	25.0	18.8	56.3
	전업 가족 종사자	46	6.5	28.3	37.0	8.7	19.6	34.8	45.7
	무직/구직 중	29	0.0	24.1	27.6	20.7	27.6	24.1	48.3
소득	1분위	173	5.8	16.8	36.4	22.5	18.5	22.5	59.0
	2분위	258	13.2	18.6	35.3	17.4	15.5	31.8	52.7
	3분위	116	25.9	23.3	28.4	14.7	7.8	49.1	43.1
학력	초졸 미만	94	7.4	7.4	36.2	21.3	27.7	14.9	57.4
	중졸	60	8.3	15.0	40.0	25.0	11.7	23.3	65.0
	고졸	182	11.5	24.7	32.4	20.3	11.0	36.3	52.7
	대재 이상	225	18.7	18.7	33.8	13.3	15.6	37.3	47.1
정치성 향	보수	138	13.8	18.8	31.9	19.6	15.9	32.6	51.4
	중도	226	13.3	19.0	36.3	17.3	14.2	32.3	53.5
	진보	107	15.9	15.0	37.4	17.8	14.0	30.8	55.1

- 전체적으로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높은 긍정적 인식은 농촌 주민, 농어업 종사자, 학생, 저소득층에서 나타남. 반면, 30대, 도시 주민, 금강권, 중소자영업, 정규직 직장 근로자, 전업 가족종사자, 고학력층에서는 낮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 고소득층에서 유일하게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에 관해 찬성(43.1%)보다는 반대(49.1%)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농촌기본소득 도입

농촌 주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의견은?



- 농촌 주민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이 56.8%, 비동의는 29.2%로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 넘게 나타남
-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과 비슷한 정도를 보임

- 교차분석표

구분		[농촌기본소득 도입](%)							
		사례 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는 편이다	적극 동의 한다	모르 겠다	비동 의	동의
성별	남성	308	13.6	14.9	36.7	24.7	10.1	28.6	61.4
	여성	292	11.3	18.5	33.6	18.5	18.2	29.8	52.1
연령	18-29세	84	14.3	19.0	31.0	10.7	25.0	33.3	41.7
	30대	85	15.3	20.0	31.8	16.5	16.5	35.3	48.2
	40대	103	8.7	21.4	35.9	24.3	9.7	30.1	60.2
	50대	97	15.5	17.5	32.0	26.8	8.2	33.0	58.8
	60세 이상	231	11.3	12.1	39.0	24.2	13.4	23.4	63.2
지역 (도농)	농촌지 역	300	10.0	14.0	37.0	26.7	12.3	24.0	63.7
	도시지 역	300	15.0	19.3	33.3	16.7	15.7	34.3	50.0
지역 (권역)	북부권	171	11.1	18.7	33.3	19.3	17.5	29.8	52.6
	서해안 권	135	8.9	14.1	34.1	28.9	14.1	23.0	63.0
	내륙권	185	15.1	16.8	36.2	19.5	12.4	31.9	55.7
	금강권	109	14.7	16.5	37.6	20.2	11.0	31.2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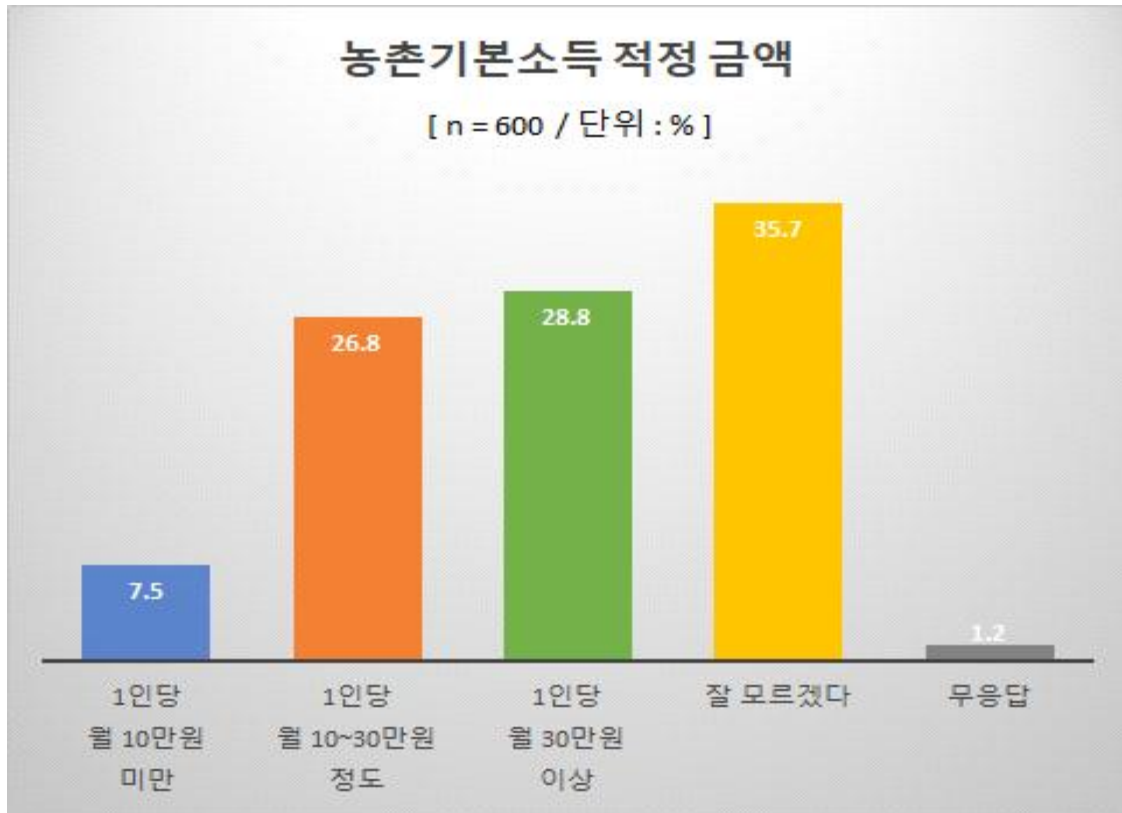
구분		[농촌기본소득 도입](%)							
		사례 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 하는 편이다	적극 동의 한다	모르 겠다	비동 의	동의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12.4	10.5	34.6	28.8	13.7	22.9	63.4
	중소 자영업	130	13.8	16.2	40.8	23.8	5.4	30.0	64.6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13.4	22.9	31.2	16.6	15.9	36.3	47.8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12.8	17.0	36.2	19.1	14.9	29.8	55.3
	학생	16	12.5	12.5	31.3	12.5	31.3	25.0	43.8
	전업 가족 종사자	46	8.7	26.1	32.6	15.2	17.4	34.8	47.8
	무직/구직 중	29	3.4	10.3	41.4	31.0	13.8	13.8	72.4
소득	1분위	173	9.8	12.1	38.2	24.9	15.0	22.0	63.0
	2분위	258	7.8	20.2	35.3	25.2	11.6	27.9	60.5
	3분위	116	25.0	18.1	30.2	16.4	10.3	43.1	46.6
학력	초졸 미만	94	9.6	6.4	42.6	21.3	20.2	16.0	63.8
	중졸	60	8.3	20.0	33.3	26.7	11.7	28.3	60.0
	고졸	182	12.1	15.4	39.0	22.5	11.0	27.5	61.5
	대재 이상	225	15.1	21.8	28.4	21.8	12.9	36.9	50.2
정치성 향	보수	138	14.5	15.2	37.7	21.7	10.9	29.7	59.4
	중도	226	11.5	19.9	32.7	22.1	13.7	31.4	54.9
	진보	107	10.3	15.0	36.4	29.0	9.3	25.2	65.4

- 농촌주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높은 긍정적 인식은 60세 이상, 농촌 주민, 서해안권, 농어업 종사자, 무직/구직 중, 저소득층, 진보층에서 나타남.

· 반면, 30대 이하 저 연령층, 도시 주민, 정규직 직장 근로자, 전업 가족종사자, 고소득층, 대재 이하 학력층에서는 낮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 농촌기본소득 적정 금액

농촌기본소득의 1인당 월 지급 액수는?



- 농촌기본소득 지급 액수는 잘 모른다는 응답 35.7%로 제일 높게 나타남
- 의견을 표명한 응답자의 경우, 1인당 월 30만 원 이상이 28.8%, 1인당 월 10만 원~30만 원 정도 26.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30만원 안팎에 대한 선호를 나타냄

- 교차분석표

구분		[농촌기본소득 적정 금액](%)				
		사례수 (명)	1인당 월 10만원 미만	1인당 월 10~30만 원 정도	1인당 월 30만원 이상	잘 모르겠다
성별	남성	308	7.8	25.4	34.2	32.6
	여성	292	7.3	29.0	23.8	39.9
연령	18-29세	84	11.9	40.5	9.5	38.1
	30대	85	13.3	38.6	22.9	25.3
	40대	103	9.7	33.0	32.0	25.2
	50대	97	3.2	23.2	43.2	30.5
	60세 이상	231	4.8	17.1	31.6	46.5
지역 (도농)	농촌지역	300	6.1	25.0	33.4	35.5
	도시지역	300	9.1	29.3	24.9	36.7
지역 (권역)	북부권	171	9.5	32.0	24.9	33.7
	서해안권	135	6.0	17.9	32.8	43.3
	내륙권	185	7.1	30.2	27.5	35.2
	금강권	109	7.4	25.9	34.3	32.4

- 농촌기본소득 적정 지급 액수에 관해 여성, 40대 이하 연령층, 도시지역, 북부권과 내륙권, 정규직, 학생, 전업 가족종사자, 중간 및 고소득층, 대재 이상, 중도 및 진보층은 월 10만원~30만 원 선호
- 반면, 남성, 50대 이상 연령층, 농촌 주민, 서해안권과 금강권, 농어업종사자, 중소자영업, 비정규직 근로자, 무직/구직중, 저소득층, 고졸 이하 학력층, 보수층에서는 월 30만 원 이상을 선호

구분		[농촌기본소득 적정 금액](%)				
		사례수 (명)	1인당 월 10만원 미만	1인당 월 10~30만 원 정도	1인당 월 30만원 이상	잘 모르겠다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4.0	18.5	35.8	41.7
	중소 자영업	130	8.5	30.8	31.5	29.2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12.3	35.7	23.4	28.6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6.4	25.5	36.2	31.9
	학생	16	0.0	37.5	18.8	43.8
	전업 가족 종사자	46	6.8	27.3	15.9	50.0
	무직/구직 중	29	6.9	13.8	37.9	41.4
소득	1분위	173	4.7	19.3	35.1	40.9
	2분위	258	9.3	31.1	29.2	30.4
	3분위	116	10.5	36.0	21.1	32.5
학력	초졸 미만	94	2.2	16.1	30.1	51.6
	중졸	60	6.8	22.0	30.5	40.7
	고졸	182	5.5	29.8	30.4	34.3
	대재 이상	225	12.6	33.3	27.0	27.0
정치성향	보수	138	8.8	22.6	32.1	36.5
	중도	226	8.6	30.6	29.3	31.5
	진보	107	8.5	37.7	24.5	29.2

○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

농촌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될 경우, 농촌지역으로 이주 혹은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 및 계속 거주 의향은 49.3%, 보통은 25.5%, 없다는 23.3%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농촌 거주에 긍정적으로 의견 표명

- 교차분석표

구분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							
		사례 수 (명)	전혀 없다	없 는 편 이 다	보 통 이 다	있 는 편 이 다	아 주 많 다	없 다	있 다
성별	남성	308	12.1	10.8	22.6	27.2	27.2	23.0	54.4
	여성	292	10.9	13.7	29.6	25.4	20.4	24.6	45.8
연령	18-29세	84	11.9	22.6	48.8	13.1	3.6	34.5	16.7
	30대	85	18.3	19.5	28.0	29.3	4.9	37.8	34.1
	40대	103	11.7	12.6	27.2	29.1	19.4	24.3	48.5
	50대	97	18.1	5.3	16.0	27.7	33.0	23.4	60.6
	60세 이상	231	6.2	8.4	20.4	28.3	36.7	14.6	65.0
지역 (도농)	농촌지 역	300	7.1	8.5	20.1	31.3	33.0	15.6	64.3
	도시지 역	300	15.9	15.9	31.9	21.4	14.9	31.9	36.3
지역 (권역)	북부권	171	12.6	20.4	25.7	26.9	14.4	32.9	41.3
	서해안 권	135	8.3	6.1	22.0	26.5	37.1	14.4	63.6
	내륙권	185	13.7	10.4	28.4	26.2	21.3	24.0	47.5
	금강권	109	10.3	10.3	27.1	25.2	27.1	20.6	52.3

-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농촌 이주 및 계속 거주 의향에
관해 응답은 남성, 60세 이상, 농촌지역, 서해안권, 농어업종사자, 저소득
층, 저 학력층, 보수층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없다는 응답은 여성, 30대, 도시지역, 북부권, 학생, 고소득층, 대재
이상 학력, 진보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구분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							
		사례 수 (명)	전혀 없다	없 는 편 이 다	보 통 이 다	있 는 편 이 다	아 주 많 다	없 다	있 다
직업	농어업 종사자	153	2.0	4.0	13.9	29.1	51.0	6.0	80.1
	중소 자영업	130	14.7	10.9	31.0	28.7	14.7	25.6	43.4
	정규직 직장 근로자	157	15.3	24.2	28.7	21.0	10.8	39.5	31.8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47	17.0	4.3	34.0	31.9	12.8	21.3	44.7
	학생	16	18.8	25.0	37.5	12.5	6.3	43.8	18.8
	전업 가족 종사자	46	8.9	11.1	26.7	28.9	24.4	20.0	53.3
	무직/구직 중	29	17.2	3.4	31.0	24.1	24.1	20.7	48.3
소득	1분위	173	7.0	7.6	18.6	27.9	39.0	14.5	66.9
	2분위	258	10.5	13.7	29.3	27.7	18.8	24.2	46.5
	3분위	116	21.6	14.7	27.6	21.6	14.7	36.2	36.2
학력	초졸 미만	94	4.3	9.7	14.0	26.9	45.2	14.0	72.0
	중졸	60	6.7	6.7	23.3	26.7	36.7	13.3	63.3
	고졸	182	12.2	10.0	23.9	31.1	22.8	22.2	53.9
	대재 이상	225	16.0	16.4	33.3	20.9	13.3	32.4	34.2
정치성 향	보수	138	11.6	10.1	22.5	31.2	24.6	21.7	55.8
	중도	226	11.2	13.8	29.5	26.8	18.8	25.0	45.5
	진보	107	15.0	14.0	24.3	24.3	22.4	29.0	46.7

- 농촌 기본소득 도입시 농촌 거주 의향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높은 긍정적 인식은 50대 이상 고연령층, 농촌 주민, 농어업 종사자,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나타남

· 여성, 도시 주민, 북부권, 중소기업, 대재 이상 학력층은 낮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 반면, 농촌거주 의향이 없는 층은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 정규직 직장 근로자, 학생, 고소득층으로 나타남

□ 상관관계 분석

○ 상관관계 분석표

<표 3-26> 충남 농촌기본소득 설문조사 문항별 상관관계

변수	거주 지역 (농촌, 도시)	성별 (남성, 여성)	연령	농업 농촌의 상황 개선됨 동의	농업 농촌 투자 확대 찬성	농업 농촌의 공익 기여 찬성	공익직 불금제 찬성
거주 지역 (농촌, 도시)	1						
성별 (남성, 여성)	.107**	1					
연령	-.289**	-.073	1				
농업 농촌의 상황 개선됨 동의	-.038	-.009	.044	1			
농업 농촌 투자 확대 찬성	.003	-.032	-.023	-.102*	1		
농업 농촌의 공익 기여 찬성	-.079	-.173**	.019	.112*	.209**	1	
공익직 불금제 찬성	-.065	.098*	.017	-.061	.138**	.139**	1

농민수 당 정책 찬성	-.025	.075	-.040	-.027	.187**	.124**	.373*
농민기 본소득 법안 찬성	-.110**	.067	.063	.016	.141**	.099*	.278**
농촌기 본소득 찬성	-.078	.046	.024	.083*	.164*	.134*	.274**
농촌기 본소득 적정금 액	-.047	.024	.222**	-.037	.001	.000	.107**
농촌기 본소득 도입시 농촌 이주 의향	-.276**	-.006	.322**	.054	.139**	.151**	.110**
직업	.207**	.216**	-.149**	-.023	-.025	-.068	.083
가구 소득	.218**	-.035	-.465**	.031	.019	-.029	-.112**
최종 학력	.261**	-.082	-.577**	.003	.074	.032	-.172
정치 성향	.009	.078	-.254**	.060	.011	.053	-.022
가구원 수	.128**	.016	-.322**	-.013	-.011	-.022	-.019
M±SD	1.50 ±.50	1.49 ±.50	3.51 ±1.46	3.33 ±1.19	3.93 ±.93	3.59 ±.96	3.54 ±1.05

변수	농민수당 정책 찬성	농민기본소 득 법안 찬성	농촌기본소 득 찬성	농촌기본소 득 적정금액	농촌기본소 득 도입시 농촌 이주 의향
농민수당 정책 찬성	1				
농민기본 소득 법안 찬성	.300**	1			
농촌기본 소득 찬성	.301**	.427**	1		
농촌기본 소득 적정금액	.047	.128**	.068	1	
농촌기본 소득 도입시 농촌 이주 의향	.132**	.260**	.304**	.101*	1
직업	.133*	.044	.023	-.003	-.199**
가구소득	-.039	-.217**	-.156**	-.146**	-.259**
최종학력	-.027	-.182**	-.116**	-.228**	-.289**
정치성향	-.075	-.018	.040	-.081	-.064
가구원수	-.020	-.087*	-.010	-.149*	-.172*
M±SD	3.37 ±1.06	3.09 ±1.25	3.08 ±1.2	2.94 ±.96	3.39 ±1.28

변수	직업	가구소득	최종학력	정치성향	가구원수
직업	1				
가구소득	.040	1			
최종학력	.164**	.563**	1		
정치성향	.065	.152**	.178**	1	
가구원수	.080	.228**	.308**	.157**	1
M±SD	2.82 ±1.72	1.90 ±.72	2.96 ±1.08	1.93 ±.72	2.70 ±1.08

$p < .05^*$, $p < .01^{**}$

○ 분석 내용

- 분석결과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289^{**}$ ~ $.563^{**}$ 의 값을 나타내었고, 각 변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관계수 값이 .85를 넘지 않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됨

- 주요 내용

- 농업·농촌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인식은 농촌의 투자 강화에 부(-)적으로,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하며, 농촌기본소득 지지에 정(+)적인 상관관계 보여줌
- 농업·농촌에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지님. 또한, 공익직불금, 농어가수당, 농민·농촌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농촌 거주·이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직불금, 농어가수당, 농민농촌기본소득, 농촌거주의향에 대한 지지가 높음

-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농민·농촌기본소득을 지지. 저소득층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지가 높음
- 농민수당에 대한 지지는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거주의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 농민기본소득의 지지는 농촌기본소득, 농촌거주의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에서 지지는 낮은 편임
- 농촌 거주의향은 저소득층, 저 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남
- 농촌기본소득과 농촌 거주 및 이주 의향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즉,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농촌의 거주 및 이주의향이 높음

제4장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사회실험 방안

1.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1) 농촌기본소득의 배경과 필요성

□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의미

○ 농촌에 관한 인식 변화

- 농촌기본소득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에는 ‘농촌’에 대한 세 가지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은 곧 ‘농촌재생’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게 됨
- 농촌 소멸의 위기. 농촌 인구 과소화, 고령화가 동시 심화되고 젊은 여성 인구가 줄면서 ‘소멸’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심화, 취약한 정주기반과 생활인프라 등의 문제 현실
- 농촌의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 귀농·귀촌 이주 지속적 증가와 국민적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농촌의 미래상. 국민들의 일과 삶의 균형 추구로부터 농촌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저밀도 경제의 가능성 모색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촌은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이 실행되는 공간이자 그 주체인 농민들의 삶과 생활의 터전일뿐더러 농촌은 그 자체로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 공간 제공, 국토 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지님
- 농촌재생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역할에 바탕을 두고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적 공간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 농촌재생 프로젝트에서 농촌주민들이 농촌에 내재한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몫

에 근거하며 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미래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 기대

○ 농촌기본소득의 역할과 가능성 : 농촌기본소득이 어떻게 농촌재생을 실현할 것인가?(송원규, 2021, 6. 8.)

- 농업 생산의 생산주의로부터 생태적 전환 유도

- 농촌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농민, 농촌주민, 농정은 생산주의로부터 생태적 활동 강화 방향으로 전환. 즉, 농촌의 생태적 전환, 자연과의 공생의 관점에서 농민 등이 농업 생산에 임할 조건과 유인이 형성. 이에 따라 농촌기본소득은 농업의 다기능성 증진을 지향하며, 농민들의 자율성과 생태성 강화 기여

- 농촌의 내재적 및 생태적·문화적 발전 추구

- 그간 농촌 주민들은 외부 자본의 유치 및 투자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해옴. 이러한 방식은 지역 발전에 실질적 효과가 미비했을 뿐더러 지역 환경의 파괴 및 지역 부의 외부유출을 가져옴. 농촌기본소득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주어진다면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보전·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 방향 모색이 가능할 것임

- 농촌 이주 및 정주 강화로 농촌 인구 증대

- 농촌기본소득이 주어져, 농촌에서 농업 활동이나 비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에서의 생활안정이 가능하다면 과밀화된 도시를 벗어나 농촌의 저밀도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농촌에서의 생활안정의 버팀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도전하려는 젊은 층의 유입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농촌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 농촌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소득 역외 유출 문제 극복 및 지역 순환경제 구축 관점. 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지역자원의 순환, 재화나 서비스의 타 지역 지출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의 지역 내 활용, 지역주민의 구매와 소비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
-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직접적 효과
 -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 내 생산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비 농업부문 산업 활성화
- 농촌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간접적 효과
 -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고령화 완화, 시간 재량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활동 확대에 따른 농촌 내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보건, 교육, 의료), 마을 공동체 복원
- 경제적 효과 추구 모델
 - 지역승수효과 :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개발한 LM3(Local Multiplier 3) 방법론. R1, R2농촌기본소득 전체 지급액, R3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액 가운데 지역 내 피고용자와 협력업체, 기타 지출액
 -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 : 직접효과로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간접효과로는 지역소득역외유출방지와 지역상인 소득증가, 그리고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 등 평가 분석
 -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화폐는 경제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 시민사회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촉진, 교육문제나 육아·돌봄의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함.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돌봄, 교육, 의료 생협 등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강화의 방안을 모색

□ 일본의 지역재생

○ 일본의 지역부흥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지역내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농촌의 마을자립형 경제공동체 구상. 지역의 경제구조를 외부 자원 의존형에서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 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결망 활성화 추진 방식(송미령, 2021, 3. 19)
- 중앙의 입장에서 수립된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조치 변화

○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 지속가능한 지역부흥과 청년실업을 함께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창생법안 마련 및 창생본부 설립 운영
-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지역을 창생하여 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육아의 희망을 실현해 동경일극집중을 방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과제 해결 추진
- 대규모 신규 산업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적인 특산물을 발굴브랜드화 하여 지역 내의 일자리를 증가 등
- 농산촌 이주와 지역부흥 협력대
- 지방소멸의 위기와 담론 속에서 다수의 농어촌은 소멸하지 않고 강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마을 만들기 정책이 지역주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울러 젊은이를 중심으로 농산촌 이주가 실현되고 있음(오다 기리 도쿠미 (저), 부혜진 외(역), 2014)
- 지역부흥협력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진행되는 지역에 있어 지역외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그 지역 정주 및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 지역 부흥협력대원은 최장 3년간 계약을 통해 일정한 보수(인건비 연간 최대 4,000만원, 활동경비 최대 2,000만원)와 주거지, 업무 지원을 받고 과제를 수행.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농산물의 홍보, 유통,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김혜인, 2016. 1. 26), 초기 89명으로부터 시작, 최근 연간 약 5,000여 명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짐(한국농어민신문, 2021, 7. 2.)

□ 농촌 재생과 농촌기본소득

○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 필요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 농촌의 배제

-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지역불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님. 비수도권내의 소지역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등 지역불균형은 다층적 문제임
- 충남의 경우,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천안·아산·당진·서산의 북부권과 나머지 권역간의 불균형, 시·군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불균형 등 3중적 불균형 구조에 놓여 있음
- 그간 도시재생의 정책은 활성화되었으나, 농촌재생은 독자적 범주의 정책 설계가 부재. 또한 농촌정책은 농업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부문으로 접근되어 농촌 주민과 농촌에 관한 정책이 없어 농업정책으로 묶임

- 지방소멸론

-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¹²⁾ : 지방소멸로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12) 마스다보고서란 2014년, 일본창성회의 좌장 마스다 히로의 '소멸 자치체 리스트 및 스톱 소자녀화·지방활력 전략 보고서'를 말함. 마스다보고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구감소, 과소지역, 유지불가능, 한계촌락'이란 이름 대신 '소멸 가능 지자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개별 지자체 이름을 거명하여 많은

약 반수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자체가 사라질 것. 이를 ‘소멸가능 지자체’로 분류하고 특히 인구추계 1만 명 이하의 523개 지자체(전체의 약 3%)가 소멸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그 지역 명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킴

- 마스다 분석의 특징은 인구감소와 동경일극 집중 문제를 연계. 즉, 기존의 인구문제 접근법이 저출산 및 낮은 혼인율에 근거. 마스다 분석에서는 사회적 이동 변수 추가. 동경이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는 것과 더불어 동경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동경이 일본 전체의 저출산과 소자녀화에 박차를 가하는 구조임을 지적
- 이에 따라 동경으로 집중되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인구 30~50만 수준의 지방 중핵도시 육성을 제안. 또한, 이러한 분석에 따라 일본은 ‘마을·사람·일 창생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한국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¹³⁾에 근거 매년 지방소멸 보고서 발표. 2047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되고, 이 중 소멸 고위험지역도 157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국 250개 시·군·구의 41.2%가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

<표 4-1>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시·군·구 현황

	2000년		2010년		2020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소멸 고위험	0	0	0	0	22	8.8
소멸위험 진입 ¹⁴⁾	0	0	61	24.3	81	32.4
소멸 주의	62	25.2	53	21.1	94	37.6
소멸위험 보통	35	14.2	54	21.5	43	17.2
소멸위험 낮음	149	60.6	83	33.1	10	4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20. 5.

논쟁을 일으킴(마스다 하로야(저), 김정환(역), 2014)

13)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로 나눈 값.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 소멸위험지수가 0.2미만일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

14) 소멸위험 진입(0.5 미만 ~ 0.2)

- 지방소멸론의 양면성 : 지방소멸 위기론은 지방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공론화 시킨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마을이 소멸하거나 성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위험성이 있음. 실제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단일의 인구지표로만 지방소멸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일본의 마스다 모델에 대해서도 지방소멸의 기준이 모호하며, 마스다 보고서의 지방중핵도시 육성과 압축도시 건립의 대안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과소 농산촌 철퇴론으로 귀결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인구 감소를 경험한 선진 G7 국가들의 농촌 인구 변화를 보면, 반드시 농촌인구 절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5년 이후부터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초고령화 지역이지만 성장하는 지역이 적지 않음. 균형있는 시각으로 새로운 대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

○ 농촌재생의 비전

- 농촌의 변화와 잠재력

- 농촌인구는 2015년 무렵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곳은 전체 농촌 시군의 절반이 넘는 70개(51.1%)

<표 4-2> 과거 농촌 인구 전망치와 실제 인구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천 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과거 인구 전망	-	-	8,072	7,366	6,790
실제 농촌인구 추이	9,343	8,704	8,627	9,014	9,255

출처 : 성주인·한이철·민경찬, 2021.

- 2010년 이전에 제시된 농촌 인구 전망치와 2010년대 이후 실제 농촌 인구 사이에는 100~200만 명 이상 큰 격차가 나타남
- 장래 농촌인구는 2015년 936만명에서 2040년 1,015만 명으로 증가 전망

<표 4-3> 장래 농촌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2015-30	2030-40
농촌	9,359	9,800	10,164	10,148	0.6	0.0
- 읍부	4,626	4,844	4,993	5,058	0.5	0.1
- 면부	4,733	4,956	5,171	5,089	0.6	-0.2
도시(동부)	41,593	41,730	41,639	40,433	0.0	-0.3
전국	50,952	51,530	51,803	50,581	0.1	-0.2
농촌비중(%)	18.4	19.0	19.6	20.1		

출처 : 성주인·한이철·민경찬, 2021, 50쪽.

- 농촌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의 위상 지님. 농촌은 국토의 대부분 (89.3%)을 차지, 인구의 18.7% 거주, 전국 162개 시·군 중 138개 (85.2%)에 읍·면이 포함(2019년 말 기준)
- 도시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무대로 농촌을 바라보는 인식 확산.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코로나19 이후 저밀도사회 지향, 분산 거주, 半農半 X 등 농촌형 라이프 스타일 선호 높아질 전망
-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잠재력¹⁵⁾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음.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 결과, 군 지역의 지수 값은 1.68로 시(1.11), 구(0.89)보다 높게 나타남. 즉 군 지역이 시 지역 및 특·광역시보다 인구의 증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농촌의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발전 추세. 최근 농촌의 지역총생산 증가세가 도시 지역을 앞지름. 2011년~2016년의 5년간 저밀도 지역의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19.2%, 도시지역은 14.8%

15) 지역재생력지수로 측정.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 가를 봄. 2자녀이상 출생률(1년간 총 출생아 중에서 2자녀 이상 비율)/출산가능인구비율(총 여성인구 대비 가임여성인구). 2020년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상위 50위에는 충남의 청양군 19위(2.01), 서천군 29위(1.79), 태안군 34위(1.74), 부여군 36위(1.73)에 속해 있음. 이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 불리는 농촌은 인구의 재생력 측면에서 오히려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표 4-4> 지역유형별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현황(2011-2016)

지역 구분	지역내 총생산(백 만원)		
	2011년	2016년	증감율 (총합 기준)
도시지역	1,124,197,576	1,290,372,223	14.8%
저밀도 경제 지역	173,174,661	206,480,312	19.2%
- 도시연계 저밀도 경제지역	129,458,635	158,008,765	22.1%
- 원격 농촌지역	43,716,026	48,471,547	10.9%

출처 : 정도채 외, 2019.

- 귀농·귀촌의 증대. 2020년 전체 귀농·귀촌인수(동반 가구원 포함)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3만3,924명(7.4%) 증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량 증가, 2019년 대비 2만8,967명 많은 농촌 순유입자가 발생. 또한,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했다는 응답(8.2%)보다 증가했다는 응답(20.3%)이 높음(성주인·한이철·민경천, 2021)

<표 4-5> 도농간 인구이동(2010-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10	2015	2017	2019	2020
총 이동인구	8,226,594	7,755,286	7,154,226	7,104,398	7,735,491
농촌→도시(A)	829,814 10.1%	746,626 9.6%	704,585 9.8%	731,675 10.3%	761,749 9.8%
도시→농촌(B)	926,125 11.3%	828,443 10.7%	821,021 11.5%	745,912 10.5%	804,953 10.4%
농촌으로의 순유입(B-A)	96,311	81,817	116,436	14,237	43,204

출처 : 송미령, 2020.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재생의 핵심적 정책 수단

- 농촌재생 정책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필요. 현재 농촌재생을 위해 지역의 특화된 마을 만들기, 빈집은행,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구축 거주 지원, 교육과 보육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체계가 모색되고 있음

- 그럼에도 소득과 생활안정에 관한 정책은 농업 관련 종사외의 뚜렷한 대

책이 없는 상황임.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 실패의 두려움 없는 창업 등의 도전, 지역사회 봉사과 참여 등을 위해서는 소득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지역 부흥 협력대’¹⁶⁾로 농산촌 이주인구에게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고, 지원 종료 후 지역 정주 등 그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 이 점을 고려하면 농촌주민 기본소득은 농촌 이주민, 특히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농촌경제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본이 아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재투자력을 구축하는 지역순환경제 형성이 중요
- 농촌 생활에서의 경제규모는 작은 경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생활안정과 소비가 가능. 이에 따라 적정한 기본소득은 작은 경제를 지역 내에 확실하게 구축하며, 지역순환경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인구 정책이자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정책의 성격을 지님
- 농촌기본소득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재생이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농촌 주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

16) 일본정부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지방을 살리고자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 첫째 89명으로 시작해 최근 연간 5,000여명이 농촌으로 내려가 최대 400만 엔(약 4066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최장 3년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수행

2) 농촌기본소득 사례

○ 나미비아와 인도의 사례

- 나미비아, 오티지베로(Otjivero). 기본소득 실험(Basic Income Grant pilot)¹⁷⁾
 - 2008년 1월 ~ 2009년 12월(24개월 진행). 각종 사회단체, 해외 지원기구들이 결합한 나미비아 기본소득 연합을 구성하여 60세 이하 모든 주민(930명)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한 달에 기본소득으로 100N\$ 지급
 - 기본소득 실험 이전, 그 지역 주민들은 기아와 빈곤, 타 지역으로 갈 수 없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곳. 기본소득이 실시된 이후 그 지역으로 이주 증대
 - 18명의 자체 공동체 위원회를 구성, 주민들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지급된 돈을 사용할지 도움을 줌
 - 가계 빈곤 감소, 경제활동의 증가, 어린이의 영양상태 개선, 에이즈 치료 접근성 강화, 교육 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 인도에서는 현금이전에 관한 공적 논쟁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진행되어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 자영업여성연합(SEWA: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주관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전개
 - 18개월 동안 6,000여명이 매월 단위의 소액의 무조건적 소득을 지급받았고, 이의 효과를 파악하기위해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과의 비교하는 조사를 진행, 조사는 12,000여명에게 이루어짐
 - 2개의 기본소득 실험 : ① MPUCT(Madhya Pradesh Unconditional

17) Big Coalition Namibia, The Basic Income pilot project(2007-2008)

Cash Transfer: 마디야 프라데시의 무조건적 현금이전)은 8개 마을은 개인별로 매월 보조금을 받고, 12개의 유사한 마을은 통제 마을이 됨. ② TVUCT(Tribal Village Unconditional Cash Transfer: 부족 마을 무조건 현금이전)은 1개의 부족마을은 모든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다른 1개 부족은 통제마을로 비교함

- 어린이 영양 실조 개선, 어린이 학교 출석율 향상, 일반 가정에 비해 기본소득 받은 가정의 소득 수준 더 높은 향상 등 긍정적 효과 나타남

○ 유럽의 농업·농촌 기본소득 논의(송원규)

- 2012년 뮌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4차 총회의 농촌기본소득 제안

-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내에 농촌기본소득 도입 제안
- 농촌기본소득은 ①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중단, ② 농촌부흥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기획들을 지원, ③ 소득증진을 위해 생태를 훼손하는 대규모 영농으로부터 탈피하는 계기 제공, ④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는 사회정치적 기여 등의 역할 가능

- 2017년 리스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7차 총회의 농업기본소득 제안

- 기본소득의 전환적 잠재력을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적 먹거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 농민을 위한 기본적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행 먹거리 보조 체계를 바꾸고 생산주의 농식품 패러다임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려로 기후변화, 기아와 영양 불균형, 공공보건, 환경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필요
- 다양한 농생태계 영농 체계와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모델 필요.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위한 재정적/금융적 역량 강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 도입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계획

- 사업 개요

사업시기	2021년 ~ 2026년(5년)
지급대상	시범사업 지역,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선정 방법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지급금액 및 주기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효과분석

- 시범사업 전 사전 조사, 시범사업 중 중간조사, 사업완료 후 사후조사로 진행

-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선정 기준 : 지역소멸 위험이 있고, 주민 수가 전국 면 평균 인구수 (4,167명) 이하인 면 지역
- 경기도 11개 시·군의 26개 면(최소 197명 ~ 최대 4,167명)이 해당 기준 충족

- 지급액 산정기준

- 면 지역의 가구소득을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읍 지역의 소득만큼 보장. 읍 지역 가구의 연간소득(2,343.3만 원)과 면 지역 가구의 연간소득 (1,923.7만원)의 차이인 419.6만 원. 가구원 수(2.36명)과 12개월로 나눈 금액. 월 15만원 지급

- 성과 지표 :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 측면을 같이 평가

<표 4-6>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성과 평가 지표

대분류	중분류
일반적 특성	① 일반적 특성
개인 (일과 삶의 균형)	② 행복 및 삶의 질
	③ 건강
	④ 경제 및 고용
	⑤ 주거
	⑥ 가족 건강성
	⑦ 소비 및 여가활동
공동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발전)	⑧ 포용성
	⑨ 사회자본(사회관계망)
	⑩ 지역경제순환
	⑪ 지속 거주 의향
	⑫ 공동체 의식&정치의식
	⑬ 환경의식

2. 충남 농촌기본소득과 사회실험 방안

1)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도입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필요성

○ 충남 농촌 인구와 비중

- 전국 농촌인구 수는 971만4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임. 충남의 농촌인구 수는 68만2천7백여명으로 인구 비중은 32.2%를 차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보여줌

<표 4-7> 2020년 농촌인구 현황

(단위 : 명, %)

	전체 인구수	농촌인구 수	농촌인구 비중	농가 인구 수	농촌내 농가 인구 수 비중 ¹⁸⁾
전국	51,829,023	9,714,763	<u>18.7</u>	2,317,000	<u>18%</u>
충남	2,121,029	682,744	<u>32.2</u>	266,755	<u>30%</u>

○ 충남의 지방소멸의 위기

- 충남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높음

18) 전국의 농가 수는 1,036호. 이중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가 수는 752호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지역 농가 인구를 제외하여 추산함

<그림 4-1> 광역자치단체별 소멸위험지역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 5.

- 서천군(0.178), 청양군(0.193)은 고위험지역, 부여군(0.202),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
- 충남의 인구감소와 행정리 마을의 소멸 고위험 지역 확산
- 공주시, 청양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등은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9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

<표 4-8> 충남의 인구 감소 현황(2000년 대비 2019년)

10% 미만 감소	10%이상 20%미만 감소	20% 이상 30% 미만 감소
태안군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청양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는 2015년은 전체 행정리의 51.2%, 2020년에는 71.1%가 ‘소멸고위험’ 지역.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음

<표 4-9> 충남 행정리 마을의 소멸고위험비중(소멸고위험 행정리 수/행정리 수)

	전체 행정리 수	소멸고위험 행정리	비율
2015년	4,317 개소	2,211개소	51.2%
2020년	4,392 개소	3,123개소	71.1%

* 출처 : ‘충남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와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충남연구원, 2021.6.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

- 농민기본소득의 경우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농촌기본소득의 경우는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범주형 기본소득을 넘어 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정범위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고 모든 원칙을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축소판으로 의미를 지님. 정책효과 평가를 통해 향후 보편적 기본소득의 확장 가능한 모델 개발의 의미(이창한, 2021. 1. 29.)
-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실현을 통해 기본소득의 공동체 효과를 기대. 농촌 마을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며, 그 속에 주민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서정희, 2021. 4. 20.)

○ 농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선정 관련 기준

- ‘지방소멸위기지역’ 기준(박진경, 2020, 9.)
- 2000~2019년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인구 10만 이하인 지역 중에서 표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 단 인구 10만 이상 시·군중 인구감소율이 15%이상 시·군은 포함

<표 4-10>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기준(안)

세부영역	지표	선정기준
인구감소율	총인구 변화율	2000-2019년간 인구 감소율이 10% 이상인 지역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	최근 5년간 평균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지역
생산가능인구비율	15~64세 인구수/총인구수	최근 5년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이 하위 50%인 지역

출처 : 박진경, 2020. 9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기준

- 인구감소지수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평가. 이 기준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기지역'(2안)과 같은 9개 지역이 대상지역임

-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역소멸위험(지역소멸지수 0.5 미만) + 전국 평균 인구 이하 면지역(면 평균인구 2020년 12월 31일 기준 3,904명)

o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대상 지역 선정 기준 방안

- 1안) 경기도 선정 기준 적용 시

- 지역소멸위험 대상 10개 시·군(부여, 서천, 청양,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 중, 전국 면 인구수 평균 이하 지역으로 총 73개 면이 대상 지역. 대상인구는 280,000여명(평균인구 3,900명 기준)으로 추산

- 2안) 행정리 마을 단위 선정 시

- 지방소멸지수 적용. 2020년 기준 충남 전체 행정리 4,392개소의 71.1%인 3,123개 지역이 대상. 대상인구는 310,000여 명(과소지역 100명 기준)으로 추산

- 결과적으로 농촌기본소득 대상지역은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할 경우, 면 지역 혹은 행정리를 대상으로 선정하더라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인구는 대략 최대 300,0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됨

o 충남 농촌기본소득 소요 예산 및 재원 마련 방안

- 농촌기본소득 지급액

- 농민기본소득의 입법 제안의 경우 월 30만원 기준 제시. 현재 농민수당 평균 월 5만원과 소농직불금 월 10만원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 단계적으로 농촌기본소득으로 월 15만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
 - 농촌기본소득의 초기 시작은 농민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 농민수당의 지급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 월 평균 5만원 수준에서 출발
- 농촌기본소득 소요 예산 추산
- 농촌기본소득의 소요 예산은 장기적으로는 월 15만원 추가 지급의 경우, 연 5천400억 원 추산($300,000\text{명} \times 180\text{만원}$)
 - 농촌기본소득의 초기 출발로 월 5만원, 연 60만원 지급 시, 연 1,800억 원 추산
- 농촌기본소득 재원 마련
- 지역소멸대응기금 적용.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금 활용. 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 계획(광역자치단체에 2,500억 원, 기초단체 7,500억 원의 비율 배분)
 -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자원분배 강화의 농정 재정의 재조정. 기존의 농촌 지역개발정책 사업 예산 조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 예산 증액(현 2.8조원(농식품부 예산의 17.6%) → 2028년 10조원(농식품부 예산의 52% 수준))
-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지역순환 경제의 구축(양준호, 2021. 4.20)
-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의 문제
- 지역은 현재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지역의 산업공동화, 지역의 경제적 동력 상실
 - 지역 외부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대규모 자본에 따라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

- 지역 문제 해결에서 주민의 주체적 관여 기회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
- 농촌 사회는 농촌사회의 고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심화, 농업 성장률의 저하. 농업·농촌에 대한 공공적 대응 필요. 농촌 복원의 조건으로서 농촌경제의 대안 필요

- 지역순환 경제

- 지역 내부의 성장동력 복원, 지역 경제적 부의 외부유출 방지, 지역(경제)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여,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 극대화 대안
- 농촌 내부의 소득, 생산(투자), 자금의 역내 환류를 통한 경제구조의 자기 완결성 강화. 농촌경제의 안정성 및 농촌 주민자치 확대. 농촌 사회의 활성화 추진

- 지역화폐와 농촌기본소득

- 지역화폐는 지역자원의 순환, 상품과 서비스의 지역 내 활용, 지역주민의 구매와 소비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목적으로 발행(이한주 외, 2017)
- 지역화폐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를 통해 기업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의 타지의 지출을 차단해 지역 승수효과에 기여
- 농촌기본소득, 지역화폐, 다양한 일이 결합된 지역순환경제 모델(임경수, 제3회, 73). 농촌주민의 일 = 반농 + 반X(x1, x2..) + α . 반농은 다른 일도 하면서 짓는 농사. 반X는 농사외의 다른 일. α 는 지역사회를 위한 일.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주민이 벌어야 하는 화폐의 총액을 경감. 지역화폐는 반X와 α 의 가능성을 증대시킴
- 농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연계 성공 가능성 높음. 성공한 지역화폐 모델 중 상당수가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곳. 익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

보다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신뢰수준이 높고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곳인 농촌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봄(문진수, 3회, 65)

2)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

□ 기본소득 정책실험

○ 정책 실험이 필요한 이유(김승연 외, 2019, p. 9.)

-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을 통한 정책혁신이 시도되고 있지만, 증거 기반 정책설계는 부족

·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제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증과정 및 자료의 축적과정이 필요

-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이 필수적임

○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실시하는 방법과 원칙(가이 스탠딩, 2018, pp. 343-358)

- 기본소득은 정액으로 예측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지급, 일정기간동안 매달 지급. 남녀동등하게 개별적으로 지급. 아동 혹은 장애 등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 대리인 지정 가능

- 정책실험의 규모는 충분히 커야 함. 일반 규칙으로 샘플 규모가 최소 1000명은 되어야 함

-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함. 너무 짧을 경우 이는 일시불 자본급여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2년이 합리적

- 무작위 통제집단 이용. 기본소득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함

- 정책실험 중 정기적인 평가조사를 수행
 - 정책실험이 실시된 후 6개월 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6개월 마다 중간 조사 필요
- 평가항목에는 태도효과와 행위효과를 포함
 - 기본소득은 개인의 삶의 상태와 태도에 영향을 미침. 직접 측정될 수 있는 행위효과와 더불어 태도에 관한 평가 포함
- 행위자의 자기 목소리 내는 효과 고려
 - 기본소득의 실험이 효과적이라면 행위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이 경우 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 높음

○ 농촌기본소득 실험 지역 대상 선정

- 마을(행정리) 기준으로 선정
 - 행정리 마을 선정은 충남의 15개 시·군 모든 지역의 소멸위기를 겪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점이 있음
 - 또한, 마을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지역 선정 방법
 - 공모를 통해 지역활성화 준비 정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
 -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긍정적 효과가 높은 지역은 능동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지역

○ 사회실험 개요

- 시범 사업 규모와 방식

- 20여개 마을 선정.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 마을, 참여형 기본소득 지급 마을 등으로 나눠 사업 진행. 참여형 마을은 농촌 마을의 공익적 가치와 마을만들기의 실천을 약속하는 마을. 충남도와 해당 마을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 지급 대상자 및 액수

- 해당 지역 1년 이상 전체 실거주자. 소득 구분, 직업 구분 없이 모두에게 시범사업 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화폐, 개별 지급

- 사업 평가

- 사업의 효과 평가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 마을, 참여형 기본소득 지급 마을, 기본소득 지급되지 않는 마을 등 세 그룹으로 나눠 평가

- 시범사업 소요 예산

- 1개 마을(100명 기준) × 연 180만원 = 1억8천만 원. 20개 마을 36억 원. 2년 72억 원 소요 예상

○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평가

- 개인과 공동체 효과 평가

-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례에 준하여 개인적 차원(일과 삶의 균형)과 공동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발전)차원의 평가 지표 적용

- 사회적 인구 이동 및 지역순환경제 효과 평가

- 충남도는 사회적 인구 이동의 효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활성화 효과를

보완하여 적용. 즉,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정도에 관한 평가

- 농촌기본소득의 지역 승수효과 측정 및 강화(서재교, 2021. 6. 8.)
 - LM3(Local Money Flow Multiplier 3)는 영국 신경경제재단이 개발, 영국 농촌지역의 공공조달, 사회적 기업, 로컬푸드 등이 지향하는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 조사 방법 : Round 1. 조사 대상기관의 수입(매출, 세수 등) 총액, Round 2. 조사 대상기관이 고용한 지역주민과 지역 내 협력업체에 지출한 급여와 매입(구매), Round 3. 조사 대상기관에 고용된 지역주민과 지역내 협력업체가 지역에 지출한 금액
 - $LM3 = Round\ 1 + Round\ 2 + Round\ 3 / Round\ 1$ 방식으로 평가. R1은 농촌기본소득 실험 지급 총액, R2는 지역 내 지출금액(지역화폐 특성에 따라 동일할 수 있음), R3는 매출액 대비 지역화폐 비중 고려한 기업의 지역 내 지출 금액(급여, 협력업체, 임대료, 기타 지출 등)
 - 지역화폐 지역 승수 효과 강화 방안. 생활권 중심을 지역 점차 확대, 지역화폐 다양화, 지역기반 기업 가맹점 확대, 취약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내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등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 소득보장 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분배 및 재분배 정책 중 현금(성) 급여에 관한 정책 및 이의 제도화’
 - 소득보장 제도 정당화의 두 가지 계기
 -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 :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합의. 통합적 정책패키지로서 모든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보장과 지원을 제공 필요(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누구라도 사회적 보호 체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초가 됨
 - 분배정치, 현금 이전의 확산 : 빈곤 해소와 사회적 보호 정책으로 분배정책의 중요성 부각. 또한 분배 정책에서 비기여 현금 지급(non-contributory cash transfer)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확산
- 농업·농촌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는 직불금제, 농어가 수당,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임. 직불금제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으며, 지자체 수준에서 농어가 수당(농민수당)이 실행되고 있음
 - 최근 공익직불금제와 농민수당 제도의 실천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및 ‘농촌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대두
 - 농민수당은 지자체 차원의 사회수당, 농민기본소득은 국가 단위 범주형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개인단위로 지급 필요
 - 농민 기본소득 법안 등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관련 입법 논의 진행
 - 농촌기본소득 : 소멸위험이 있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 유무, 노동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지원금

- 기본소득론으로의 접근 이유

- 기본소득론의 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정기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 지원 등의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의 위기 및 소득 문제 해결의 직접적 방안으로 제기됨
- 농업·농촌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과 농업·농촌이 갖는 공공재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가능성이 있음

○ 공익직불금제와 농어가 수당 현황

-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공익 직불제로의 개편

- 직불금은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거나, 영농활동 성과를 보완하는 방식에서 공익기능 증진을 장려하는 보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 공익형 직불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고, 기본형은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이루어짐
- 소농직불금은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이고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경작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지급
- 공익형직불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면적 보상의 성격이 강함. 소농직불금은 22%, 면적 직불금(작물 생산면적에 대한 보상)이 전체 직불금의 74.7%를 차지함

- 지자체 중심의 농민수당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 농어업인의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충남 농어가수당 현황(2020년) : 총 농어가 155,280호 지급. 지급액 125,466,450천원

○ 소득보장 제도의 성과 :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 개선

- 농가 인구 감소, 농가 소득 정체, 농가 소득 양극화, 도농 소득 격차 등의 장기적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2020년에 들어 농가 인구 및 농가 소득의 소폭 증가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공익직불금으로의 개편에 따른 소농직불금제와 농어가 수당 정책의 도입은 직접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전체 농가 인구의 증가, 농업경영체 증가, 고령화 감소, 농가 소득 불평도의 감소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 의견

- 농촌의 양극화, 고령화 해소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지원 제도 강화가 필요
-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상호 보완적, 둘 다 필요
-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예산은 농업 관련 예산이 아니라 사회보장 예산 등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함
- 직불금과 농어가수당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기본 조건임. 현실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과 농어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정책의 소외층이 존재
- 적은 규모의 농사짓는 농민, 임차농 등의 경우 정책 대상에서 배제 우려
- 농지의 60% 가량을 부재 지주가 소유하고 지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 농지문제가 있는 상황. 특히, 젊은 층이 귀농하여 농지를 확보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움. 농지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여성 농민의 경우 소외되어 여성 농민의 직업적 가치가 배제됨. 여성 농민은 농사와 더불어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의 역할에 놓여 있음. 여성 농민의 직업적 가치가 존중받고 소외됨이 없는 농민기본소득이 되어야 함
- 농촌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조건이 없어 선별의 어려움이 없으며,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농촌의 기준과 농촌기본소득 제공의 대상을 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많은 노력이 필요

○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 설문 항목 조사 결과
 - 농업·농촌의 주요 소득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금과 충남의 농어가 수당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논의 중인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서는 대략 30% 가량의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 의견 표출
 - 농촌 기본소득의 지급 적정 액수는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이 28.8%, 1인당 월 10만원~30만원 정도는 26.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30만원 정도의 선호를 나타냄
- 농촌과 도시 주민간의 인식 차이
 - 대체적으로 농촌주민들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없어 소득보장 정책에 관해 도농 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
-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거주) 의향 교차 분석

<표> 농촌기본소득과 농촌 이주(거주) 의향 교차 분석

구분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		
		보통이다	없다	있다
농촌기본소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5	50.0	36.5
	동의하지 않음	28.3	45.5	26.3
	동의함	34.0	17.7	48.3
	적극 동의함	14.0	5.4	80.6
	잘 모름	33.3	17.9	48.7

-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의 농촌 거주 의향은 48.3%, 거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7%임
- 특히,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찬성한 응답자의 경우, 80.6%의 매우 높은 농촌 거주 의향을 나타냄

- 조사결과 시사점

- 최근 농업과 농촌의 변화, 농업과 농촌의 미래, 공익적 기능, 제반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서로 대립적이지 않음. 이 조사결과를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서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농촌기본소득 도입의 찬반 의견과 농촌 이주 및 계속 거주 의향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¹⁹⁾를 보여 실제 농촌 기본소득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농촌 이주 및 거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9) 설문조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농촌 이주(거주)의향의 상관관계수 값은 .304**($p<.01$ **)으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남. 즉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지지가 높을수록 농촌 이주의향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 농촌기본소득의 의미와 목표

-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같은 소득지원 정책이지만, 그 의미는 기본소득의 대상을 농민에서 농촌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범주의 농촌 정책
- 농업정책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공간(농촌)에 먼저 시행하는 균형발전으로서 의미
- 농촌기본소득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 대안
- 그간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등의 중심으로 농촌과는 유리된 채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지방소멸과 농촌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의 정책으로서 ‘농촌 재생’의 새로운 비전이 요구됨. 아울러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재생’의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 필요

○ 농촌 재생 : 지방소멸 및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 농촌의 배제
-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지역불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님. 비수도권내의 소지역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등 지역불균형은 다층적 문제임
- 그간 도시재생의 정책은 활성화되었으나, 농촌재생은 독자적 범주의 정책 설계가 부재. 또한 농촌정책은 농업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부문으로 접근되어 농촌 주민과 농촌에 관한 정책이 없어 농업정책으로 묶임

- 지방소멸 위기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근거 매년 지방소멸 보고서 발표. 2047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되고, 이 중 소멸 고위험지역도 157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국 250개 시·군·구의 41.2%가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

- 농촌재생 : 지방소멸의 대안

- 농촌인구는 2015년 무렵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곳은 전체 농촌 시군의 절반이 넘는 70개 (51.1%)
- 도시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무대로 농촌을 바라보는 인식 확산.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코로나19 이후 저밀도사회 지향, 분산 거주, 半農半X 등 농촌형 라이프 스타일 선호 높아질 전망
-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잠재력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음.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 결과, 군 지역의 지수 값은 1.68로 시(1.11), 구(0.89)보다 높게 나타남
- 농촌의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발전 추세. 최근 농촌의 지역총생산 증가세가 도시 지역을 앞지름
- 2020년 전체 귀농·귀촌인수는 전년 대비 7.4% 증가. 2019년 대비 2만 8,967명 많은 농촌 순유입자가 발생. 또한,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했다는 응답(8.2%)보다 증가했다는 응답(20.3%)이 높음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재생의 핵심적 정책 수단

- 농촌재생 정책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필요. 농촌재생 정책에서 소득과 생활안정에 관한 정책은 미비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경제의 측면에서 외부의 자본이 아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재투자력을 구축하는 지역순환경제 형성의 긍정적 기능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인구 정책이자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정책의 성격을 지님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필요성

○ 충남의 높은 농촌 인구와 비중

- 전국 농촌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18.7%임. 충남의 농촌인구 수는 68만2천7백여명으로 인구 비중은 32.2%를 차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보여줌

○ 충남의 지방소멸의 위기

- 충남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높음
- 서천군(0.178), 청양군(0.193)은 고위험지역, 부여군(0.202),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
- 충남의 인구감소와 행정리 마을의 소멸 고위험 지역 확산
- 공주시, 청양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등은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9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
-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는 2015년은 전체 행정리의 51.2%, 2020년에는 71.1%가 ‘소멸고위험’ 지역.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음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 농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선정 관련 기준

- 경기도 선정 기준 적용

- 지역소멸위험 대상 10개 시·군(부여, 서천, 청양,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 중, 전국 면 인구수 평균 이하 지역으로 총 73개 면이 대상 지역. 대상인구는 280,000여명으로 추산

- 행정리 마을 단위 선정

- 지방소멸지수 적용. 2020년 기준 충남 전체 행정리 4,392개소의 71.1%인 3,123개 지역. 대상인구는 310,000여 명(과소지역 100명 기준)으로 추산

- 농촌기본소득 대상 인구는 대략 최대 300,0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됨

○ 충남 농촌기본소득 소요 예산 및 재원 마련 방안

- 농촌기본소득 지급액

- 농민기본소득의 입법 제안의 경우 월 30만원 기준 제시. 단계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으로 월 15만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

- 농촌기본소득의 초기 시작은 농민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 농민수당의 지급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 월 평균 5만원 수준에서 출발

- 농촌기본소득 소요 예산 추산

- 농촌기본소득의 소요 예산은 월 15만원 추가 지급의 경우, 연 5천400억 원 추산. 초기 월 5만원 지급 시, 연 1,800억 원 소요 추산

- 농촌기본소득 자원 마련

- 지역소멸대응기금 적용.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금 활용
-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정책 사업 예산 조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 예산 증액

○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순환 경제의 구축

- 지역순환 경제

- 농촌 내부의 소득, 생산(투자), 자금의 역내 환류를 통한 경제구조의 자기 완결성 강화. 농촌경제의 안정성 및 농촌 주민자치 확대. 농촌 사회의 활성화 추진

- 지역화폐와 농촌기본소득

- 지역화폐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를 통해 기업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의 타지의 지출을 차단해 지역 승수효과에 기여
- 농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연계 성공 가능성 높음. 성공한 지역화폐 모델 중 상당수가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곳. 농촌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

- 마을(행정리) 기준으로 선정, 충남의 15개 시·군 모든 지역의 소멸위기를 겪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점이 있음. 또한, 마을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시범 사업 규모와 방식
 - 20여개 마을,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 마을, 참여형 기본소득 지급 마을

등으로 나눠 사업 진행. 참여형 마을은 농촌 마을의 공익적 가치와 마을 만들기의 실천을 약속

- 지급 대상자 및 액수

- 해당 지역 1년 이상 전체 실거주자. 소득 구분, 직업 구분 없이 모두에게 시범사업 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화폐, 개별 지급

- 시범사업 소요 예산

- 20개 마을 36억 원. 2년 72억 원 소요 예상

o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평가

- 개인과 공동체 효과 평가

- 사회적 인구 이동 및 지역순환경제 효과 평가

- 농촌기본소득의 지역 승수효과 측정. M3(영국 신경경제단원이 개발, 영국 농촌지역의 공공조달, 사회적 기업, 로컬푸드 등이 지향하는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적용

- $LM3 = R1 + R2 + R3 / R1$ 방식으로 평가

- R1은 농촌기본소득 실험 지급 총액, R2는 지역 내 지출금액, R3는 매출액 대비 지역화폐 비중 고려한 기업의 지역 내 지출 금액

2. 정책 제안 사항

□ 농업·농촌 소득보장 제도의 발전

○ 농어가수당의 발전 방향

- 농어가수당은 농민 개인별 지급으로 발전, 여성 농민 등 정책소외층이 없도록 함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농민기본소득이 법제화될 경우, 공익형직불금, 농어가수당, 농민기본소득은 조정 및 재정립이 필요(김찬휘, 2021, 85)
- 공익형직불금 개편 필요. 소농직불금과 농민기본소득과 철학 공유, 농민기본소득 액수 증가에 기여하도록 함
- 농민수당은 자자체 차원의 수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적으로 지급 원칙과 지급방향, 액수 등을 발전시킴

○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 충남형 농촌 재생의 비전은 농촌기본소득을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
- 농촌으로의 거주 및 이주를 촉진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충남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제안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

- 마을(행정리) 방식 지역 선정
- 소멸고위험 행정리 마을 3,123개소 중 20여개 선정, 2년간 1년 이상 지역 실거주자에게 개인별 월 15만원 지급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농촌 기본소득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제정
-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4개 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계획수립, 이주민 지원센터, 영육아지원센터, 청년 일자리 지원, 특별회계 설치, 각종 재정,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농촌기본소득 지원’ 내용을 추가할 필요. 지방소멸위기지역인 농촌의 핵심적 문제는 생활안정과 소득보장 문제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기초적인 소득보장 해결. 아울러 농촌 기본소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가능
- 분권형 농촌재생, 농촌기본소득 정책 추진
- 중앙정부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영이 자칫 지방의 소외와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 중앙정부의 시·군별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시·군별 세부 위기지역 선정 및 정책 대안으로 이어져야 함
- 지역소멸대응 기금의 활용 역시 중앙정부의 기준과 심의·선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분권형 방식이 실질적인 지방위기 해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참고 문헌>

- 가이 스탠딩(저), 안효상(역),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비, 2018.
- 강남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진인진, 2020.
- 국토연구원, 「지역별 소득격차와 불균형」 2021. 4.
- 김병조 외, 『뉴머니 지역화폐가 온다』, 다홀미디어, 2020.
- 김성훈, 「다시 농가 기본소득제를 말한다」, 한국농정신문, 2018. 4. 1.
- 김승연 외 2인,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효과 검증목표로 청년층 대상 증거 기반 과학적 정책실험 설계」, 서울연구원, 2019. 5. 30.
- 김종철, 『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개마고원, 2020.
- 김찬휘, 「농민기본소득은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태이다」,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6. 8.
- 김태화, 「공익직불제 소농 기준 비현실적…영농형태 따라 차이」, 농민신문, 2021. 7. 7.
- 김태훈 외,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연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0. 3.
- 김혜인, 「일본-인구감소로 인한 쇠퇴지역에 활력 불어넣기」, 월간 주민자치, 2016. 1. 26.
-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뉴스앤조이, 2015. 1.16.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지침서」, 2020. 5.
- _____, 농업경영체 현황,
(https://edu.agrix.go.kr/uni_docs7/biOlap/dashBoard.do)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한국의 농정전환 :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 농정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9.

- _____,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개편방안』, 2020. 5
- 마스다 하로야(저), 김정환(역),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4.
- 마이클 우즈(저), 박경철 외(역), 『농촌: 지리학이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따비, 2016.
- 문진수, 「농촌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이 갖는 의의와 한계」,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4. 20.
- 민경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추진계획」, 제 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6.8.
- 박경, 「지방소멸론을 넘어: 인구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지역재단 리포트 제43호, 2019. 3. 28.
- 박경철 외,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충남연구원, 2019. 11.
- 박경철, 「농민기본소득의 현황과 과제」,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2018. 11. 24.
- _____, 「농촌기본소득 토론회」, 2021.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6. 8.
- 박기성, 「안심소득, 기존 복지혜택 아우르는 범 복지제도」, 이데일리, 2021. 6. 10.
- 박진경,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방안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 박진경·김도형, 『인소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 백승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행: 참여소득」, 계간 '기본소득' 2020. 겨울.
- 북거일·김우택·이영환·박기성·변양규,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한국경제신문, 2017.
- 서재교,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 연구: LM3을 활용한 지역승수효과를 중심으로」,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6. 8.

서정희,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론회」,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4. 20.

성주인·한이철·민경찬,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 『KREI 농정포커스』, 2021.

송미령 외,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200호 (2021. 10. 1)

송미령,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_____, 「농촌정책의 전개와 미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9. 26.

_____, 「늘어나는 농촌 빈집 막을 묘수는...입체적 연구·재생 정책 실천하자」, 여시재, 2021. 3. 19.

송미령·성주인,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농업전망2006(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송원규, 「공익직불제·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3.3

_____,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21.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6. 8.

양준호, 「지역순환경제,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가능성」,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4. 20.

오다기리 도쿠미(저), 부혜진 외(역),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울, 2014.

유영성 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20. 3.

유찬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J 제287호, 2021. 3. 2.

유찬희·김태영,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유찬희·김태후, 「2019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KREI 현안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8. 24.

윤정미 외, 「충청남도 실거주 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 충남연

구원, 2015.

윤정미, 「충남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와 마을차원의 대응전략」, 충남연구원, 2021. 6.

윤홍식,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과 도약을 위한 신복지비전」,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체제』, 민주연구원, 2021.

이명현 외,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0. 5.

이상이, 「좌파·우파·가짜 기본소득 반대, 보편적 사회보장 확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0. 6.8.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2016. 3. 8.

이소영 외, 「(가칭)‘지방소멸대응 지역활력 특별법’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이지은,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복지이슈 FOCUS』, 경기복지재단, 2020. 7.

이창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1. 29.

임경수,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4. 20.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0 농가경제 변화실태와 요인」, 『KREI 현안분석』, 제85호(2021. 9. 28.)

정기석, 「농민 먼저 기본소득을-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모델 연구」,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2018. 11. 24.

정도채·정유리·김정승·김유나, 「저밀도 경제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제임스 퍼거슨(저), 조문형(역), 『분배정치의 시대』, 여문책, 2015.

통계청, 「2020년 귀농어귀촌 통계」, 2021. 6. 23.

_____, 「2020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2021. 5. 26.

_____,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1. 4.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2020.8.

「농촌이주 청년 일자리 해법,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찾자」, 한국농어민신문,
2021. 7.2.

충청남도 농촌기본소득 설문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 조사원 000입니다. 저희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의뢰로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해 개인정보는 통계분석과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 질문

- 1) 선생님께서 실제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2)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3)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본 질문

1.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상황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조금 나빠졌다 ③ 비슷하다 ④ 조금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2.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고려할 때,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투자를 많이 줄여야 한다 ② 투자를 조금 줄여야 한다 ③ 현 수준을 유지

해야 한다 ④ 투자를 조금 늘려야 한다 ⑤ 투자를 많이 늘려야 한다

3. 농업과 농촌이 우리나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전통과 민족문화의 보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

4.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이 가장 크게 낙후되어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과 일자리 ② 의료와 복지 서비스 ③ 교육과 문화 시설 ④ 교통과 주거 환경

5. 현재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식품 안정성 향상, 자연환경 보존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면 그 대가로 소득을 지원하는 ‘공익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공익직불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③ 지지하는 편이다 ④ 적극 지지한다 ⑤ 모르겠다

6.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업인 가구당 1년에 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충청남도의 농민수당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③ 지지하는 편이다 ④ 적극 지지한다 ⑤ 모르겠다

7. 현재 국회에서는 ‘농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농민 개인에게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께서는 ‘농민기본소득’ 법안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동의하는 편이다 ④ 적극 동의한다 ⑤ 모르겠다

8. 최근 농민만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자는 ‘농촌기본소득’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 인구 유입 확대와 농촌생활에 필요한 일정 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농촌 주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동의하는 편이다 ④ 적극 동의한다 ⑤ 모르겠다

9. 만약 농촌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다면, 1인당 월 얼마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인당 월 10만원 미만 ② 1인당 월 10만원 ~ 30만원 정도 ③ 1인당 월 30만원 이상 ④ 잘 모르겠다

10. 만약 농촌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농촌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② 농촌에 거주할 생각이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농촌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 편이다 ⑤ 농촌에 거주할 생각이 아주 많다

※ 통계 관련 질문

11. 선생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니까?

- ① 농어업 종사자
② 중소 자영업
③ 정규직 직장 근로자
④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

- ⑤ 학생
- ⑥ 전업 가족 종사자(전업 주부 등)
- ⑦ 무직 / 구직 중

12. 선생님의 가구원은 본인 포함 총 몇 명입니까?

-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이상

13. 선생님 가구의 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1인 가구인 경우)

- ① 91만원 미만 ② 91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 ③ 270만원 이상

- (2인 가구인 경우)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이상 ~ 460만원 미만 ③ 460만원 이상

- (3인 가구인 경우)

- ① 190만원 미만 ② 190만원 이상 ~ 590만원 미만 ③ 590만원 이상

- (4인 가구인 경우)

- ① 240만원 미만 ② 240만원 이상 ~ 730만원 미만 ④ 730만원 이상

13.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미만)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

14. 선생님의 정치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수 ② 중도 ③ 진보

15. 마지막으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